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838-01



혁신경제

# 기업의 복합적 지식재산권 활용사례 연구

2021. 12



2021년도 기초연구과제 최종보고서

혁신경제

기업경영

# 지식재산 경영과 기업 성과 : 기업의 복합적 지식재산권 활용 사례 연구

The joint use of different types of IPRs by firms

2021. 12.



#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지식재산 경영과 기업 성과 : 기업의 복합적 지식재산권 활용사례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 구 기 간 :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 연 구 책 임 자 : 강경남 연구위원
- 참 여 연 구 원 : 임효정 부연구위원  
김혜정 전임연구원



요약

제1장  
·  
서론

- 기업의 혁신성과 등 무형의 자산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함에 있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복합적) 권리 유형을 이용하는 기업의 전략적 활동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 그동안 특허권 보유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상표권 보유의 효과, 다양한 권리 보유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
  - 기술의 융복합화,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권리 유형을 통한 보호 필요성이 증가
  - 기업의 혁신성과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권리 유형을 이용하여 보호하는 현황과 구체적인 사례, 그 효과에 대한 연구 필요
  
-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복합적 보유 활동 관련 추이,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전략의 특징 및 효과에 대해 다루고자 함
  -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권리유형 보유\* 현황 및 추이, 복합적 권리보유의 효과 분석
    - \*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 기업이 혁신성과를 무형의 자산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로 다른 권리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용하는 활동을 의미
  - 화학·바이오 산업, 전기전자 산업 등 주요 산업에서 관련 사례수집 및 분석,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의 특성 도출

## 제2장 · 선행 연구

- 지식재산권에 관한 개별법은 제도의 취지(목적), 보호 대상, 보호 요건(등록 요건), 권리 효력 및 존속기간 등이 서로 상이하며 중첩적 보호도 가능
  - 각 개별법은 서로 저촉되지 않는 한 각각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제품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통한 중첩적 보호도 가능
  - 기업이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을 때 보호 영역이 넓어지고 보호 수단이 다양해져, 보다 다각적인 권리 대응 가능
-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연구는 유럽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실증연구의 축적이 필요한 상황
  - EUIPO(2019) 및 EPO & EUIPO(2021)는 지식재산권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경제적 성과도 높은 것을 확인
  - Llerena and Millot(2020)은 슈퍼모듈러티 분석을 통해 의약품 분야에서 특허와 상표 간의 상호보완성을 확인
  - 강경남 외(2020)의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보유 활동이 산업별로 상이하고, 지식재산권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미보유 기업에 비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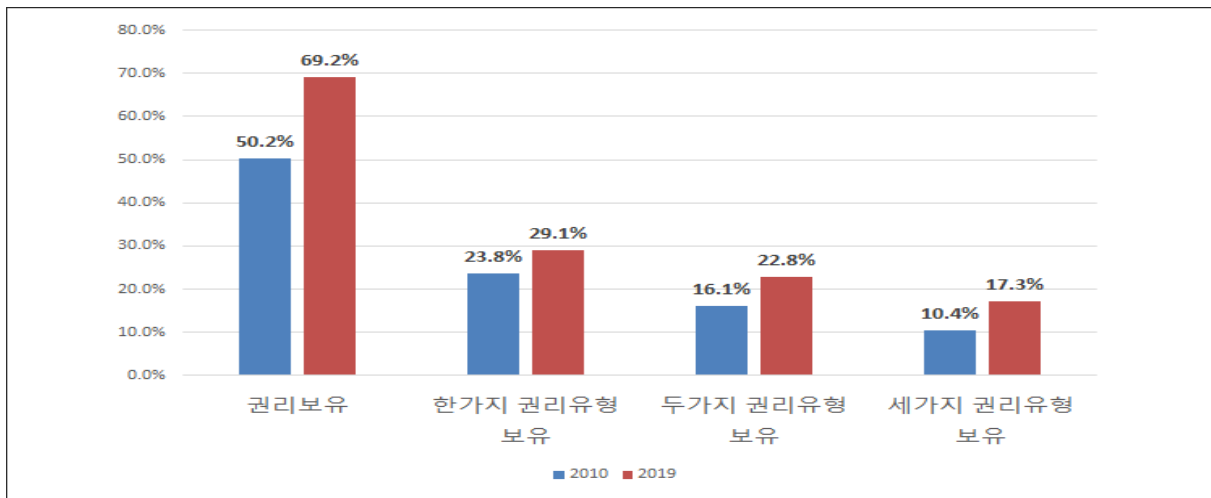
## 제3장 지식재산권 복합적 활용과 효과

###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 기업 단위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 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51.4%, 상표권 보유기업은 51.2%, 디자인권 보유기업은 24.1%
  -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33.8%,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같이 보유한 경우가 21.6%,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같이 보유한 기업이 19.3%
  - 산업재산권 권리보유 비율은 2010년 50.2%에서 2019년 69.2%로 약 19.0%point 증가하였으며, 한 가지 권리유형을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23.8% → 29.1%, 두 가지 권리유형을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16.1% → 22.8%, 세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10.4% → 17.3%로 증가

#### ▶ 2010년 대비 2019년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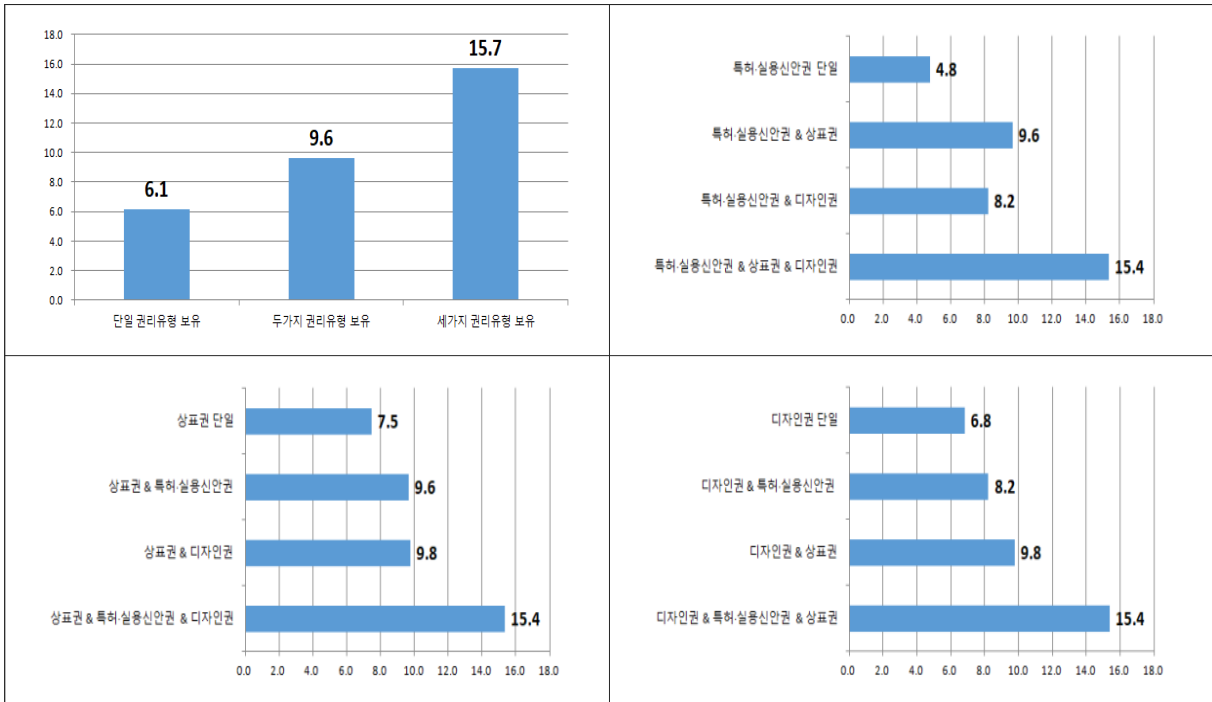


출처 : 2010년, 2019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 산업재산권 권리유형의 결합별 효과를 살펴보면,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단일 권리유형을 보유한 경우 6.1%, 두 가지 권리유형을 보유한 경우 9.6%, 세 가지 권리유형을 보유한 경우 15.7% 기업 성과가 높게 나타남
  - 각각의 권리유형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 비해, 다른 권리유형과 함께 결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에 보다 긍정적
    - 특허·실용신안권만 단일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4.8% 높게 나타난 반면, 특허·실용신안권과 함께 상표권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9.6%, 특허·실용신안권과 함께 디자인권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8.2%, 특허·실용신안권과 함께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15.4% 높게 파악됨
    - 상표권만 단일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7.5% 높게 나타난 반면, 상표권과 함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9.6%, 상표권과 함께 디자인권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9.8%, 상표권과 함께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15.4% 높게 나타남
    - 디자인권만 단일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6.3% 높게 나타난 반면, 디자인권과 함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8.2%, 디자인권과 함께 상표권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9.8%, 디자인권과 함께 특허·실용신안권, 상표권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15.4% 높게 나타남

▶ 권리의 복합적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단위: %)



**지식재산권 복합적 활용 사례 : 제품·서비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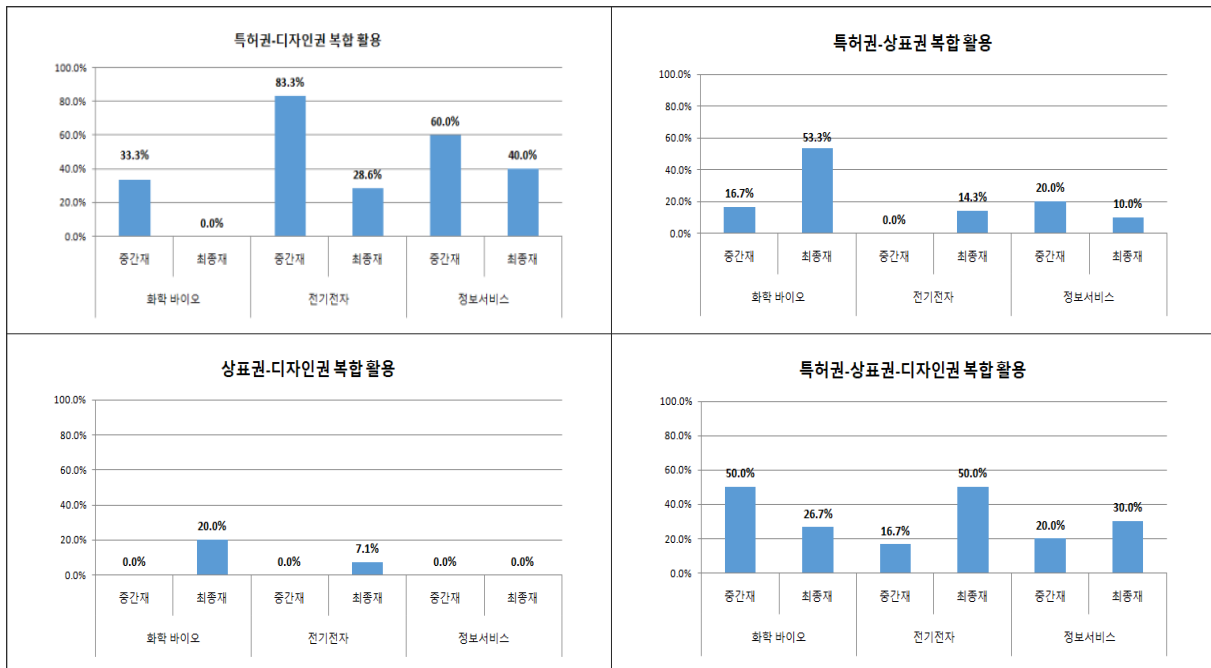
■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 전략을 주요 업종별, 제품 또는 서비스의 밸류체인별로 구분하여 특징 도출

\* 기업 조사를 통해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지식재산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56건의 사례를 수집

-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전기전자 분야의 중간재 제품·서비스, 정보서비스 분야의 중간재 제품·서비스에서 많이 사용
- 특허권과 상표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화학·바이오 분야의 최종소비재 제품·서비스에서 많이 사용
-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는데, 화학·바이오 분야의 최종소비재 제품·서비스, 전기전자 분야의 최종소비재 제품·서비스에서 일부 사용
-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화학·바이오 분야의 중간재 제품·서비스, 전기전자 분야의 최종소비재 제품·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밸류체인별 복합 권리 활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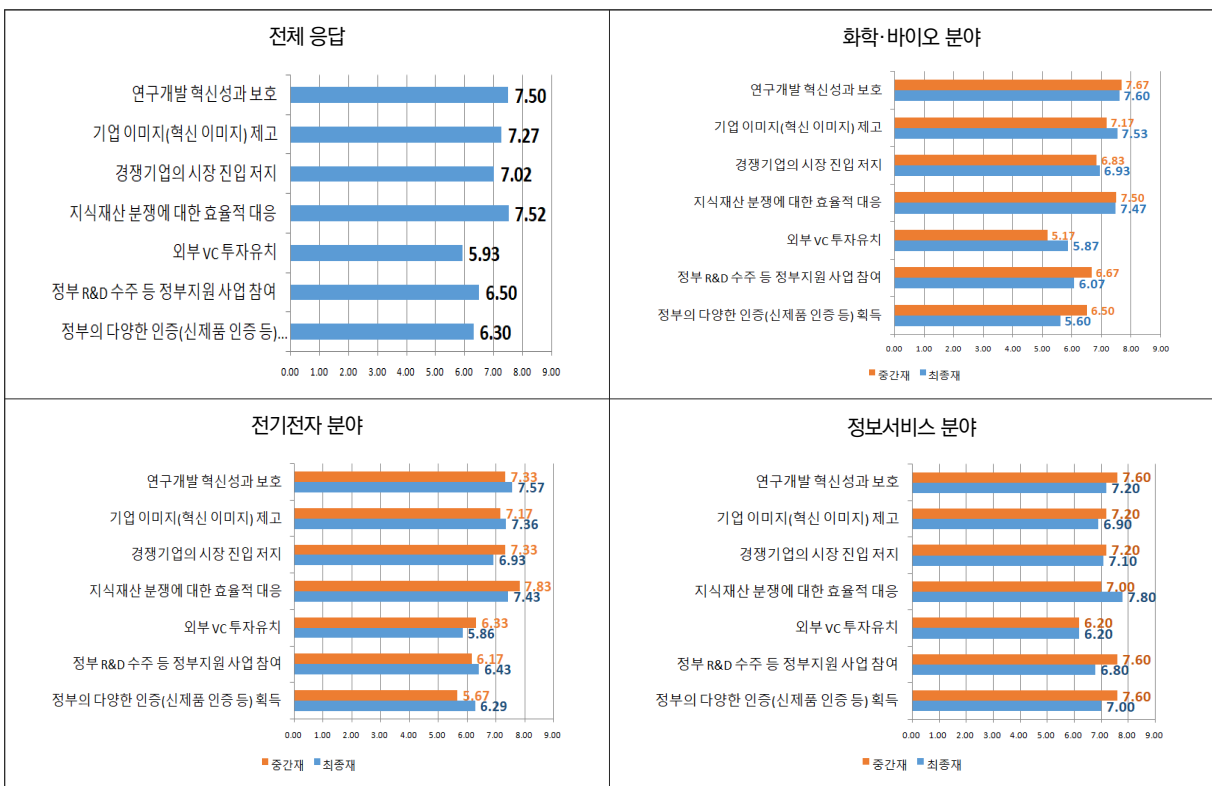
(단위: %)



■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의 효과는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혁신성과 보호’, ‘기업 이미지 제고’ 순으로 응답

- 화학·바이오 분야 중간재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은 ①혁신성과 보호, ②IP분쟁 대응, ③기업 이미지 제고, 최종소비재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은 ①혁신성과 보호, ②기업 이미지 제고, ③IP 분쟁 대응 순으로 효과 평가
- 전기전자 분야 중간재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은 ①IP분쟁 대응, ②혁신성과 보호, ②기업 이미지 제고, 최종소비재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은 ①혁신성과 보호, ②IP 분쟁 대응, ③기업 이미지 제고 순으로 효과 평가
- 정보서비스 분야 중간재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은 ①혁신성과 보호, ①정부지원 사업 참여, ①정부 인증 획득, 최종소비재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은 ①IP분쟁 대응, ②혁신성과 보호, ③경쟁기업 시장진입 저지 순으로 효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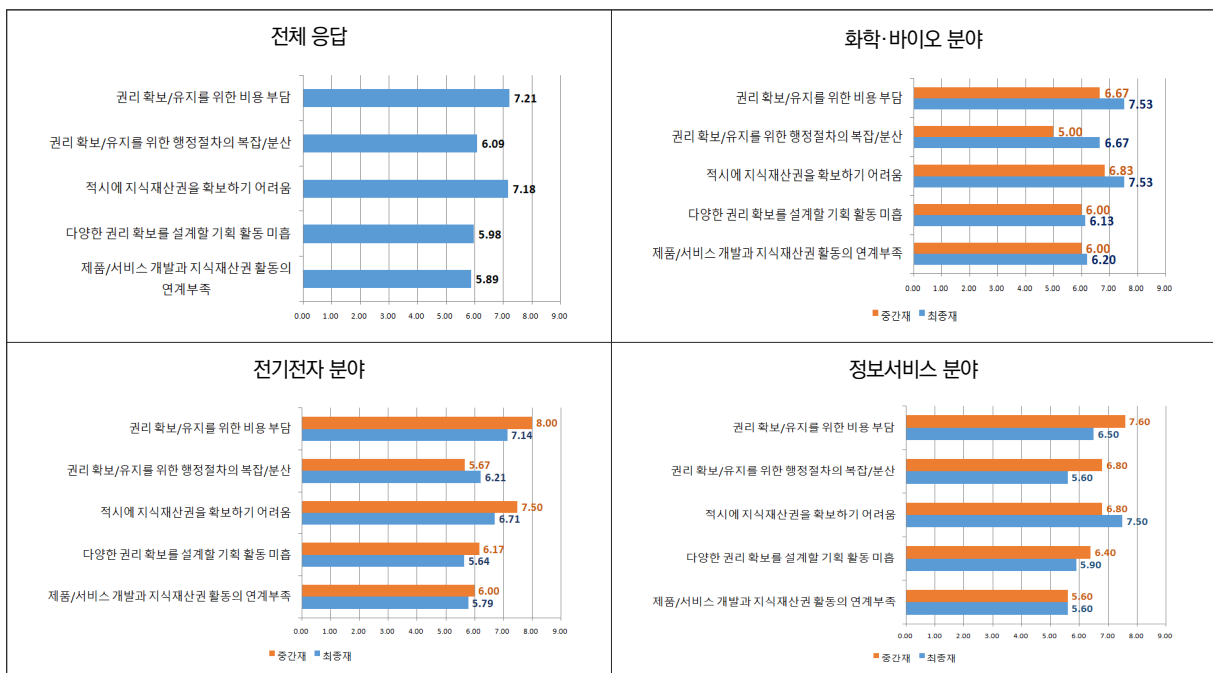
▶ 업종별 밸류체인별 복합적 권리 활용 효과 평가(9점 척도)



■ 지식재산권 복합적 활용의 주요 걸림돌로 '권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권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행정절차의 복잡/분산'을 꼽음

- 화학·바이오 분야 중간재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은 어려움을 ①적시 IP 권리확보 어려움, ②IP비용 부담, ③IP 기획활동 부족, ④제품-IP 연계활동 부족 순으로, 최종소비재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은 ①IP 비용 부담, ①적시 IP 권리확보 어려움, ③행정절차의 복잡/분산 순으로 응답
- 전기전자 분야 중간재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은 어려움을 ①IP비용 부담, ②적시 IP 권리확보 어려움, ③IP 기획활동 부족 순으로, 최종소비재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은 ①IP비용 부담, ②적시 IP 권리확보 어려움, ③행정절차의 복잡/분산 순으로 응답
- 정보서비스 분야 중간재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은 어려움을 ①IP비용 부담, ②행정절차의 복잡/분산, ③적시 IP 권리확보 어려움 순으로, 최종소비재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은 ①적시 IP 권리확보 어려움, ②IP비용 부담, ③IP 기획활동 부족 순으로 응답

▶ 업종별 밸류체인별 복합적 권리 활용 걸림돌(9점 척도)



## 제4장 · 결론

### 주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기업의 복합적 지식재산권 보유는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도 복합적 활용 전략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 특허권과 상표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화학·바이오 분야의 최종소비재 제품·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됨
    - 특허권과 상표권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은 자사가 보유한 기술의 보호, 상표권은 시장에서의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이는 두 권리가 기술자산, 시장자산으로써 기능하며 상호 보완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맥상통
  -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복합적 활용 전략은 전기전자 분야의 중간재 제품·서비스, 정보서비스 분야의 중간재 제품·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됨
    -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기업들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다각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갖고, 효율적 분쟁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
      - 특허권과 디자인권 조합이 혁신 성과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
  - 기업이 속한 업종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 특징적인 부분이 존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중간재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화학·바이오 분야와 전기전자 분야의 중간재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은 최종소비재 제품·서비스 기업에 비해 'IP분쟁 대응' 효과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경쟁기업 등 기업 간 대응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보서비스 분야의 중간재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들은 특징적으로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정부 인증 획득'의 효과를 높게 평가
      - 지식재산권의 시그널링 기능이 기업과 정부 간 관계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반면,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임

- 기업의 복합적 지식재산권 전략 활용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토와 더불어 ‘일괄심사제도’의 적극 활용과 IP 기획활동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의 확대 필요
  - ‘권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관련,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유지에 비용이 드는 만큼, 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른 유용성을 벗어나는 과도한 수준의 권리 확보는 과잉보호에 해당하며 장려되어서는 안 됨
    - 하지만, 기업이 재정적 부족으로 혁신의 성과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
  - ‘적시 지식재산권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특허청의 ‘일괄심사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일괄심사제도는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에 관련된 둘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는 제도임
    - 일괄심사제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행정절차의 편의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화학·바이오 분야 및 전기전자 분야의 중간재 관련 기업과 정보서비스 분야의 최종소비재 관련 기업에서 ‘다양한 권리 확보를 설계할 기획 활동 미흡’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
    - 기업의 혁신(R&D) 전략과 복합적 지식재산권 활용 전략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획 활동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 확대 필요

###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고 유형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수집된 사례가 많지 않아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사례를 축적할 필요
- 조사의 대상이 화학·바이오 분야, 전기전자 분야, 정보서비스 분야의 산업재산권 보유 기업으로 한정되어 산업재산권 외의 권리활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로 작용
  -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권리유형의 활용 전략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목적 ..... 5

제2장

선행연구

제1절 법·제도적 접근 ..... 9

제2절 경제·경영적 접근 ..... 14

제3장

권리의 복합적 활용과 기업 성과

제1절 산업재산권 복합적 활용 현황 ..... 21

    I.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 21

    II.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 26

제2절 산업재산권 복합적 보유와 기업 성과 ..... 39

    I. 연구 개요 ..... 39

    II. 데이터 및 주요 변수 ..... 40

    III. 분석모형 ..... 41

    IV. 분석결과 ..... 42

제3절 산업재산권 복합적 활용 사례 ..... 51

# Contents

<b>제4절</b> 산업재산권 복합적 활용 특징 .....	63
I. 기업 조사 주요 결과 .....	63
II. 복합적 권리 활용 사례 분석 .....	81

## 제4장

### 결론

<b>제1절</b> 주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03
<b>제2절</b>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	109

참고문헌 / 110

붙임자료 / 114

## 표 목차

표 2-1	주요 지식재산권법 비교 .....	11
표 2-2	산업디자인 보호 주요 법제의 기본적 구별 .....	12
표 2-3	산업디자인 관련 법제의 장단점 .....	13
표 3-1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 통계(1998~2019) .....	23
표 3-2	우리나라 내국인 산업재산권 출원 통계(1998~2019) .....	25
표 3-3	산업별(대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9년 기준) .....	27
표 3-4	제조업(중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9년 기준) .....	28
표 3-5	서비스 관련 산업(중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9년 기준) .....	29
표 3-6	산업별(대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복합적 보유기업 비중(2019년 기준) .....	31
표 3-7	제조업(중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복합적 보유기업 비중(2019년 기준) .....	32
표 3-8	서비스 관련 산업(중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9년 기준) .....	33
표 3-9	산업별(대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비중 변화(2010년 vs 2019년) .....	35
표 3-10	산업별(대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단일 보유기업 비중 변화(2010년 vs 2019년) .....	36
표 3-11	산업별(대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복합적 보유기업 비중 변화(2010년 vs 2019년) .....	37
표 3-12	주요 변수 .....	40
표 3-13	연도 및 규모별 데이터셋 구성(n=119,974) .....	42
표 3-14	산업별 데이터셋 구성(n=119,974) .....	42
표 3-15	주요 변수 관련 기초통계량(n=119,974) .....	43
표 3-16	변수 간 상관관계(n=119,974) .....	43
표 3-17	주요 분석 결과(1) : 복합적 권리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	44
표 3-18	주요 변수 관련 기초통계량(n=119,974) .....	45
표 3-19	주요 분석 결과(2) : 권리유형별 복합적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	46
표 3-20	주요 분석 결과(3) : 복합적 권리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 대기업 vs 중소기업 .....	49
표 3-21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권리(1순위) .....	64
표 3-22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해 선호하는 권리(1+2+3순위) .....	64
표 3-23	화학·바이오 분야 권리의 복합적 활용 .....	82

# Contents

표 3-24	전기전자 분야 권리의 복합적 활용	83
표 3-25	정보서비스 분야 권리의 복합적 활용	83
부표 1	가장 선호하는 권리(1순위)	114
부표 2	가장 선호하는 권리(1+2+3순위)	114
부표 3	지식재산 보유현황 (중복응답)	115
부표 4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1) 권리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직접실시)	115
부표 5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2) 권리이전, 라이선싱을 위한 권리확보를 위해	116
부표 6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3) 상대방의 모방/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116
부표 7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4) 침해소송 피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117
부표 8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5) VC유치 등 외부 자금조달에 활용하기 위해	117
부표 9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6)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하기 위해	118
부표 10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7) 정부R&D 수주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	118
부표 11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8) 정부의 다양한 인증 획득을 위해	119
부표 12	복합적 권리 활용 - 1) 특허·실용신안권 & 상표권	119
부표 13	복합적 권리 활용 - 2) 특허·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120
부표 14	복합적 권리 활용 - 3) 상표권 & 디자인권	120
부표 15	복합적 권리 활용 - 4) 특허·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121
부표 16	주된 걸림돌 - 1)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121
부표 17	주된 걸림돌 - 2)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행정절차의 복잡/분산	122
부표 18	주된 걸림돌 - 3)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122
부표 19	주된 걸림돌 - 4) 다양한 권리 확보를 설계할 기획 활동 미흡	123
부표 20	주된 걸림돌 - 5) 제품/서비스 개발과 지식재산권 활동의 연계부족	123

## 그림 목차

---

그림 1-1	전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 활동 추이	3
그림 3-1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 활동 추이(1998~2019)	21
그림 3-2	각 권리유형별 출원 활동 추이(1998~2019)	22
그림 3-3	내외국인의 권리유형별 출원 활동 추이(1998~2019)	24
그림 3-4	출원인 유형별 출원 활동 비중(2019년 기준)	26
그림 3-5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0년 vs 2019년)	34
그림 3-6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구성비(2010년 vs 2019년)	34
그림 3-7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0년 vs 2019년)	38
그림 3-8	권리유형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44
그림 3-9	특허·실용신안권과 타 권리의 복합적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47
그림 3-10	상표권과 타 권리의 복합적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47
그림 3-11	디자인권과 타 권리의 복합적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48
그림 3-12	권리유형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48
그림 3-13	이노테라피 파이프라인	53
그림 3-14	이중항체 플랫폼 Grabody	54
그림 3-15	에이비엘 바이오의 business model	55
그림 3-16	OliPass PNA 구조	56
그림 3-17	포인트모바일 보유 상표권	58
그림 3-18	액트로의 Actuator 관련 주요 제품	59
그림 3-19	네오팩트의 주요 디지털 재활 기기	60
그림 3-20	루닛의 AI 기반 진단 제품	62
그림 3-21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해 선호하는 권리 : 업종별 (1~3순위)	64
그림 3-22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해 선호하는 권리 : 비즈니스 모델별 (1~3순위)	65
그림 3-23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해 선호하는 권리 : 밸류체인 상 위치별 (1~3순위)	65
그림 3-24	응답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업종별(복수응답)	66
그림 3-25	응답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비즈니스 모델별(복수응답)	66

그림 3-26 응답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밸류체인 상 위치별(복수응답) .....	67
그림 3-27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업종(화학·바이오 분야) .....	68
그림 3-28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업종(전기전자 분야) .....	69
그림 3-29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업종(정보서비스 분야) .....	70
그림 3-30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비즈니스 모델(B to C) .....	71
그림 3-31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비즈니스 모델(B to B) .....	72
그림 3-32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밸류체인 상 위치(연구개발) .....	73
그림 3-33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밸류체인 상 위치(원자재·중간재) .....	74
그림 3-34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밸류체인 상 위치(최종재) .....	75
그림 3-35 복합적 권리 활용도 - 업종(화학·바이오 분야) .....	76
그림 3-36 복합적 권리 활용도 - 업종(전기전자 분야) .....	77
그림 3-37 복합적 권리 활용도 - 업종(정보서비스 분야) .....	77
그림 3-38 복합적 권리 활용도 - 비즈니스 모델(B to C) .....	78
그림 3-39 복합적 권리 활용도 - 비즈니스 모델(B to B) .....	79
그림 3-40 복합적 권리 활용도 - 밸류체인 상 위치(연구개발) .....	79
그림 3-41 복합적 권리 활용도 - 밸류체인 상 위치(원자재·중간재) .....	80
그림 3-42 복합적 권리 활용도 - 밸류체인 상 위치(최종재) .....	81
그림 3-43 업종별 특허권-디자인권 복합 활용 비율 .....	84
그림 3-44 업종별 특허권-상표권 복합 활용 비율 .....	85
그림 3-45 업종별 상표권-디자인권 복합 활용 비율 .....	85
그림 3-46 업종별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복합 활용 비율 .....	85
그림 3-47 업종별 밸류체인별 특허권-디자인권 복합 활용 비율 .....	86
그림 3-48 업종별 밸류체인별 특허권-상표권 복합 활용 비율 .....	86
그림 3-49 업종별 밸류체인별 상표권-디자인권 복합 활용 비율 .....	87
그림 3-50 업종별 밸류체인별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복합 활용 비율 .....	87
그림 3-51 업종별 밸류체인별 권리 간 상호보완성에 대한 평가 .....	88
그림 3-52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 .....	89
그림 3-53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 : 화학·바이오 분야 .....	90
그림 3-54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 : 전기전자 분야 .....	90

그림 3-55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 : 정보서비스 분야 .....	91
그림 3-56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 : 화학·바이오 분야-밸류체인별 .....	92
그림 3-57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 : 전기전자 분야-밸류체인별 .....	93
그림 3-58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 : 정보서비스 분야-밸류체인별 .....	94
그림 3-59 복합적 권리 활용의 걸림돌 .....	95
그림 3-60 복합적 권리 활용의 걸림돌 : 화학·바이오 분야 .....	96
그림 3-61 복합적 권리 활용의 걸림돌 : 전기전자 분야 .....	96
그림 3-62 복합적 권리 활용의 걸림돌 : 정보서비스 분야 .....	97
그림 3-63 복합적 권리 활용의 걸림돌 : 화학·바이오 분야-밸류체인별 .....	98
그림 3-64 복합적 권리 활용의 걸림돌 : 전기전자 분야-밸류체인별 .....	99
그림 3-65 복합적 권리 활용의 걸림돌 : 정보서비스 분야-밸류체인별 .....	100
그림 4-1 권리의 복합적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	103
그림 4-2 업종별 밸류체인별 복합적 권리 활용 비율 .....	104
그림 4-3 업종별 밸류체인별 복합적 권리 활용 효과 평가(9점 척도) .....	105
그림 4-4 업종별 밸류체인별 복합적 권리 활용 걸림돌(9점 척도) .....	106

혁신경제

기업경영

지식재산 경영과 기업 성과 : 기업의 복합적 지식재산권 활용 사례 연구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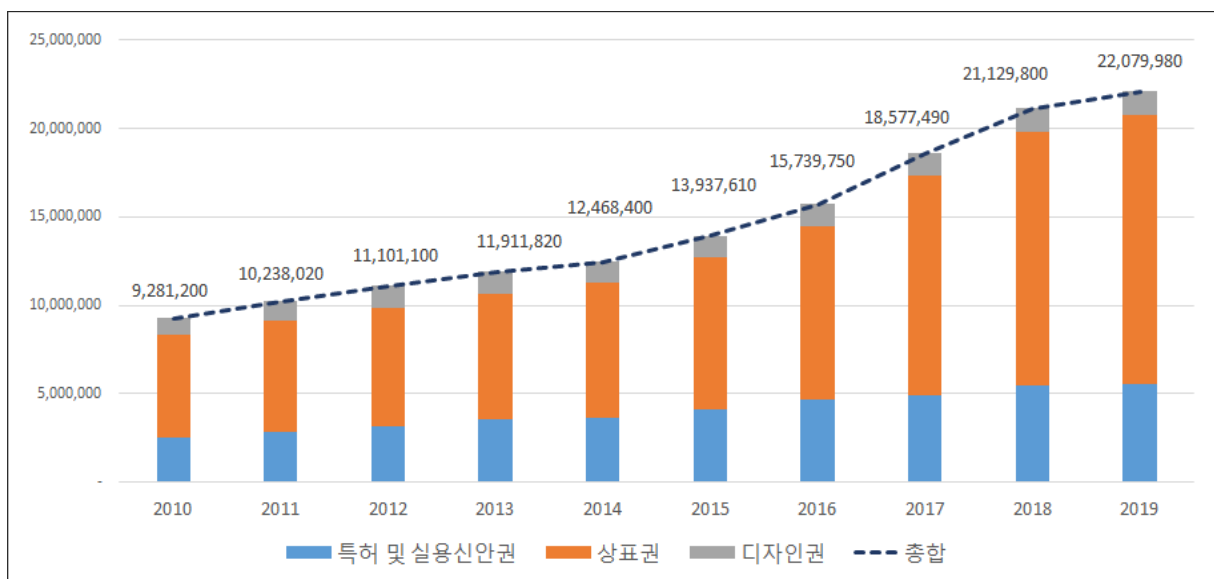


# 제 1 절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활동을 수행한다. 혁신활동은 기술의 진보를 가져오며, 이는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인식되고 있다(Romer, 1986). 그런데, 혁신 과정에서 얻어진 지식, 정보는 비경쟁적이고 비배제적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기술 혁신의 이득을 온전히 전유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유용한 혁신 성과물을 위한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는 시장 실패를 가져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혹은 개인)이 혁신을 추진하도록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며, 그 대표적인 유인체계가 '지식재산권 제도'이다. 지식재산권 제도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주체에게 시장에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점유율 상승, 수익 증가 가능성을 높여, 혁신을 위한 투자 유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1-1 전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 활동 추이



출처 : WIPO Statistics Database (2021. 5. 수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지식 기반 경제사회에서 혁신 주체들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치열한데, 한 예로 최근 10년간 전 세계 산업재산권 창출규모는 약 2.4배 성장하였다( [그림 1-1] 참조). 특이할 만한 부분은 산업재산권 창출 활동 중 상표권의 비중이 68.6%로 크고, 연평균 증가율이 11.2%로 높다는 것이다(2019년 기준).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과거에는 지식재산과 기업 경영과 관련된 연구들이 ‘특허권’ 위주로 이루어져 온 것에 비해, 최근 ‘상표권’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한 가지 유형의 권리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권리를 통해 기업의 혁신 성과를 보호하는 전략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권리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접근은, 하나의 권리유형으로 혁신의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기술에 대한 혁신을 특허로 보호한다고 해도, 해당 혁신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반의 자산을 필요로 한다(Aaker, 2007, Jennewein et al., 2010, Rogers 1998). 특히 상표권과 특허권이 서로 보완적인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실증연구가 이루어졌다(Helmets and Schautschick, 2013, Jennewein et al., 2010, Llerena and Millot, 2020).

최근에는 기술의 융복합화,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이 가속화되면서 단일 권리로 충분히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권리 유형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이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인지, 복합적 권리활용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제 2 절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활동 결과를 자산으로 다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 있는 현황과 추이변화,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던 ‘특허권’ 뿐만 아니라 ‘상표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유형의 권리들이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권리유형별로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효과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제3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특히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보유 현황 및 그 효과를 권리유형의 결합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뒤, 권리 활용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산업별, 밸류체인별 특징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혁신경제

기업경영

지식재산 경영과 기업 성과 : 기업의 복합적 지식재산권 활용 사례 연구

## 제 2 장

### 선행연구

제1절 법·제도적 접근

제2절 경제·경영적 접근



# 제 1 절

## 법·제도적 접근

지식재산권은 강학상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인간의 지식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창작물에 대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독점권’<sup>1)</sup>,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sup>2)</sup>,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표지(標識)’<sup>3)</sup> 등으로 정의되며(손승우, 2019; 송영식 외, 2015; 윤선희, 2015; 강경남 외, 2020),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 지식자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강경남 외, 2020). 협의(狹義)의 지식재산권은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성문법에 의해서 지식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본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강경남 외, 2020).

우리나라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 근거하여 특허법, 저작권법 등을 제정하고, 발명, 저작물 등의 지식자산을 개별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는데(강경남 외, 2020), 각 개별법에 따른 보호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특허법 제2조). ‘자연법칙’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원리원칙을 의미하며, 자연법칙 그 자체나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정신활동은 발명이 될 수 없다(특허법; 강경남 외, 2020). 또한 ‘기술’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술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반복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발견은 ‘창작’이 될 수 없다. ‘고도한 것’이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명(自明)하지 않은 것으로 창작 수준이 높을 것의 의

1)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 이해」(제3판). 동방문화사, 2019, 3면을 강경남 외(2020)에서 재인용

2) 윤선희, 「지식재산권법」(제16정판). 세창출판사, 2015, 1면을 강경남 외(2020)에서 재인용

3)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지적재산법」(제4정판), 세창출판사, 2015, 4면을 강경남 외(2020)에서 재인용

미한다(특허법; 강경남 외, 2020).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디자인이며,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뜻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본조에 따르면 본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물품’일 것(물품성),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일 것(형태성), ‘시각을 통한 것’일 것(시각성), ‘미감을 일으키는 것’일 것(심미성)을 요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강경남 외, 2020). 이때의 물품이란 유체적인 동산이며, 정형성과 시각성이 있어야 하고,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sup>4)</sup>한다(대법원 2001.4.27.선고, 98후2900 판결; 강경남 외, 2020). 즉 ‘유체물일 것, 동산일 것, 정형성을 가질 것,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것, 2차적 형태가 아닐 것, 양산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때에 디자인의 물품성이 인정된다(디자인보호법; 강경남 외, 2020).

상표법의 보호대상은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이다. 상표법상의 상표는 사회통념상 사용되는 상표의 개념과 차이가 있는데,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시 표장을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의하고 있다(강경남 외, 2020). 즉, 상표법상 보호되는 상표의 개념은 자타상품을 식별하고 기호, 문자 등을 통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시를 의미한다(강경남 외, 2020). 이때의 ‘상품’은 ① 유체물일 것, ② 운반 가능한 것일 것, ③ 반복거래가 가능한 것일 것, ④ 식별 가치가 있을 것을 요한다(강경남 외, 2020).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이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창작성이 있을 것, ②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것일 것, ③ 표현일 것을 요한다(강경남 외, 2020). ‘창작성’은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인 정신적 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며, 사상·감정 자체는 독창성이 없어도 표현의 형식 또는 방법에 독창성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강경남 외, 2020). 또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성과가 아닌 자연계의 현상 또는 사실이나,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아이디어인 ‘사상’ 그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강경남 외, 2020). 마지막으로 ‘표현’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머릿속에서 구상된 것을 어떤 방법이나 형태로 외부에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그 형태나 방법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강경남 외, 2020).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

4) 대법원 2001.4.27.선고, 98후2900 판결을 강경남 외(2020)에서 재인용

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강경남 외, 2020). 즉, 비밀성, 경제성, 관리성을 갖출 것을 요하는데, ‘비밀성’은 비밀로 관리하는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객관적 비밀성을 요구한다(대법원, 2004; 강경남 외, 2020).<sup>5)</sup> ‘경제성’은 영업비밀보유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해서 개발된 정보 또는 그 보유자의 영업에서 핵심적 요소를 이루는 경우, 해당 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관련하여 ‘경제성’이 인정<sup>6)</sup>된다(정상조·박준석, 2019; 강경남 외, 2020). ‘관리성’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sup>7)</sup>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강경남 외, 2020). 2019년 개정된 부경법에서는 영업비밀 요건을 완화하였는데,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기업의 기술 관련 노하우, 비공개 관리된 생산방법, 고객명부 등은 위의 비밀성, 경제성, 관리성 요건을 갖춘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강경남 외, 2020).

표 2-1 주요 지식재산권법 비교

	특허법 /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법의 목적	발명/실용적 고안의 보호·장려와 그 이용 도모를 통한 기술발전 촉진과 산업 발전에 기여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기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
보호대상	발명, 고안(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성이 있으면 발명, 없으면 고안)	디자인(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을 것)	상표(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부정경쟁행위로부터의 보호, 영업비밀
등록(보호) 요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사용의사, 식별력	창작성	비밀성, 경제성, 관리성 (영업비밀의 경우에 해당)
권리 효력	독점적 실시	독점적 실시	독점적 사용	복제 등에 관한 배타적 권리 및 인격권	금지청구
존속기간	(특허)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10년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 가능)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저작인접권은 실연을 한 때, 음반에 음이 고정된 때, 또는 방송을 한 때로부터 발생하여 그 다음 해부터 70년)	-

출처 : 개별법 규정의 관련 내용을 정리, 강경남 외(2020)

5) 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다60610 판결을 강경남 외(2020)에서 재인용

6)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제4판), 홍문사, 2019, 679면을 강경남 외(2020)에서 재인용

7)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435 판결을 강경남 외(2020)에서 재인용

앞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개별법은 각 법의 목적에 따라 보호대상, 보호를 위한 등록 요건 또는 보호 요건을 달리하고 있고, 그에 따른 권리 효력 및 존속기간 등이 상이하다(강경남 외, 2020). 이는 다양한 기술, 상표, 디자인적 요소가 결합된 하나의 제품이라면, 각 개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의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강경남 외, 2020).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이용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권리 간의 경합, 중첩 보호 등의 문제가 주된 이슈 중 하나이며, 특히 저작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간의 관계가 검토되어 왔다(김원오, 2017; 조영선, 2016; 전정화 외, 2018). 과거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대상이 각 법에 의해 중복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 선택에 따라 하나의 권리만 인정하는 ‘단일 기회의 원칙(one chance rule)’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각 제도가 요구하는 등록요건이나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한 중복적인 권리의 획득이나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김원오, 2004).

한 예로 산업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외에 상표법, 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하기도 한다(전정화 외, 2018). 또한 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을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하기도 한다. 한때 저작권에 의한 디자인 보호 대상과 등록디자인 보호대상을 엄격하게 구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각 권리 획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두 가지 제도에 의한 중첩보호를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정상조 외, 2015; 전정화 외, 2018). 지식재산권의 중첩 보호로 권리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실제 소송에서도 디자인보호법 뿐만 아니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에 의해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전정화 외, 2018).

표 2-2 산업디자인 보호 주요 법제의 기본적 구별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상 형태모방행위
등록 필요성	○	×	○	×
보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상 이용 가능성</li> <li>• 신규성,</li> <li>• 창작비용이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성</li> <li>• 분리가능성 (응용미술저작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별력 사용에 의한 식별력 포함</li> </ul>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말함)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가 아닐 것
보호 기간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 사후 70년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 가능)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출처 : 김원오(2017)를 전정화 외(2018)에서 재인용

표 2-3 산업디자인 관련 법제의 장단점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점배타적 권리(절대적 권리 : 의거 요건 입증불필요)</li> <li>• 보호수단이 강력한 편(권리행사의 편리성)</li> <li>• 공신력 있는 증명서(디자인등록증 발급)</li> <li>• 유사범위까지 침해주장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절차 없음</li> <li>• 장기의 보호기간</li> <li>• 물품과 상관없이 그 어떤 복제로부터 광범위한 권리보호</li> <li>• 국제적 보호확산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점배타적 권리</li> <li>• 갱신에 의해 영구적 독점가능(사실상 최장 보호)</li> <li>• 주지, 저명성 취득시 보호확장 가능</li> <li>• 유사범위까지 침해주장 가능</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절차의 번거로움(기간 길고, 비용 발생)</li> <li>• 동일 유사물품에 한정된 권리범위</li> <li>• 상대적으로 짧은 권리기간</li> <li>• 속지주의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해성립의 어려움(우연의 일치 인정)</li> <li>• 표현에 국한되는 저작물의 보호범위</li> <li>• 공정이용 등 많은 저작권 제한 사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절차의 번거롭고 까다로움(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입증)</li> <li>• 동일 유사상품에 한정된 권리범위</li> <li>• 상표의 사용의 경우에만 침해성립</li> <li>• 속지주의 적용</li> </ul>

출처 : 김원오(2017)를 전정화 외(2018)에서 재인용

또 다른 예로, 소프트웨어의 경우 저작권과 특허권 등의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저작권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라는 표현을 보호하고, 특허권은 물건과 결합된 소프트웨어 혹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발명의 구현 방법을 보호하는데(김윤명·김현숙, 2017), 특허권을 통한 보호를 추구한다고 해서 저작권적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김관식 외, 2013).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과거에는 저작권 제도에 의한 보호에 만족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신지연 외, 2010).

이와 같은 추세는 지식재산권법을 이루는 제도들 중 단일 권리에 의한 보호에 한계가 있고, 권리자가 서로 다른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서로 다른 제도 하에서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권리관계를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설계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 제 2 절

### 경제·경영적 접근

지식재산권은 혁신을 장려하고, 혁신가와 투자자,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며, 혁신가의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고 비즈니스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 상표 등 개별 지식재산권과 기업의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Arundel et al., 1995; Athreye and Fassio, 2019; Blind et al., 2006, Bloom and Reenen, 2002, Cohen et al., 2000; de Rassenfosse, 2012; Duguet and Kabl, 1998; Farre-Mensa et al. 2017; Guzman and Stern, 2015; Hagedoorn and Cloodts, 2003; Hall et al., 2012; Haeussler et al., 2012; Hoenen et al, 2014; Holgersson, 2013; Hsu and Ziedonis, 2008; Llerena and Millot, 2020; Millot 2009; Thumm, 2004).

반면 지식재산권 간의 관계, 기업이 여러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는 한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Arora(1997)는 특허와 영업비밀을 결합 사용한 사례가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에도 있었음을 지적하고, 독일의 염료 산업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고 독자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결합하여 사용한 바 있음을 파악하였으나, 기업의 전략적 활용이 크게 주목받지는 못 하였다. 그러나,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최근,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이란, 기업이 혁신성과를 무형의 자산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로 다른 권리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용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OECD, 유럽 OHIM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활용방식을 일명 ‘지식재산권 묶음(IPR bundle)’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며(OHIM, 2015; OECD, 2015; 강경남 외, 2020), 일본 지적재산연구소(知的財産研究所)에서는 ‘지적재산권 믹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지적재산연구소, 2012; 강경남 외, 2020). Gattari 외(2017)의 논문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에 다양한 권리가 포함되는 경우 ‘hybrid license’라고 명명하였다(Gattari et al., 2017; 강경남 외, 2020). 하나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은 보완성 또는 대체가능성의 개념으로 설명되며, 이 중 보완성의 핵심

은 개별 권리로부터 얻은 이득보다 복합적 권리로부터 얻은 이익이 크다는 것이다.

기술에 대한 혁신을 특허로 보호한다고 해도, 해당 혁신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반의 자산을 필요로 한다(Aaker, 2007; Jennewein et al., 2010; Rogers, 1998; 강경남 외, 2020). 특허 상표권과 특허권이 서로 보완적인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실증연구가 이루어졌다(Helmerts and Schautschick, 2013; Jennewein et al., 2010; Llerena and Millot, 2020; 강경남 외, 2020). 예를 들어 특허의 이용은 경쟁사의 기술 모방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Hurmelinna and Jauhiainen 2004; Pisano 2006),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종종 브랜드 및 강력한 마케팅 자산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데(Athreye and Fassio 2019), 새로운 상표의 창출은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광고의 기반이 될 수 있다(Athreye and Fassio, 2019; 강경남 외, 2020). 또한 기업이 특정 브랜드 이름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한다면, 소비자들은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해당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Statman and Tyebjee(1981)의 관찰에 따르면, 특허기간이 특허의 가치를 상표로 이전하는 데 이용되기 때문에, 상표에 대한 충성도로 인해 의약품 특허 만기가 시장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Parchomovsky and Siegelman(2002)은 특허권과 상표권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높인다고 보았고, Jennewein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특히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 특허권과 상표권이 가위의 양날처럼 한편으로는 기술기반의 자산,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기반의 자산으로 기능하며 서로 보완적, 의존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하였다(강경남, 2019; 강경남 외, 2020). Somaya와 Graham(2006)은 특허 포트폴리오가 모방과 소송을 증가시킬 때, 기업은 시장중심적 접근을 통해 상표권과 같은 추가적인 지식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자산을 보호하는 한편, 레버리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다(강경남 외, 2020). 또한 Llerena and Millot(2020)은 슈퍼모듈러리티(supermodularity) 관련 분석을 통해 의약품 분야에서 특허와 상표 간의 상호보완성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분석을 통해 광고의 파급수준이 높고 감가상각률이 낮다면 상표와 특허는 보완적일 가능성이 높고, 회사가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을 때보다 특허를 출원했을 때 상표 출원의 증가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Llerena and Millot, 2020). 반면, 광고의 파급수준이 낮고 감가상각률이 높은 경우, 특허와 상표는 대체재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Llerena and Millot, 2020).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제품의 수명 주기가 비교적 길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의약품 분야는 광고의 감가상각이 낮은 반면,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IT 분야는 광고의 감가상각률이 높다(Llerena and Millot, 2020). 이들은 권리 획득을 위한 비용을 고려할 때, 모든 산업분야에서 복합적 IP 활용이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Llerena and Millot, 2020).

Guo-Fitoussi 외(2019)의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 간의 상호보완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식재산권과 협력요인, 혁신활동 등 혁신 전략과의 보완성이 나타나, 지식재산 전략과 혁신 전략이 결합되어 활용될 때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Guo-Fitoussi et al., 2019).

디자인권과의 복합 활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데, Dahan(2014)는 패션 산업에서 디자이너들의 제품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권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디자인권 뿐만 아니라 응용 예술 작품으로서 저작권 의해 보호될 수 있고, 기능적 측면에서의 진보를 포함하고 산업적 이용 가능하다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통한 보호도 가능하며, 3D 상표를 적용하여 지재권 전략을 강화할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Dahan, 2014).

Helmets and Schautschick(2013)의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 묶음(IPR bundle)’의 활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화학, 의약품, 통신 등 강한 지식재산권 전략을 구사하는 산업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OECD(2015)의 연구에서는 글로벌 상위 R&D 기업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방식을 분석하여, 제조업 중 화학·의약품·컴퓨터 및 전자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에서 특허권과 상표권을 함께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식품제조 등 특허규모가 크지 않은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상표 출원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Dernis et al., 2015; 강경남, 2019; 강경남 외, 2020). 또한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은 상표를 통한 보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산업분야별 지식재산권 활용에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rnis et al., 2015; 강경남 외, 2020).

한편으로는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과 기업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EUIPO(2019)의 연구에 따르면, 상표, 특허, 디자인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묶음(IPR bundle)’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 후에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경남 외, 2020). EPO & EUIPO(2021)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여 기업의 매출 성과를 비교한 결과,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매출 성과가 높고, 특히 권리유형을 복합적으로 보유하는 ‘IP bundle’을 활용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보유의 효과가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강경남 외(2020)의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복합적으로 보유와 기업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상표, 특허, 디자인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3년 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복합적 활용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이 VC 등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강경남 외, 2020).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룬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아스피린, iPhone에 대한 분석이 있다. Jennewein 등은 ‘아스피린’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기술 자산과 브랜드 자산이 기술 생애주기와 제품 생애주기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에 핵심 요인으로 기능했다고 보았고(Jennewein et al., 2010; 강경남 외, 2020), Munari(2013)는 애플 iPhone 사례를 통해 하나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멀티 터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이를 시장에서 식별하기 위한 상표,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유럽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강경남 외(2020)의 연구에서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과 기업의 성장이 서로 양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각 권리유형의 활용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하며, 다양한 권리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 사례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보유 현황과 추이, 보유에 따른 효과를 산업재산권 권리 유형의 결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복합적 권리 활용의 구체적 사례를 발굴하고자 한다.



## 제 3 장

### 권리의 복합적 활용과 기업 성과

- 제1절 산업재산권 복합적 활용 현황
- 제2절 산업재산권 복합적 보유와 기업 성과
- 제3절 산업재산권 복합적 활용 사례
- 제4절 산업재산권 복합적 활용 특징



# 제 1 절

## 산업재산권 복합적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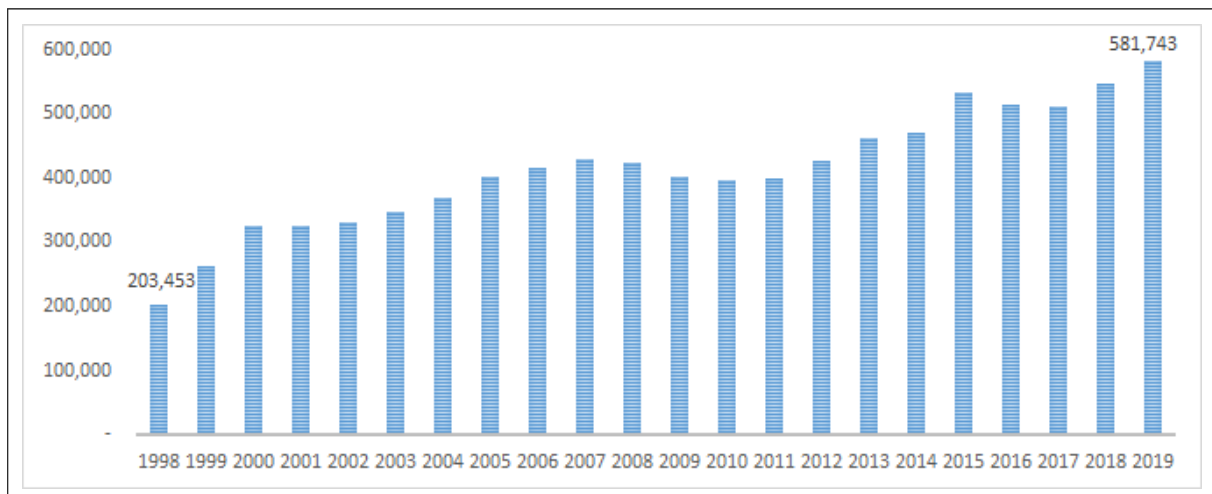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기업들의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을 알아보고, 복합적 권리 보유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 I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특허청의 지식재산 통계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연도별 산업재산권 출원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3-1]과 같이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2019년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는 581,743건으로, 1998년 203,453건의 약 2.9배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림 3-1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 활동 추이(1998~2019)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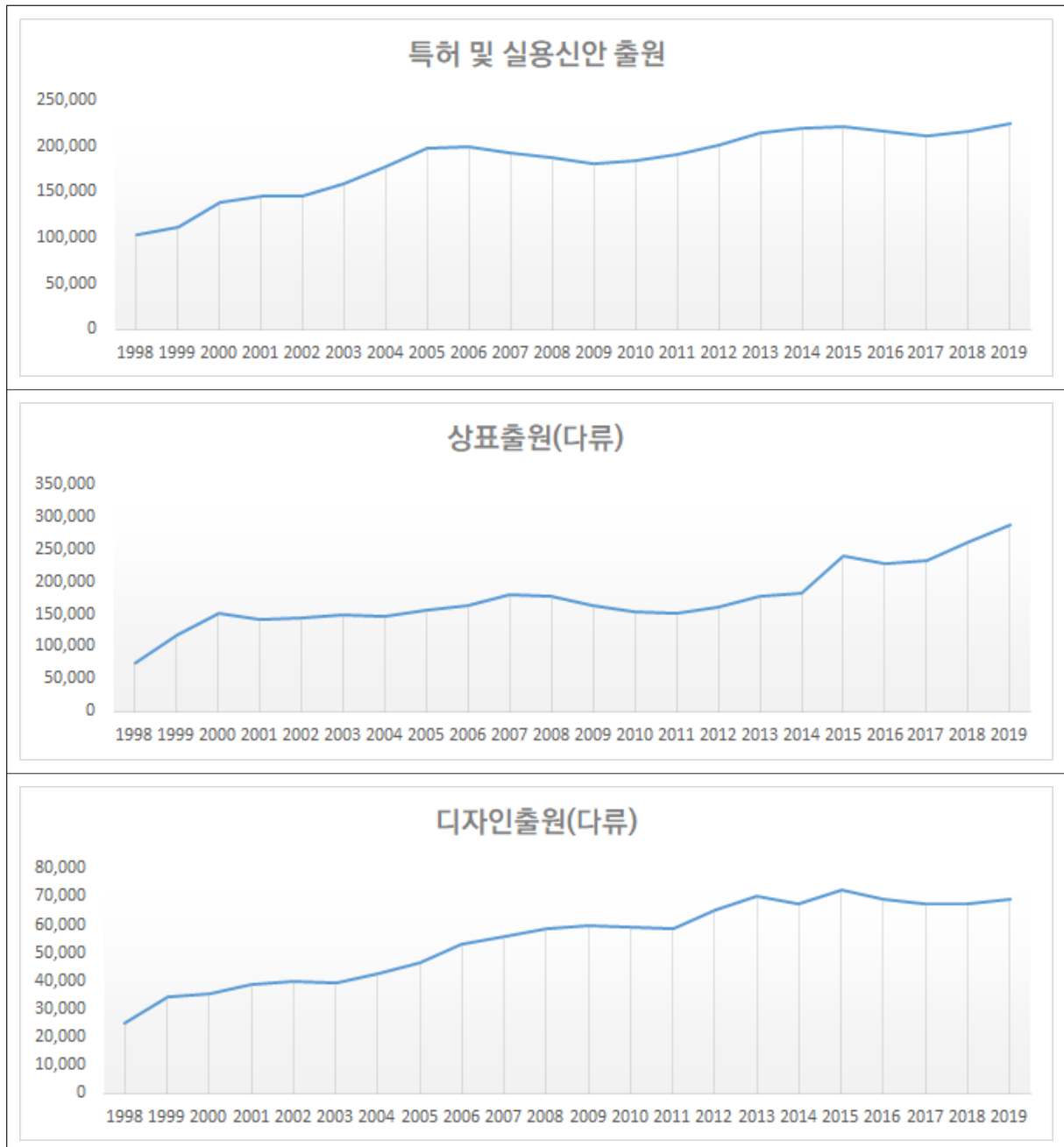


출처 : 지식재산 통계 서비스 ipstat.kipi.or.kr (2021. 6. 수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산업재산권의 각 권리유형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연평균 증가율 3.7%, 상표(다류상표 기준) 출원건수는 연평균 증가율 6.7%, 디자인(복수디자인 기준) 출원 연평균 증가율 4.9%로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표 3-1〉 및 [그림 3-2] 참조).

그림 3-2 각 권리유형별 출원 활동 추이(1998~2019)

(단위: 건)



출처 : 지식재산 통계 서비스 ipstat.kipi.or.kr (2021. 6. 수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표 3-1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 통계(1998~2019)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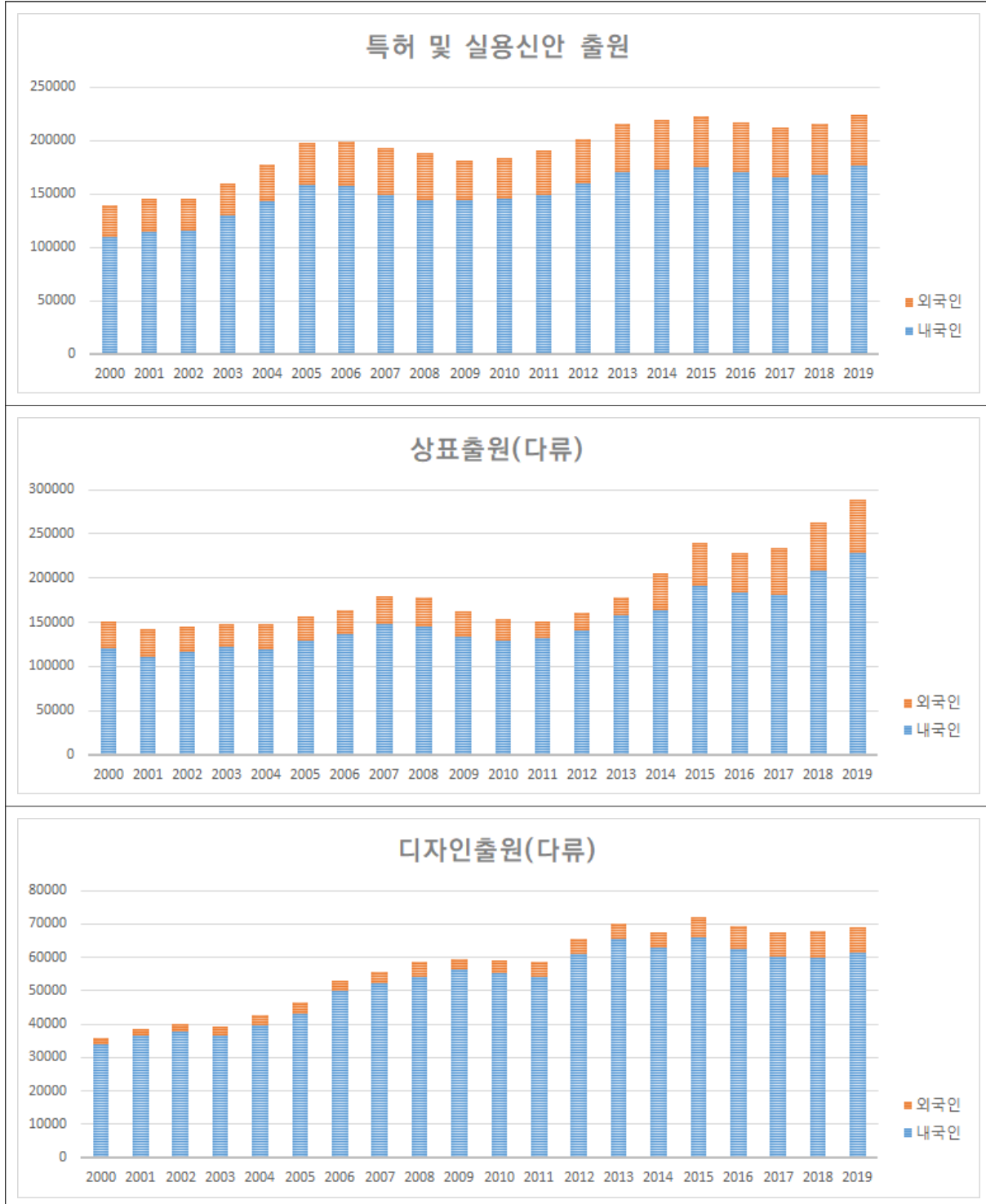
구분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다류)	디자인(다류)
1998	104,084	74,214	25,155
1999	111,292	117,285	34,589
2000	139,173	151,211	35,678
2001	145,416	142,492	38,522
2002	145,329	144,678	39,952
2003	159,477	148,691	39,346
2004	177,868	147,319	42,879
2005	198,096	156,270	46,615
2006	199,097	164,432	52,879
2007	193,553	180,257	55,662
2008	188,037	178,211	58,912
2009	180,667	162,682	59,537
2010	183,762	153,179	59,204
2011	190,778	150,977	58,571
2012	201,339	160,447	65,469
2013	215,557	177,685	70,054
2014	219,476	183,815	67,586
2015	222,405	239,334	72,190
2016	216,597	227,762	69,325
2017	211,584	233,892	67,374
2018	216,224	263,140	67,721
2019	224,422	288,384	68,937

출처 : 지식재산 통계 서비스 ipstat.kipi.or.kr (2021. 6. 수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산업재산권 출원 활동을 제1출원인의 국적에 따라 구분하여 우리나라 내국인의 활동을 살펴보면, 2019년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176,578건으로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78.7%가 내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 출원은 228,535건(전체 상표 출원의 79.2%), 디자인 출원은 61,274건(전체 디자인 출원의 88.9%)으로,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 중 약 80%가 내국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2〉 및 [그림 3-3] 참조).

그림 3-3 내외국인의 권리유형별 출원 활동 추이(1998~2019)

(단위: 건)



출처 : 지식재산 통계 서비스 ipstat.kipi.or.kr (2021. 6. 수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표 3-2 우리나라 내국인 산업재산권 출원 통계(1998~2019)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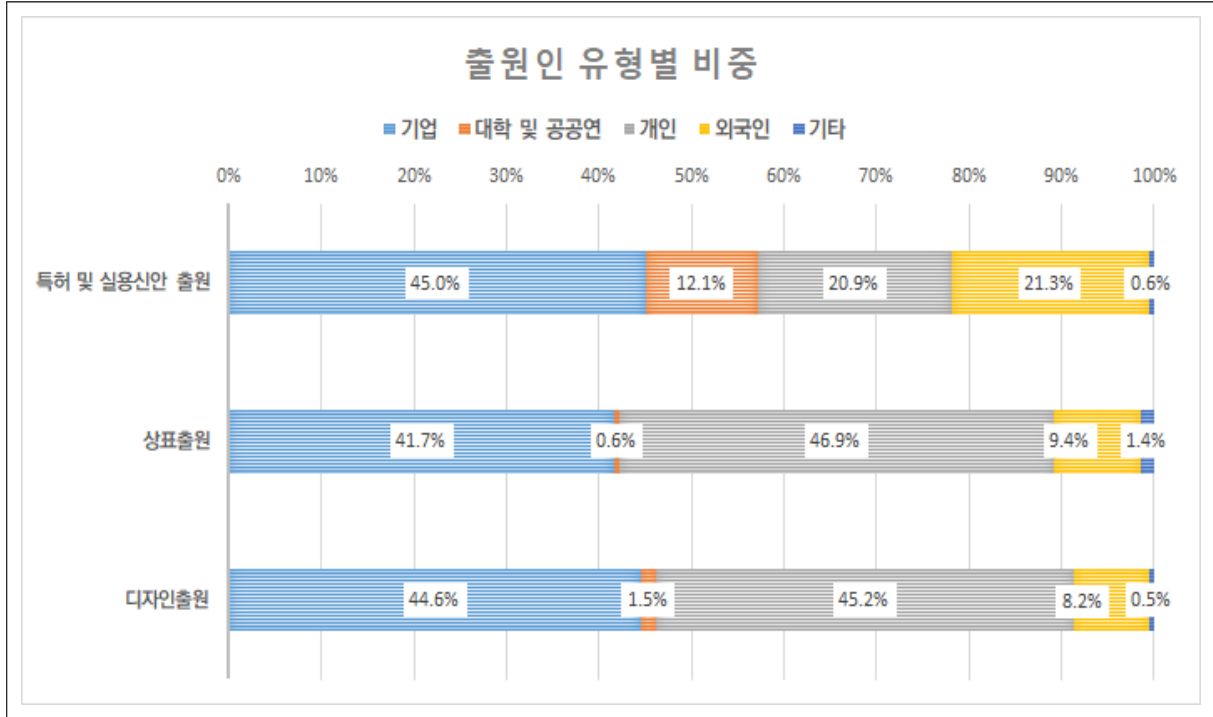
구분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다류)	디자인(다류)
2000	109,648	120,419	33,894
2001	114,103	111,105	36,657
2002	115,232	116,760	37,729
2003	130,487	122,080	36,689
2004	142,417	119,836	39,656
2005	158,722	129,635	43,247
2006	157,669	136,590	49,766
2007	149,333	147,489	52,055
2008	144,085	144,920	54,278
2009	144,117	134,019	56,391
2010	144,998	129,993	55,369
2011	149,496	132,864	54,300
2012	160,035	140,908	60,867
2013	170,441	158,058	65,485
2014	172,827	164,235	63,076
2015	175,567	191,485	65,895
2016	170,819	183,639	62,629
2017	165,480	181,234	60,394
2018	168,329	207,966	60,047
2019	176,578	228,535	61,274

출처 : 지식재산 통계 서비스 ipstat.kipi.or.kr (2021. 6. 수집) 자료를 토대로 작성

특허청의 ‘2019 지식재산 통계연보’(특허청, 2020) 정보를 활용하여 출원인 유형별 산업재산권 출원 활동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5.0%,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의 비중 12.1%, 개인 비중 20.9%, 외국인 비중 21.3% 등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기업이 상표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7%, 디자인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6%로, 산업재산권 출원에서 기업의 활동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출원인 유형별 출원 활동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출처 : 2019 지식재산 통계연보(특허청, 2020) 자료를 토대로 작성

## II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이하에서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현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기업활동조사는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 매출액 등 경영실적의 포괄적 파악을 목적으로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통계청, 2016; 강경남 외, 2020). 조사 대상은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법인 중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은 상용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조사를 수행한다(통계청, 2016; 강경남, 2019; 강경남 외, 2020).

기업활동조사 데이터 중 주요 항목에 누락이 있는 기업들을 제외한 12,900개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중 어느 하나라도 보유한 산업재산권 보유 기업 비중은 69.2%로 나타났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51.4%, 상표권 보유기업은 51.2%, 디자인권 보유기업은 24.1%로 파악되었다(〈표 3-3〉 참조).

산업별로 산업재산권 보유비율을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에서 83.1%로 산업재산권 보유 기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분야가 82.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가 81.1%, 교육 서비스업 분야가 79.2%로 그 뒤를 이었다.

권리유형별 보유비율을 살펴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기업 비중은 제조업 분야에서 74.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에서 67.7% 등으로 나타났고,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 분야는 교육 서비스업(76.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4.1%), 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 분야는 제조업(37.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25.0%) 등으로 파악되었다.

표 3-3 산업별(대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9년 기준)

구분	산업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농업, 임업 및 어업	39.3%	21.4%	32.1%	7.1%
광업	66.7%	66.7%	33.3%	0.0%
제조업	83.1%	74.2%	56.0%	37.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8.9%	46.4%	48.2%	25.0%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9.3%	66.1%	21.3%	10.2%
건설업	70.4%	51.1%	47.8%	17.2%
도매 및 소매업	53.1%	22.9%	47.8%	16.3%
운수업	18.5%	5.2%	15.7%	2.3%
숙박 및 음식점업	51.9%	8.3%	49.9%	8.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2.0%	53.7%	74.1%	15.7%
금융 및 보험업	58.7%	23.5%	57.0%	10.9%
부동산업 및 임대업	44.4%	7.8%	41.6%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1.1%	67.7%	44.4%	14.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1.6%	13.6%	28.2%	6.4%
교육 서비스업	79.2%	23.4%	76.6%	14.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5.0%	15.0%	35.0%	5.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3.1%	4.5%	52.4%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4%	17.1%	40.8%	13.2%
전체	69.2%	51.4%	51.2%	24.1%

출처 : 2019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제조업 분야 중 산업재산권 보유 비중이 높은 산업분야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으로 관련 기업의 95.5%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4〉 참조). 2019년 기준 권리유형별 보유비율을 살펴보면,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분야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보유 비율이

90.7%로 높게 나타났고, 상표권 보유 비율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서 89.5%로 파악되었다. 디자인권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 분야는 가구제조업으로 응답기업의 80.0%가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제조업(중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9년 기준)

구분	산업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식료품 제조업	86.2%	59.0%	79.0%	32.0%
음료 제조업	90.6%	53.1%	75.0%	43.8%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74.7%	54.3%	55.4%	23.7%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85.0%	25.7%	84.3%	39.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8.0%	43.9%	63.4%	4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87.5%	75.0%	75.0%	68.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2.4%	64.2%	45.5%	34.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4.2%	59.1%	45.5%	34.8%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92.3%	84.6%	84.6%	46.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86.2%	78.5%	70.3%	29.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5.5%	87.5%	89.5%	30.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4.5%	76.8%	51.2%	43.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4.3%	73.0%	60.1%	32.6%
1차 금속 제조업	70.5%	60.1%	39.1%	22.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78.9%	74.0%	44.8%	3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7.2%	84.9%	56.4%	39.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93.4%	90.7%	75.3%	57.5%
전기장비 제조업	86.8%	83.9%	61.4%	48.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9.7%	85.5%	55.1%	4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3.4%	70.7%	28.7%	30.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0.4%	65.2%	36.5%	36.5%
가구 제조업	94.3%	85.7%	88.6%	80.0%
기타 제품 제조업	89.7%	79.3%	75.9%	70.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7.3%	27.3%	9.1%	0.0%
제조업	83.1%	74.2%	56.0%	37.5%

출처 : 2019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표 3-5 서비스 관련 산업(중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9년 기준)

구분	산업재산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0.7%	10.9%	17.4%	2.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3.8%	24.4%	47.5%	16.2%
소매업; 자동차 제외	61.8%	20.5%	59.8%	22.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0.9%	2.3%	9.5%	1.4%
수상 운송업	29.6%	3.7%	25.9%	0.0%
항공 운송업	77.8%	11.1%	66.7%	44.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2.8%	13.3%	26.7%	3.3%
숙박업	44.8%	4.5%	43.5%	2.6%
음식점 및 주점업	57.8%	11.4%	55.1%	12.4%
출판업	86.9%	58.8%	77.4%	15.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6.7%	20.0%	65.3%	12.0%
방송업	73.8%	16.3%	71.3%	10.0%
우편 및 통신업	79.6%	68.5%	70.4%	33.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4.8%	58.7%	67.1%	11.6%
정보서비스업	81.4%	61.8%	75.5%	20.6%
금융업	60.0%	22.5%	58.5%	15.5%
보험 및 연금업	69.8%	27.9%	69.8%	4.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52.2%	23.5%	49.6%	5.2%
부동산업	44.4%	7.8%	41.6%	3.5%
연구개발업	85.7%	75.3%	77.9%	11.7%
전문 서비스업	65.9%	29.6%	57.8%	14.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87.7%	86.5%	28.9%	15.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6.7%	21.2%	63.6%	15.2%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3.8%	9.2%	19.9%	2.4%
사업지원 서비스업	32.3%	13.2%	30.3%	5.3%
임대업; 부동산 제외	59.2%	34.7%	46.9%	30.6%
교육 서비스업	79.2%	23.4%	76.6%	14.3%
보건업	100.0%	100.0%	100.0%	33.3%
사회복지 서비스업	23.5%	0.0%	23.5%	0.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3%	14.3%	35.7%	10.7%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54.4%	3.5%	54.1%	1.1%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8.5%	23.1%	26.9%	15.4%
기타 개인 서비스업	52.0%	14.0%	48.0%	12.0%

출처 : 2019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서비스업 관련 분야 중 산업재산권 보유 비중이 높은 산업분야는 보건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출판업, 연구개발업 등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 기준 권리유형별 보유비중을 살펴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보유 비율이 높은 산업은 보건업,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우편 및 통신업 순으로 나타났고, 상표권 보유 비율이 높은 산업은 보건업, 연구개발업, 출판업, 교육 서비스업 순으로 파악되었으며, 디자인권 보유 비율이 높은 산업은 항공 운송업, 보건업, 우편 및 통신업 등으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권리의 복합적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33.8%,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21.6%,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같이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19.3%로 파악되었으며,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모두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17.3%로 파악되었다(〈표 3-6〉 참조).

산업별로 구분해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을 같이 보유한 기업의 비중이 높은 분야는 제조업(47.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6.0%)이었으며,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같이 보유한 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분야는 제조업(35.1%)으로 파악되었다. 제조업에서는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보유한 기업의 비중(29.5%)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모두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27.6%로 파악되었다.

표 3-6 산업별(대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복합적 보유기업 비중(2019년 기준)

구분	특허·실용신안 & 상표권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권	상표권 & 디자인권	특허&상표& 디자인권
농업, 임업 및 어업	14.3%	7.1%	3.6%	3.6%
광업	33.3%	0.0%	0.0%	0.0%
제조업	47.6%	35.1%	29.5%	27.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7%	25.0%	21.4%	21.4%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8.1%	10.2%	7.1%	7.1%
건설업	28.9%	15.9%	11.9%	11.0%
도매 및 소매업	18.1%	10.7%	14.9%	9.8%
운수업	3.0%	1.1%	1.5%	1.0%
숙박 및 음식점업	6.8%	4.4%	7.4%	4.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6.0%	13.9%	15.3%	13.5%
금융 및 보험업	21.8%	8.7%	10.9%	8.7%
부동산업 및 임대업	5.4%	1.2%	2.7%	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6%	12.8%	9.1%	8.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8%	4.3%	5.4%	3.9%
교육 서비스업	22.1%	10.4%	13.0%	1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0%	5.0%	5.0%	5.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1.3%	1.6%	1.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5%	9.2%	10.5%	6.6%
전체	33.8%	21.6%	19.3%	17.3%

출처 : 2019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산업재산권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기업 비중을 중분류 수준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3-7>, <표 3-8>과 같다.

**표 3-7 제조업(중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복합적 보유기업 비중(2019년 기준)**

구분	특허·실용신안 & 상표권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권	상표권 & 디자인권	특허&상표& 디자인권
식품 제조업	52.3%	26.7%	30.9%	26.0%
음료 제조업	40.6%	28.1%	37.5%	25.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37.1%	19.4%	18.3%	16.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5.0%	19.3%	39.3%	19.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1.7%	24.4%	39.0%	24.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62.5%	62.5%	56.3%	5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8.1%	31.3%	23.9%	21.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3.3%	25.8%	25.8%	19.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6.9%	46.2%	46.2%	46.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62.6%	26.8%	27.5%	25.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1.5%	28.5%	30.0%	28.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4.6%	40.0%	31.3%	29.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8.9%	29.8%	24.7%	21.9%
1차 금속 제조업	29.2%	21.3%	15.8%	15.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1.1%	37.6%	30.4%	29.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4.3%	38.7%	30.4%	30.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3.0%	56.4%	52.5%	51.7%
전기장비 제조업	58.5%	47.9%	39.4%	39.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1.1%	42.7%	32.2%	3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6.6%	29.8%	16.0%	15.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2%	34.8%	23.5%	22.6%
가구 제조업	80.0%	80.0%	74.3%	74.3%
기타 제품 제조업	65.5%	63.8%	65.5%	58.6%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1%	0.0%	0.0%	0.0%
제조업	47.6%	35.1%	29.5%	27.6%

출처 : 2019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표 3-8 서비스 관련 산업(중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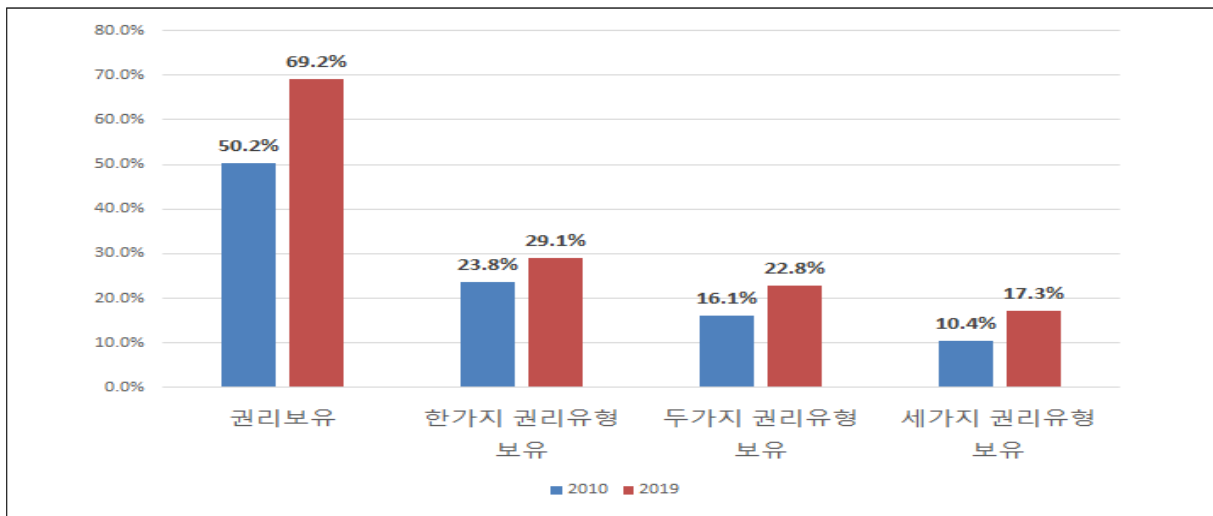
구분	특허·실용신안 & 상표권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권	상표권 & 디자인권	특허&상표& 디자인권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7.6%	2.2%	2.2%	2.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8.7%	10.7%	14.6%	9.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9.3%	13.9%	20.5%	13.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4%	0.6%	0.6%	0.4%
수상 운송업	0.0%	0.0%	0.0%	0.0%
항공 운송업	11.1%	11.1%	33.3%	11.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8%	2.2%	2.8%	2.2%
숙박업	3.2%	1.9%	2.6%	1.9%
음식점 및 주점업	9.7%	6.5%	11.4%	6.5%
출판업	49.4%	14.3%	15.0%	13.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8.7%	6.7%	12.0%	6.7%
방송업	13.8%	6.3%	10.0%	6.3%
우편 및 통신업	59.3%	31.5%	31.5%	29.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1.0%	11.6%	11.6%	11.6%
정보서비스업	55.9%	16.7%	20.6%	16.7%
금융업	21.0%	12.0%	15.5%	12.0%
보험 및 연금업	27.9%	2.3%	4.7%	2.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0.9%	5.2%	5.2%	5.2%
부동산업	5.4%	1.2%	2.7%	0.8%
연구개발업	67.5%	10.4%	10.4%	9.1%
전문 서비스업	23.0%	9.6%	12.6%	9.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8.0%	14.8%	6.8%	6.8%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2%	12.1%	15.2%	12.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8%	1.5%	1.9%	1.5%
사업지원 서비스업	11.5%	3.1%	5.1%	3.1%
임대업; 부동산 제외	26.5%	24.5%	22.4%	20.4%
교육 서비스업	22.1%	10.4%	13.0%	10.4%
보건업	100.0%	33.3%	33.3%	33.3%
사회복지 서비스업	0.0%	0.0%	0.0%	0.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7%	10.7%	7.1%	7.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3.2%	0.4%	1.1%	0.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1.5%	15.4%	7.7%	7.7%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	6.0%	12.0%	6.0%

출처 : 2019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2010년과 2019년의 복합적 권리 보유 수준을 비교해 보면, 산업재산권 권리보유 비율은 2010년 50.2%에서 2019년 69.2%로 약 19.0%point 증가하였다. 한 가지 권리유형을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23.8%에서 29.1%로 5.4%point 많아졌고, 두 가지 권리유형을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16.1%에서 22.8%로 6.8%point, 세 가지 권리 유형을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10.4%에서 17.3%로 6.9%point 증가하였다<sup>8)</sup> ([그림 3-5] 및 <표 3-10>, <표 3-11> 참조).

그림 3-5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0년 vs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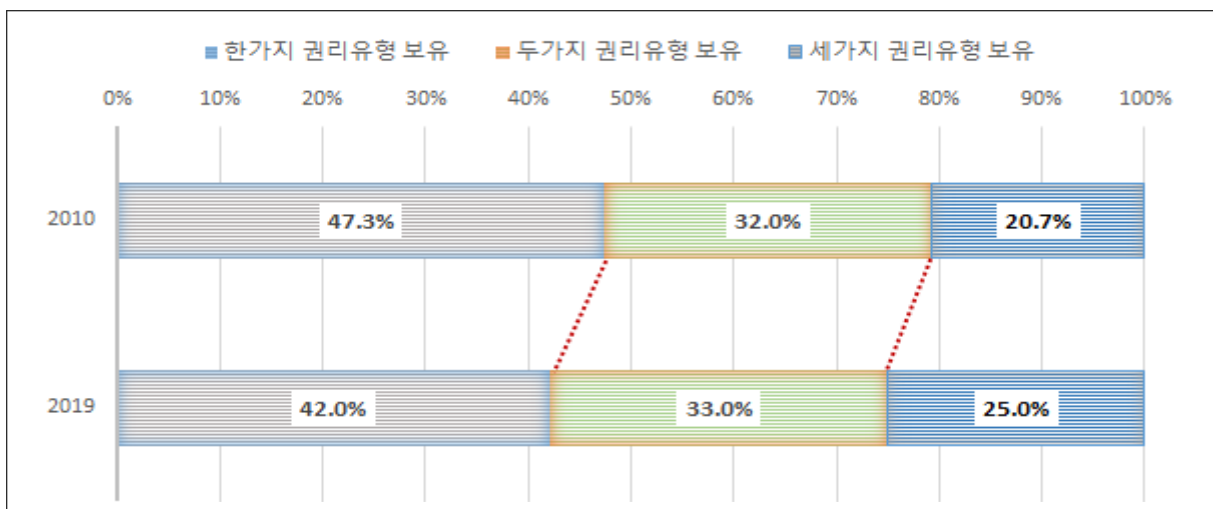
(단위: %)



출처 : 2010년, 2019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그림 3-6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구성비(2010년 vs 2019년)

(단위: %)



출처 : 2010년, 2019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8) 반올림상의 차이로 인해 각 항목의 계산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산업재산권 보유기업이 보유한 권리유형 가짓수에 따라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한 가지 권리유형 보유기업의 구성비 47.3%, 두 가지 권리유형 보유 기업의 구성비 32.0%, 세 가지 권리유형 보유 기업의 구성비가 20.7%였으며, 2019년에는 한 가지 권리유형 보유기업의 구성비 42.0%, 두 가지 권리유형 보유기업의 구성비 33.0%, 세 가지 권리유형 보유기업의 구성비 25.0%로 여러 가지 권리유형을 보유한 기업의 구성비가 증가하였다(그림 [3-6] 참조).

산업별로 2010년과 2019년의 복합적 권리 보유 수준을 비교해 보면,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산업분야에서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9 산업별(대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비중 변화(2010년 vs 2019년)

구분	산업재산권 보유 비중		
	2010년	2019년	차이 <sup>9)</sup>
농업, 임업 및 어업	20.0%	39.3%	19.3%p
광업	0.0%	66.7%	66.7%p
제조업	67.8%	83.1%	15.3%p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1.7%	58.9%	7.2%p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4.5%	69.3%	14.7%p
건설업	35.8%	70.4%	34.6%p
도매 및 소매업	31.3%	53.1%	21.8%p
운수업	9.1%	18.5%	9.5%p
숙박 및 음식점업	27.7%	51.9%	24.3%p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7.3%	82.0%	24.7%p
금융 및 보험업	20.9%	58.7%	37.8%p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1%	44.4%	28.2%p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1.9%	81.1%	19.2%p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6%	31.6%	21.0%p
교육 서비스업	40.6%	79.2%	38.6%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5.0%	35.0%p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2%	53.1%	33.9%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9%	47.4%	16.5%p
전체	50.2%	69.2%	19.0%p

출처 : 2010년, 2019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9) 통계표의 수치는 반올림상의 차이로 인해 각 항목의 계산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3-10〉과 〈표 3-11〉을 비교해보면, 2010년 대비 2019년 단일권리보유 기업 비중은 5.4%point, 복합적 권리보유 기업 비중은 13.7%point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제조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분야에서는 단일권리를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복합적으로 권리를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7] 참조).

표 3-10 산업별(대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단일 보유기업 비중 변화(2010년 vs 2019년)

구분	단일 권리보유		
	2010년	2019년	차이 <sup>10)</sup>
농업, 임업 및 어업	13.3%	21.4%	8.1%p
광업	0.0%	33.3%	33.3%p
제조업	28.3%	26.1%	-2.2%p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0.7%	19.6%	-1.0%p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5.5%	48.0%	2.6%p
건설업	17.8%	35.7%	18.0%p
도매 및 소매업	16.7%	29.1%	12.4%p
운수업	6.3%	14.8%	8.5%p
숙박 및 음식점업	19.7%	42.2%	22.5%p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0%	33.9%	8.9%p
금융 및 보험업	14.5%	34.6%	20.2%p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6%	36.6%	25.0%p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8.9%	43.7%	-5.2%p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8%	19.0%	12.1%p
교육 서비스업	26.1%	54.5%	28.5%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0%	20.0%p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7%	48.2%	32.6%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0%	30.3%	10.3%p
전체	23.8%	29.1%	5.4%p

출처 : 2010년, 2019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10) 통계표의 수치는 반올림상의 차이로 인해 각 항목의 계산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3-11 산업별(대분류 기준) 산업재산권 복합적 보유기업 비중 변화(2010년 vs 2019년)

구분	복합적 권리보유		
	2010년	2019년	차이 <sup>11)</sup>
농업, 임업 및 어업	6.7%	17.9%	11.2%p
광업	0.0%	33.3%	33.3%p
제조업	39.5%	57.0%	17.4%p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1.0%	39.3%	8.3%p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9.1%	21.3%	12.2%p
건설업	18.0%	34.7%	16.6%p
도매 및 소매업	14.6%	24.0%	9.5%p
운수업	2.8%	3.7%	0.9%p
숙박 및 음식점업	8.0%	9.7%	1.8%p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2.2%	48.1%	15.8%p
금융 및 보험업	6.4%	24.0%	17.6%p
부동산업 및 임대업	4.5%	7.8%	3.3%p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9%	37.4%	24.4%p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8%	12.6%	8.8%p
교육 서비스업	14.5%	24.7%	10.2%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0%	15.0%p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5%	4.8%	1.3%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9%	17.1%	6.2%p
전체	26.5%	40.1%	13.7%p

출처 : 2010년, 2019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11) 통계표의 수치는 반올림상의 차이로 인해 각 항목의 계산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림 3-7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비중(2010년 vs 2019년)

(단위: %)



출처 : 2010년, 2019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 제 2 절

# 산업재산권 복합적 보유와 기업 성과

### I 연구 개요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Statman와 Tyebjee(1981)는 의약품 관련 특허가 권리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권이 소멸되더라도, 특허의 가치가 상표의 가치로 전환되어, 해당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기업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임으로써 특허만료의 효과를 미비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으며, Jennewein 외(2010)의 연구에서는 바이엘사의 아스피린을 사례로 하여 생애주기에 걸친 특허권과 상표권 간의 상호보완 작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룬 바 있다(Jennewein et al, 2010; 강경남 외, 2020). Helmers와 Schautschick(2013)의 사례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활용이 ‘기술’적 측면과 ‘시장’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기업의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Helmers and Schautschick, 2013; 강경남 외, 2020). EUIPO(2019) 및 EUIPO(2020)에서는 복합적 권리활용과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중 EUIPO(2019)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권리유형의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기업이 출원 이후에 “양의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EUIPO, 2019; 강경남 외, 2020), 유럽특허청과 유럽공동체 상표청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권리유형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EPO & EUIPO, 2021). 강경남 외(2020)의 연구에서는 산업재산권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이후에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분석하였는데, 상표, 특허, 디자인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경남 외, 2020). 그러나, 각 권리유형의 활용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 특히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보유를 권리유형의 결합별로 구분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유럽 EPO & EUIPO(2021)의 연구와 유사하게,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보유를 유형화하고, 기업의 성과와 양의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 II 데이터 및 주요 변수

분석을 위해 통계청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도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기업 식별정보(기업체패널키)를 활용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패널구성을 위한 기업체패널키, 종사자수 등 주요 변수에 무응답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데이터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19,974개의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강경남 외, 2020).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즉 단일의 권리유형을 보유한 경우 보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결합하여 보유한 경우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복합적 보유'여부를 주요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때 다양한 권리의 묶음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한 가지 권리유형만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 권리유형을 활용하는 경우, 세 가지 권리유형을 묶음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변수를 도출하였으며, 권리유형별로의 효과 확인을 위해, 특허·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특허·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세 가지 유형의 권리를 모두 보유한 경우를 구분한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 종업원 규모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성과로 사용한 변수들은 기업의 생존(Helmets and Rogers, 2011), 고용 증가율(Hall et al., 2012), Tobin's Q(Griliches, 1985; Hall et al, 2000), 기업의 주가(Pakes, 1985), 매출 규모(Comanor and Scherer, 1969; Bloom and Reenen, 2002), 종업원수 대비 매출규모(Bascavusoglu-Moreau and Tether, 2011; OHIM, 2015; EUIPO, 2020), 기업 성장(EUIPO, 2019; 강경남 외, 2020)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Bascavusoglu-Moreau and Tether(2011), OHIM (2015) 및 EPO & EUIPO(2021)의 연구와 같이 종업원수 대비 매출규모를 기업의 성과 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3-12 주요 변수

구분	변수	내용
기업성과	종업원수 대비 매출규모	기업의 종업원 1인당 매출규모를 로그변환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보유1	단일 권리유형 보유	한 가지 유형의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특허·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중 한가지 유형만 보유시 1, 아니면 0
	두 가지 권리유형 보유	두 가지 유형의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특허·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중 2가지 보유시 1, 아니면 0
	세 가지 권리유형 보유	세 가지 유형의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특허·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모두 보유시 1, 아니면 0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보유2	특허·실용신안권 단일	특허·실용신안권만 단독 보유한 경우 특허·실용신안권만 보유시 1, 아니면 0
	상표권 단일	상표권만 단독 보유한 경우 특허·실용신안권만 보유시 1, 아니면 0

구분	변수	내용
	디자인권 단일	디자인권만 단독 보유한 경우 특허·실용신안권만 보유시 1, 아니면 0
	특허·실용신안권 &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특허·실용신안권 & 상표권 보유시 1, 아니면 0
	특허·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특허·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특허·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보유시 1, 아니면 0
	상표권 & 디자인권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상표권 & 디자인권 보유시 1, 아니면 0
	특허·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세 가지 유형의 산업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경우 특허·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모두 보유시 1, 아니면 0
통제변수	기업규모	기업이 보유한 종업원수를 로그변환
	중소기업 여부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 종업원수 300인 미만이면 1, 아니면 0
	산업분야	대분류 단위의 산업분야, 각각 더미변수로 포함

### III 분석모형

OHIM(2015) 및 강경남 외(2019)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로그선형변환을 한 함수를 사용한 바 있다. 종속변수로 지식재산 관련 매출규모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준로그 함수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강경남, 2019; 강경남 외, 2019).

종속변수에 log를 취하고, 독립변수는 선형을 사용하는 로그-선형모형의 경우,

$$\log(Y_{it}) = \alpha + \beta X_{it} + \epsilon_{it}$$

로 표현될 수 있고, 이 때  $\beta$ 값은 독립변수의 절대적인 1 단위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상대적 변화(X 변수 1 단위변화에 대한 Y 변수  $\beta\%$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강경남, 2019; 강경남 외, 2019).

## IV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도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에서 주요 변수에 대한 값의 누락이 있는 경우 listwise deletion 방식으로 제외하고 총 119,974개의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8.95%, 2019년 10.75% 등으로 구성되었고,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업원수 300인 미만 기업 비중이 83.10%, 종업원수 300인 이상인 기업 비중이 16.90%로 구성되었다(〈표 3-13〉 참조).

표 3-13 연도 및 규모별 데이터셋 구성(n=119,974)

산업	빈도수	구성비(%)	기업 규모별			
			300인 미만	구성비(%)	300인 이상	구성비(%)
2010	10,741	8.95	8,991	83.71	1,750	16.29
2011	11,414	9.51	9,593	84.05	1,821	15.95
2012	11,689	9.74	9,754	83.45	1,935	16.55
2013	11,887	9.91	9,888	83.18	1,999	16.82
2014	12,072	10.06	10,023	83.03	2,049	16.97
2015	12,121	10.10	10,035	82.79	2,086	17.21
2016	12,141	10.12	10,018	82.51	2,123	17.49
2017	12,236	10.20	10,086	82.43	2,150	17.57
2018	12,773	10.65	10,611	83.07	2,162	16.93
2019	12,900	10.75	10,701	82.95	2,199	17.05
전체	119,974	100.00	99,700	83.10	20,274	16.90

산업별 데이터 구성을 살펴보면, 〈표 3-14〉와 같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구성 비중이 높다.

표 3-14 산업별 데이터셋 구성(n=119,974)

산업	빈도수	구성비(%)
농업, 임업 및 어업	189	0.16
광업	48	0.04
제조업	58,884	49.0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13	0.34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995	0.83
건설업	5,683	4.74
도매 및 소매업	13,120	10.94
운수업	6,921	5.77
숙박 및 음식점업	2,790	2.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175	8.48

산업	빈도수	구성비(%)
금융 및 보험업	2,821	2.3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50	1.8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773	4.8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840	4.87
교육 서비스업	773	0.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2	0.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18	2.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9	0.57
전체	119,974	100.00

주요 변수와 관련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보유 관련, 하나의 권리유형만 보유한 기업이 27.2%, 두 가지 권리유형을 보유한 기업이 20.0%, 세 가지 권리유형을 보유한 기업은 14.5%로 나타났다. 평균 종업원수는 310.83명, 기업의 매출규모는 2,288억 원이고,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은 83.1%이다(〈표 3-15〉 참조).

표 3-15 주요 변수 관련 기초통계량(n=119,974)

변수	평균	표준편차
기업 성과(억원)	2,288.219	19,144.41
단일 권리유형 보유	0.272	-
두 가지 권리유형 보유	0.200	-
세 가지 권리유형 보유	0.145	-
종업원수(명)	310.832	1,541.19
중소기업	0.831	-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다음 〈표3-16〉과 같다.

표 3-16 변수 간 상관관계(n=119,974)

	1	2	3	4	5
1. 기업 성과	1.000				
2. 단일 권리유형 보유	0.026***	1.000			
3. 두 가지 권리유형 보유	0.059***	-0.306***	1.000		
4. 세 가지 권리유형 보유	0.100***	-0.251***	-0.206***	1.000	
5. 종업원 규모	-0.056***	-0.053***	0.067***	0.216***	1.000
6. 중소기업 여부	0.024***	0.056***	-0.027***	-0.154***	-0.723***

\*\*\*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다양한 권리유형 보유가 기업의 성과와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권리 보유와 기업 성과 간에 양의 관계를 보였다. 특히 한 가지 권리유형을 보유한 경우( $\beta_{\text{단일 권리유형 보유}} = 0.060$ )에 비해, 여러 가지 권리유형을 보유한 경우( $\beta_{\text{두 가지 권리유형 보유}} = 0.092$ ,  $\beta_{\text{세 가지 권리유형 보유}} = 0.146$ ) 기업의 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17〉 참조).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산업재산권 권리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차이를 계산하면,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단일 권리유형을 보유한 경우 6.1%, 두 가지 권리유형을 보유한 경우 9.6%, 세 가지 권리유형을 보유한 경우 15.7% 기업 성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8 권리유형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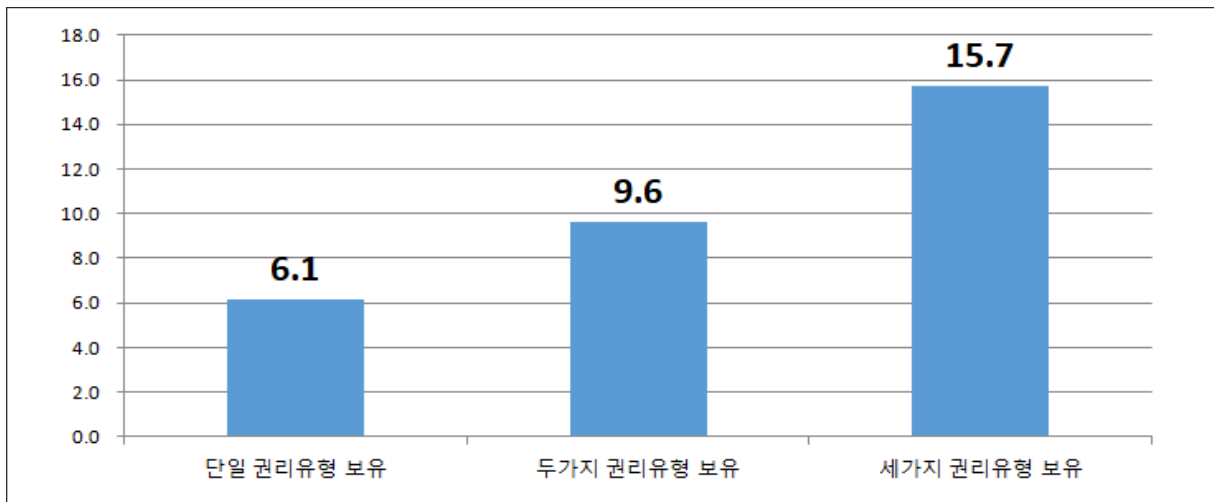


표 3-17 주요 분석 결과(1) : 복합적 권리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종속변수: 기업성과	Coef.	Std. Err.	P>z	
단일 권리유형 보유	0.060***	0.005	0.000	
두 가지 권리유형 보유	0.092***	0.006	0.000	
세 가지 권리유형 보유	0.146***	0.007	0.000	
종업원 규모	-0.328***	0.004	0.000	
중소기업 여부	-0.024***	0.008	0.002	
산업분야	농업, 임업 및 어업	0.404***	0.104	0.000
	광업	0.277	0.174	0.112
	제조업	0.475***	0.040	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963***	0.090	0.000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285***	0.065	0.000
	건설업	0.467***	0.044	0.000
	도매 및 소매업	0.485***	0.041	0.000

종속변수: 기업성과	Coef.	Std. Err.	P>z
운수업	-0.097**	0.047	0.040
숙박 및 음식점업	-0.211***	0.048	0.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46	0.042	0.281
금융 및 보험업	0.733***	0.052	0.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207***	0.045	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17	0.043	0.68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374***	0.044	0.000
교육 서비스업	-0.092	0.059	0.1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506***	0.111	0.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255***	0.052	0.000
Number of obs		119,974	
Number of groups		18,332	
Wald chi2(22)		12,513***	

\*\*  $p < 0.05$  수준, \*\*\*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권리유형 보유를 보다 세분화하여 단일 권리유형을 각각 특허·실용신안권 단일 보유, 상표권 단일 보유, 디자인권 단일 보유로 구분하고, 두 가지 권리유형 보유를 각각 특허·실용신안권과 상표권 보유, 특허·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 보유, 상표권과 디자인권 보유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표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허·실용신안권만 보유한 기업은 14.4%, 상표권만 보유한 기업은 12.4%, 디자인권만 보유한 기업은 0.4%이며, 특허·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을 함께 보유한 기업은 14.3%, 특허·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보유한 기업 4.0%,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보유한 기업은 1.7%로 파악되었다.

표 3-18 주요 변수 관련 기초통계량(n=119,974)

구분	빈도수	구성비	
단일 권리유형 보유	특허·실용신안권 단일	17,251	14.4
	상표권 단일	14,886	12.4
	디자인권 단일	518	0.4
두 가지 권리유형 보유	특허·실용신안권 & 상표권	17,177	14.3
	특허·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4,762	4.0
	상표권 & 디자인권	2,079	1.7
세 가지 권리유형 보유	특허·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17,349	14.5

패널 분석을 통해 권리유형 보유의 복합적 구성과 기업의 성과를 살펴본 결과, <표 3-19>와 같이 모든 권리유형의 조합에서 권리를 단일로 보유한 경우 보다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산업재산권 권리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차이를 계산하면, 특허·실용신안권만 단일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4.8% 높게 나타난 반면, 특허·실용신안권과 함께 상표권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9.6%, 특허·실용신안권과 함께 디자인권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8.2%, 특허·실용신안권과 함께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15.4% 높게 파악되었다(그림 3-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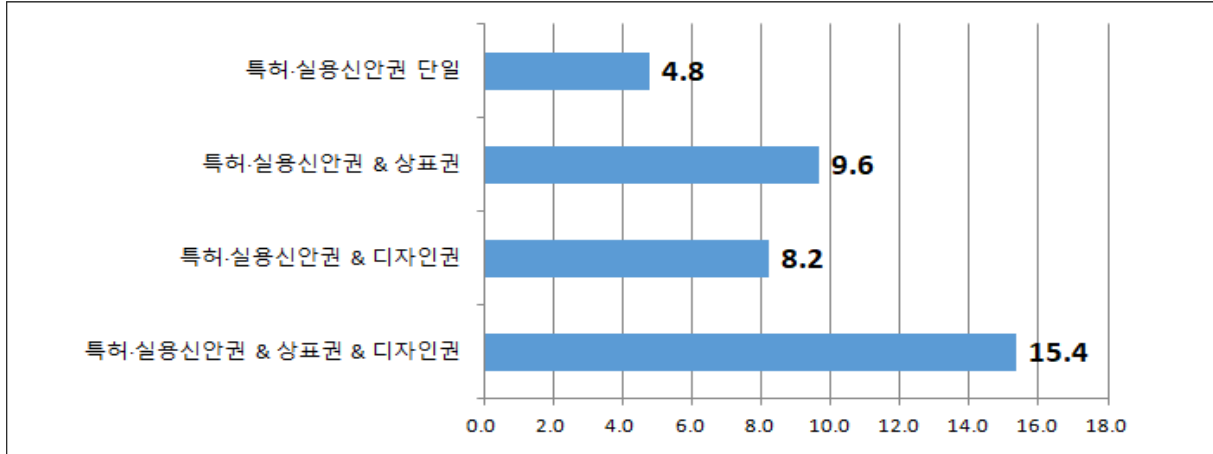
표 3-19 주요 분석 결과(2) : 권리유형별 복합적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종속변수: 기업성장	Coef.	Std. Err.	P> z	
특허·실용신안권 단일	0.046***	0.006	0.000	
상표권 단일	0.072***	0.006	0.000	
디자인권 단일	0.066***	0.022	0.003	
특허·실용신안권 & 상표권	0.092***	0.006	0.000	
특허·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0.079***	0.010	0.000	
상표권 & 디자인권	0.093***	0.013	0.000	
특허·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0.143***	0.007	0.000	
종업원 규모	-0.327***	0.004	0.000	
중소기업 여부	-0.024***	0.008	0.002	
산업분야	농업, 임업 및 어업	0.405***	0.104	0.000
	광업	0.278	0.174	0.110
	제조업	0.477***	0.040	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963***	0.090	0.000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288***	0.065	0.000
	건설업	0.469***	0.044	0.000
	도매 및 소매업	0.486***	0.041	0.000
	운수업	-0.098**	0.047	0.039
	숙박 및 음식점업	-0.214***	0.048	0.0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45	0.042	0.289
	금융 및 보험업	0.733***	0.052	0.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208***	0.045	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17	0.043	0.69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376***	0.044	0.000
	교육 서비스업	-0.096	0.059	0.1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511***	0.111	0.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257***	0.052	0.000
Number of obs		119,974		
Number of groups		18,332		
Wald chi2(26)		12,530***		

\*\* p<0.05 수준, \*\*\*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그림 3-9 특허·실용신안권과 타 권리의 복합적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단위: %)



상표권만 단일 보유한 경우에는 기업 성과가 7.5% 높게 나타난 반면, 상표권과 특허·실용신안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9.6%, 디자인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9.8% 높게 파악되었고(그림 3-10 참조), 디자인권은 단일 보유 기업의 성과가 6.8%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디자인과 특허·실용신안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8.2%, 상표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9.8%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11 참조).

그림 3-10 상표권과 타 권리의 복합적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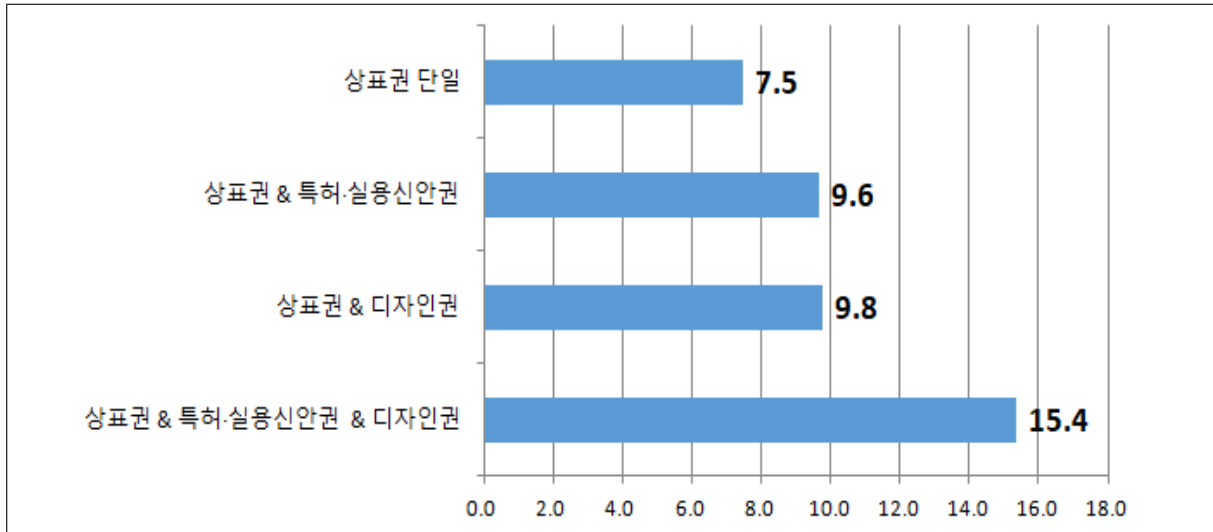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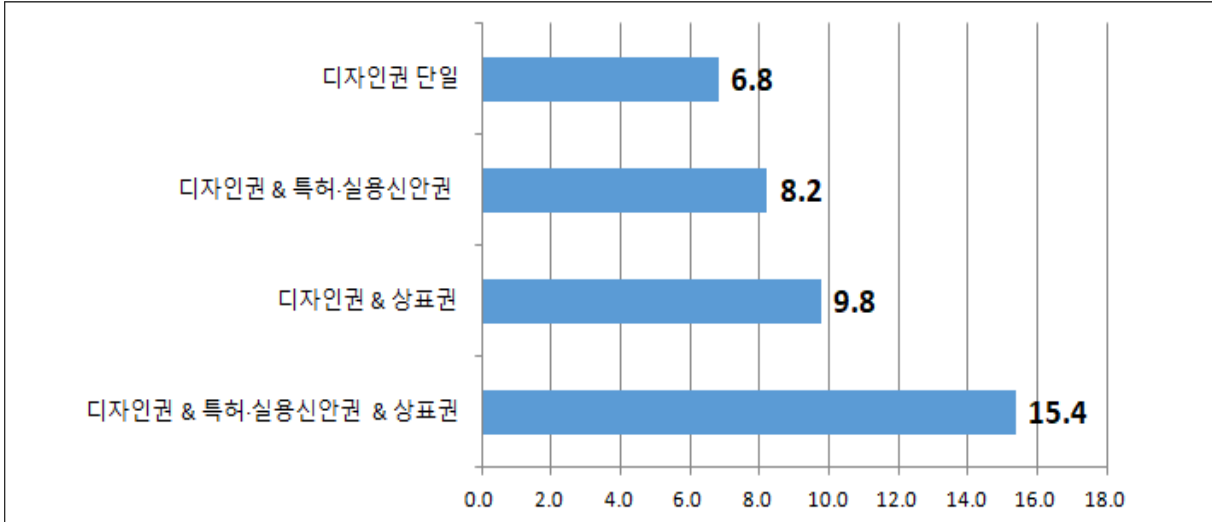


그림 3-11 디자인권과 타 권리의 복합적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단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표 3-20>에 정리된 바와 같이 대기업에서 권리의 복합적 보유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세 가지 권리유형을 모두 보유한 대기업의 기업 성과는 30.6% 높은 반면, 중소기업의 기업 성과는 10.8%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12 권리유형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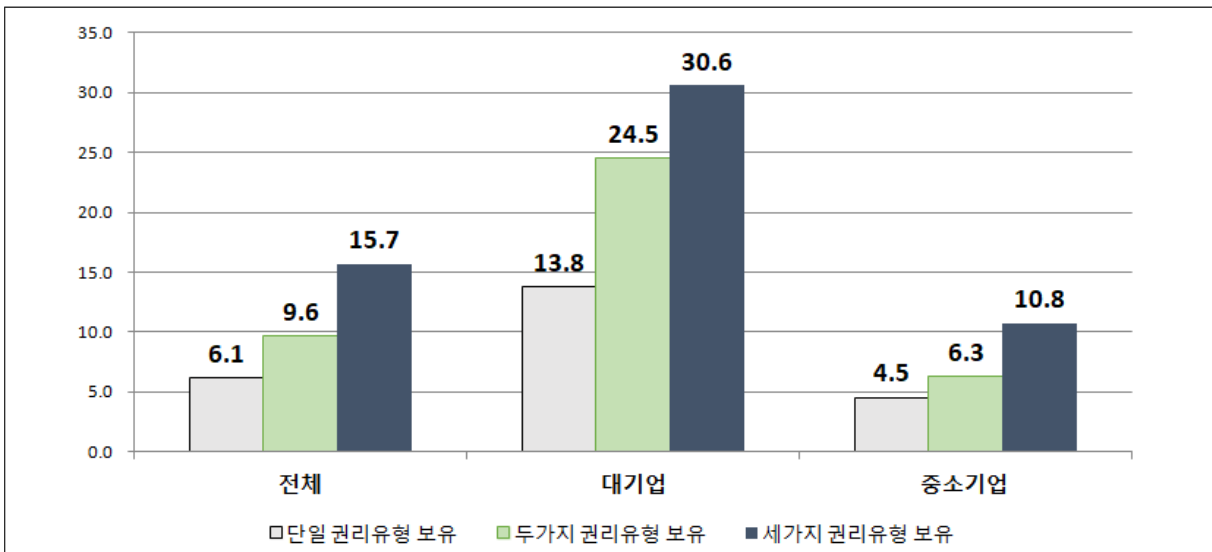


표 3-20 주요 분석 결과(3) : 복합적 권리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 대기업 vs 중소기업

종속변수: 기업성과		전제	대기업	중소기업
단일 권리유형 보유		0.060***	0.129***	0.044***
두 가지 권리유형 보유		0.092***	0.219***	0.061***
세 가지 권리유형 보유		0.146***	0.267***	0.102***
종업원 규모		-0.328***	-0.255***	-0.344***
중소기업 여부		-0.024***	-	-
산업분야	농업, 임업 및 어업	0.404***	0.587***	0.399***
	광업	0.277	0.526*	0.273
	제조업	0.475***	0.551***	0.47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963***	0.821***	0.997***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285***	0.105	0.329***
	건설업	0.467***	0.231*	0.528***
	도매 및 소매업	0.485***	0.449***	0.513***
	운수업	-0.097**	-0.040	-0.125**
	숙박 및 음식점업	-0.211***	-0.103	-0.24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46	-0.095	0.075*
	금융 및 보험업	0.733***	1.016***	0.648***
	부동산업 및 임대업	-0.207***	-0.934***	-0.1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17	0.009	0.0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374***	-0.973***	-0.284***
	교육 서비스업	-0.092	-0.144	-0.09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506***	-0.455**	-0.7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255***	-0.091***	-0.224***
	Number of obs		119,974	20,274
Number of groups		18,332	3,387	16,680
Wald chi2(22)		12,513***	3,572***	8,568***

\*  $p < 0.10$  수준, \*\*  $p < 0.05$  수준, \*\*\*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본 연구 데이터셋에서 파악된 산업재산권 보유율은 대기업 약 70.5%, 중소기업 약 59.9%로, 우리나라 50인 이상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복합적 권리보유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대기업에서 30.6%, 중소기업에서 10.8%로,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가 대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유럽의 경우, 대기업이 약 28%, 중소기업이 약 98%로 중소기업에서 복합적 권리 보유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EPO & EUIPO, 2021). 유럽에서의 연구와 본 연구의 분석에 쓰인 변수가 동일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기준도 상이<sup>12)</sup>하며, 우리나라 기업 데이터가 종업원수 50인 이상인 기업들의 정보로 구성되어, 두 연구의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

12) 유럽의 경우 종업원수 250명 미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하였다. 해당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 데이터는 50인 이상(단,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은 상용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자본금 10억 이상) 기업으로 구성되어, 이에 따른 차이도 존재한다.

치 않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대적인 효과 차이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의 산업재산권 활용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써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단순히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권리 확보를 장려하는 것보다 어떻게 권리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지식재산권, 특히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활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에게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강경남 외, 2020)에서 산업재산권 활용의 특징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으로 파악된 화학·바이오 산업, 전기전자 산업, 정보서비스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례를 파악하고자 한다.

# 제 3 절

## 산업재산권 복합적 활용 사례

본 절에서는 산업재산권의 다양한 권리유형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 중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보유 관련 사례 연구는 ‘아스피린’ 사례 연구가 대표적이다. Jennewein 등은 브랜드자산과 기술자산이 기술과 제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Jennewein et al., 2010; 강경남 외, 2020).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63년 설립된 독일 바이엘사는 해열, 진통, 소염기능을 갖고 있는 살리실산(salicylic acid)을 고순도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합성 방법에 대해 미국에서는 특허권으로,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제조 노하우로 보호하였다(Jennewein et al., 2010; 강경남 외, 2020). 상품화 초기 단계에 일부 약사들이 파우더 형태의 아스피린을 밀가루 등 다른 가루로 희석하여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바이엘사는 제품의 희석이 불가능하도록 납작한 알약 형태에 ‘Bayer’이라는 상표를 찍어서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였다(Jennewein et al., 2010; 강경남 외, 2020). 태블릿 형태의 알약은 순수하고 안정된 형태의 아세틸 살리실산(acetyl salicylic acid)을 정제할 역량이 있는 기업이 바이엘사 뿐이라는 인식과 함께 다른 경쟁기업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역할을 했고, 알약에 새겨진 상표는 시장의 최종 소비자들에게 바이엘사의 상표를 친숙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Jennewein et al., 2010; 강경남 외, 2020). 기술적 혁신에 대한 보호인 노하우와 특허, 기업의 브랜드가 보유한 혁신 이미지가 바이엘사의 시장지배력을 높여주었고, 이를 통해 아세틸 살리실산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엘사는 시장에서 실질적인 독점 상태를 누릴 수 있었다(Jennewein et al., 2010; 강경남 외, 2020). 또한 아스피린 관련 특허가 1917년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자산을 통해 시장에서 혁신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Jennewein et al., 2010; 강경남 외, 2020).

우리나라 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산업재산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사례 발굴을 위해 코스닥 상장,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등 성과를 거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

며, 기업 홈페이지, 감사보고서 및 KIPRIS 검색 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기업에 대한 정보와 산업재산권 활동을 파악하였다. 이 중 일부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이노테라피

이노테라피는 ‘홍합’의 접착원리가 카테콜아민 화학구조에서 기인한다는 화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생체모방기술을 적용한 의료용 지혈제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0년 설립되었다(이노테라피 분기보고서, 2021).

이노테라피의 기반 기술은 수중 환경에서 강력한 접착력을 보이는 폴리도파민 표면개질 방법을 바탕으로 한다(이노테라피 분기보고서, 2021). 이노테라피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함께 혈액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혁신재료 BiMM (Bio-inspired Medical Materials)를 개발하였다(이노테라피 분기보고서, 2021). BiMM 원천기술을 지혈제 영역에 적용하여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하였는데, 주요 제품은 BiMM 고분자물질을 활용한 지혈 제품으로 혈관중재술 후 국소지혈용 드레싱인 이노셀(InnoSEAL), 엔도셀, 젤리셀 등이 있다(이노테라피 분기보고서, 2021). 이노셀은 혈액과 만나면 0.5초 만에 지혈막을 형성하고, 혈장 단백질들과 결합하여 지혈막 구조 형성하게 된다(대신증권 기업분석, 2019). 기존 수술용 지혈제 시장에는 피브린 글루 제품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노셀은 기존 피브린 글루 제품 대비 비용, 보관, 효능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인체 혈액응고 메커니즘과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피브린 글루 계열 지혈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혈액응고장애환자 환자에게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대신증권 기업분석, 2019). 의료지혈제 ‘이노셀’, 체내용 흡수성 지혈제 ‘이노셀 플러스’, 소화기 적응증 특화 체내용 지혈제 ‘엔도셀’ 등은 국내 품목허가 획득하여 시판 중이며, ‘이노셀’은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허가를 받았다(대신증권 기업분석, 2019). 지혈제 제품의 판매경로는 대리점을 통한 판매,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의 직접 납품 방식을 사용하며, 논문 게재, 임상데이터 축적 등을 통해 기술 우위에 대한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다(대신증권 기업분석,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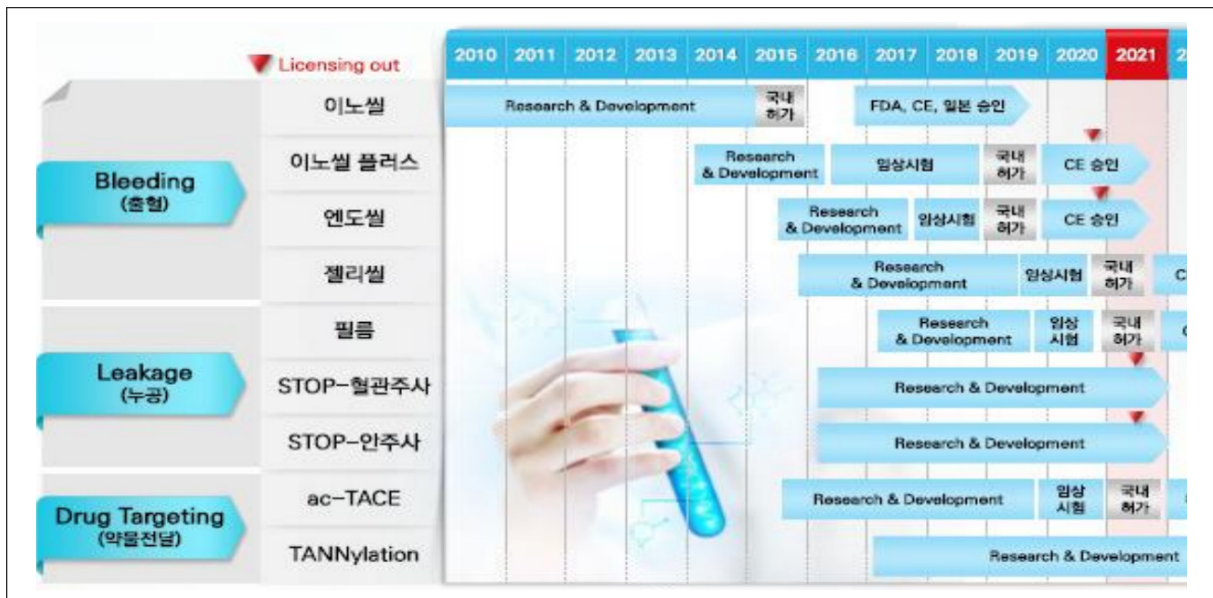
이노테라피는 2010년부터 특허 활동을 진행하였다. 일부 특허는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양도받았으며, 접착제 조성물 등 관련 특허는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공동 출원하였다. 해당 기술을 이용한 하이드로젤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지혈제, 성능평가 동물모델 등 상업화를 위한 이후 단계들과 관련된 특허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이노테라피는 국내 특허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호주, 캐나다, 인도, 러시아 등에서 특허를 확보하였다. 특허 외에 카테콜기를 응용한 고분자 제조기술에 대한 공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상표권은 2010년 ‘InnoSEAL’을 출원하였고, 해외 시장으로 제품수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럽, 미

국, 브라질, 스페인 등에서 상표권 확보가 이루어졌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도 출원이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Hemoleast, Hemopowder, HemoSTOP, GellySil, QuickSill 등 현재 판매 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제품과 관련된 상표권을 출원하였다(이노테라피 분기보고서, 2021).

이노테라피는 설립 초기부터 확보한 기술을 상용화할 준비를 하여 특허권과 상표권을 확보하였으며, 2012년부터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2019년에는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하여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림 3-13 이노테라피 파이프라인



출처 : 이노테라피,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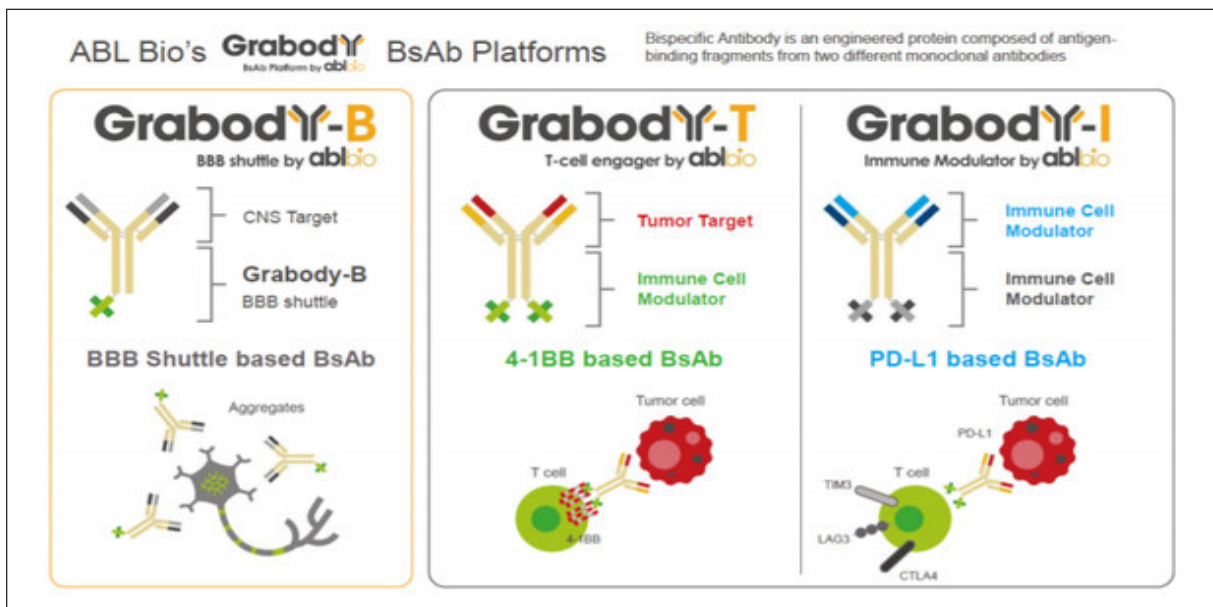
## 2. 에이비엘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는 기반 기술인 이중항체 플랫폼 'Grabody™' 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하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License-out)을 주요 사업모델로 하는 기업으로 2016년 설립되었다(ABL바이오 산업보고서, 2020). 에이비엘바이오는 한화케미칼이 삼성종합화학 인수와 함께 바이오사업을 철수하면서, 바이오사업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인력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기업이다.

이중항체 기반 기술, 면역관문(Immune checkpoint) 조절 및 항암 관련 신규 타겟의 발굴 및 검증 기술, 혈액뇌관문 통과능을 향상시킨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개발 기술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ABL바이오 산업보고서, 2020). 특히 이중항체를 이용한 치료제는 기존 의약품의 병용 투여법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중항체 플랫폼을 이용한 치료제는 다양한 약물 조합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ABL바이오 산업보고서, 2020).

그림 3-14 이중항체 플랫폼 Grabody



출처 : 에이비엘바이오 홈페이지

에이비엘바이오는 창립 초기부터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2018년 기술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코스닥에 상장하였다(ABL바이오 산업보고서, 2020). 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항체 항암제에 대해 임상 시험 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며, 제품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ABL바이오 산업보고서, 2020). 이중항체 기술이 복수의 기술요소를 융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특징을 활용하여 내·외부 기술과 공동연구를 통해 보다 빠르고 우수한 효능의 후보물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ABL바이오 산업보고서, 2020). 국내외 제약사와의 기술이전(License-out) 또는 공동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뒤, 바이오 의약품 개발 단계에 따라 수령하는 선수수수료, 단계별 마일스톤 및 제품 출시이후 판매액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로열티가 주요 수익원이다(ABL바이오 산업보고서, 2020).

이중항체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 관련 특허 확보 활동은 2013년부터 이루어졌다. 2013년과 2014년 한화솔루션 명의로 특허<sup>13)</sup>,<sup>14)</sup>가 출원되었으며, 2016년 에이비엘바이오에 권리가 이전되었다. 해당 특허는 중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등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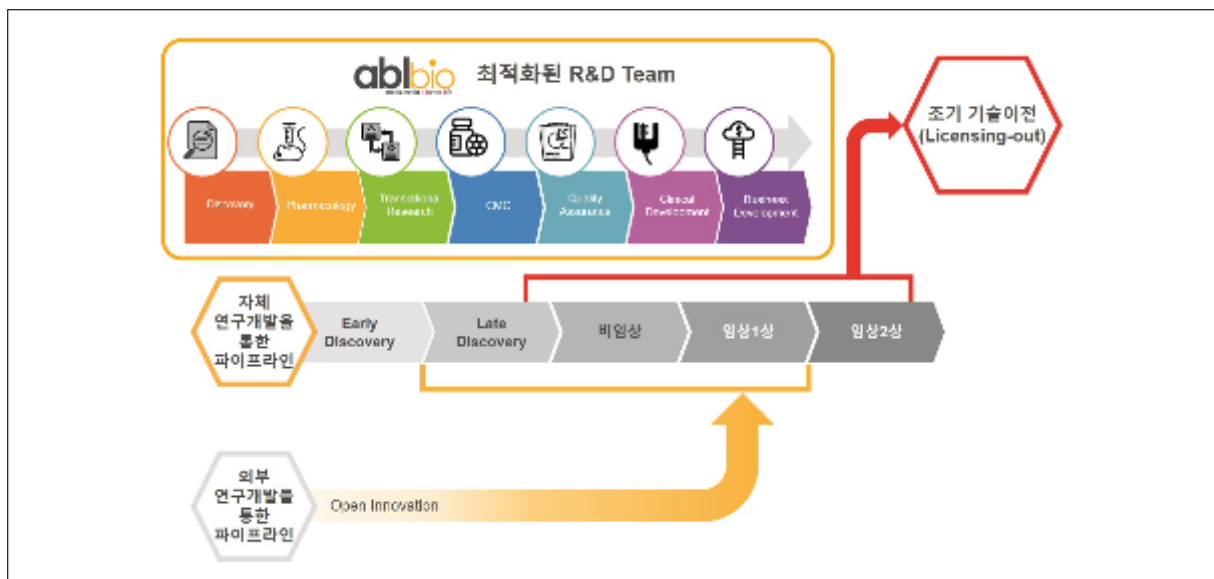
13) DLL4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신규한 단일클론항체 및 이의 용도

14) DLL4와 VEGF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신규 이중표적 단백질 및 이의 용도

상표권 확보는 2016년 회사 로고 ‘ablbio’ 출원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이중항체 플랫폼 ‘Grabody’에 대한 상표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럽에 출원하였다.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활동이 기업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로, 기업이 보유한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대해 상표권을 취득하여, 기업의 혁신적 이미지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3-15 에이비엘 바이오의 business model



출처 : 에이비엘바이오 사업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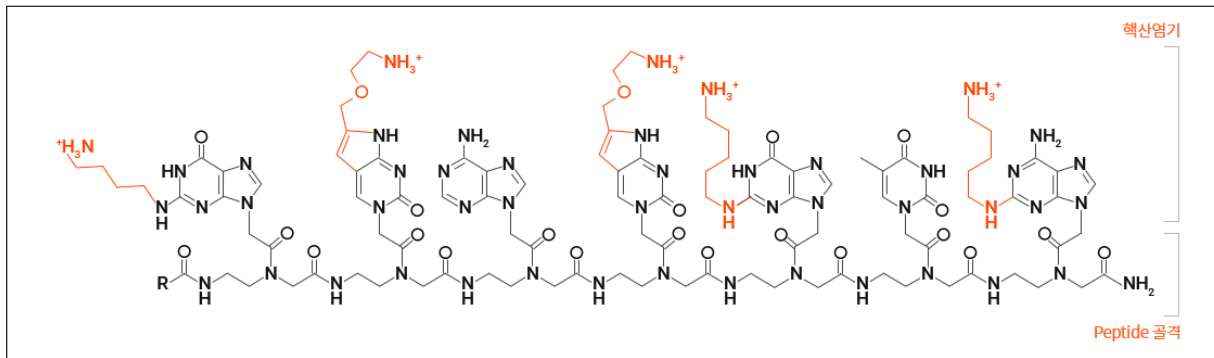
### 3. 올리패스

올리패스는 의약품 화합물 제조 등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으로, 2006년 설립되었다. 차세대 RNA 치료제 개발을 핵심역량으로 하고 있는데, 세포 투과성이 우수한 OliPass PNA라는 ‘인공유전자 치료제 플랫폼’을 통해 pre-mRNA의 splicing 과정에서 특정 exon을 결손시킴으로써 단백질 생성과 억제를 조절할 수 있는 exon skipping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올리패스 사업보고서, 2021). 2012년 회사명을 ‘씨티아이바이오’에서 ‘올리패스’로 변경하였는데, 올리패스는 ‘oligonucleotide’와 ‘pass-through’의 합성어로, 세포투과성이 우수한 물질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드는 기업의 플랫폼 기술을 의미한다(올리패스 사업보고서, 2021).

OliPass PNA는 핵산의 구조를 일부 변형한 PNA(Peptide Nucleic Acid)의 일부 핵산 염기에 ‘양이온성 지질기’를 화학적으로 도입한 ‘PNA 유도체’로, 양이온성 지질기 도입으로 인해 세포막과의 친화력이

높아져 세포투과력이 높으며, 유전자 결합력이 강해 ‘인공유전자 치료제 플랫폼’의 기능을 한다(올리패스 홈페이지). 올리패스는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마약성 진통제, 고지혈증, 노인성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증 등 치료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올리패스 홈페이지).

그림 3-16 OliPass PNA 구조



출처 : Olipass 홈페이지

올리패스의 특허 활동은 회사가 설립 된 다음 해인 2007년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세포투과성이 우수하고 강한 핵산 친화력을 갖는 펩타이드 핵산 유도체에 대한 기술을 2008년 국내 출원하고, 2009년 PCT 출원<sup>15)</sup>을 하였으며, 해당 특허는 국내 및 해외 37개국에서 등록되었다. 또한 플랫폼의 exon skipping 작용기전 관련 기술을 2017년 PCT 출원<sup>16)</sup>하였다. 이 외에 각각의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특허들을 출원하였다.

올리패스는 화장품 개발 및 생산 판매를 위한 자회사(올리패스코스메슈티컬즈)를 2015년 설립한 뒤, 2016년에 ‘Olipass’ 상표권을 출원하였으며, ‘올리패스 코스메슈티컬즈’, ‘Olipass cosmeceuticals HR.101 anti-hain loss program’ 등의 상표권을 출원하였다.

올리패스는 2017년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벤처, SV인베스트먼트, 지엔텍 등 VC와 자산운용사로부터 3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2019년 성장성 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되었다(올리패스 사업보고서, 2021). 성장성 특례 상장이란, 증권사나 투자은행이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에 한해 상장 심사요건을 완화해주는 기업공개제도이다.

올리패스가 보유한 핵심 기술과 관련된 신약개발 사업 분야에서,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기술료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신약을 연구개발 중으로, 일부 치료제에 대한 임상도 진행되고 있으나, 회사 자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은 없는 상황이다(올리패스 사업보고서, 2021). 주된 매출은 자회사

15) PEPTIDE NUCLEIC ACID DERIVATIVES WITH GOOD CELL PENETRATION AND STRONG AFFINITY FOR NUCLEIC ACID

16) EXON SKIPPING BY PEPTIDE NUCLEIC ACID DERIVATIVES

인 올리패스 코스메슈티컬즈의 기능성 화장품 제품개발 및 판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기업의 상표권을 통해 '기술의 올리패스 코스메슈티컬즈'라는 인지도를 확대하는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올리패스 사업보고서, 2021). 실제로 올리패스의 매출 중 화장품 판매에 의한 매출 비중이 높으며, 매출규모는 증가세에 있다.

이 사례는 기업의 기술력을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한편, 자사의 대표적인 기술을 상호로 하고, 이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하여, 기업의 혁신 이미지를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 기업의 수익을 높이고 VC 등 자본을 유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 4. 포인트모바일

포인트모바일은 산업용 PDA 및 주변기기의 개발·제조·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2006년 설립되었다.

산업용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Rugged Handheld Computer 또는 PDA)는 바코드 또는 RFID가 적용되는 모든 상품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포인트모바일 분기보고서, 2021). PDA는 사용처에 따라 PDT(Portable Data Terminal)와 EDA(Enterprise Digital Assistant)로 구분되는데, PDT는 스캐너 기능을 자주 활용하는 물류창고 또는 백오피스에서 주로 사용되고, EDA는 네트워크가 연동되는 스토어 내에서 주로 사용된다(포인트모바일 분기보고서, 2021). 포인트모바일의 주요 사업은 크게 PDA와 기타(액세서리 등) 부문으로 나뉘며, 자체 브랜드 PDA의 판매와 더불어 글로벌 PDA 업체로 ODM 공급을 진행 중이다(포인트모바일 분기보고서, 2021).


포인트모바일은 2006년 설립 후 2009년부터 Honeywell, Data Logic, Toshiba, JANAM, Casio, Handheld Group 등 글로벌 업체들에게 OEM/ODM으로 제품을 납품해 왔다(포인트모바일 분기보고서, 2021). 2012년까지 제품을 납품하면서 회사의 제품 성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며, ODM/OEM 개발 경험으로 2013년에는 핸드헬드 모바일 컴퓨터, 스마트폰, LTE/Android 통합 결제 단말기, 헬스케어 단말기, RFID 리더기 및 블루투스 스캐너 등의 라인업으로 자사 브랜드를 출시하였다(포인트모바일 분기보고서, 2021). 포인트모바일 브랜드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9년 기준 전체 매출의 53%를 차지하였다(포인트모바일 분기보고서, 2021).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마케팅으로 자사브랜드 매출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포인트모바일 분기보고서, 2021). 또한 PDA제품에 EmKit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데, 해당 제품을 산업용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들의 작업환경에 맞춰 단말기의 설정 및 사용을 변경할 때, 이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포인트모바일 분기보고서, 2021).

2020년 7월 아마존과 8년간 최대 2억 달러(약 2,2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11월 코스닥 상장되었다(포인트모바일 분기보고서, 2021).

설립 초기 ODM 제품 납품이 대부분이었던 포인트모바일은 제품 관련 디자인 출원을 먼저 진행하였다. 디자인 출원은 2010년과 2013년에 이루어졌다. 이후 2014년부터 특허와 상표 관련 출원을 하였다. PDA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sup>17)</sup>, 'point mobile' 상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에 출원되었다. 비즈니스 기기의 활용, 솔루션 개발 및 보안 관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와 관련된 'Em Kit', 'Direct Clone' 등의 상표도 국내에서 등록되었다.

그림 3-17 포인트모바일 보유 상표권

		
<p>휴대용 단말기(PDA), 사업정보제공, 선전홍보 등 관련</p>	<p>컴퓨터 소프트웨어 등<sup>18)</sup> 관련</p>	<p>컴퓨터 소프트웨어 등<sup>19)</sup> 관련</p>

출처 : KIPRIS

PDA 사업의 후발주자로서, 다양한 권리유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휴대용 단말기에 대한 디자인권 확보를 우선하고, 자사 제품을 준비하면서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권 출원 외에 자사 제품의 마케팅, 판매를 위한 상표권 획득,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권 획득 등이 이루어졌다.

## 5. 액트로

액트로는 스마트폰 및 카메라폰 / 소형 모바일 기기 등에 탑재되는 고사양 카메라 모듈용 핵심부품(AF, OIS, Folded Zoom Actuator)<sup>20)</sup> 및 관련 자동화 시스템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2012년 설립

17) PDA terminal and power control method thereof, 모바일 디바이스 및 그 동작 제어방법, Mobile device and method for synchronizing setting at the same 등

18) 비즈니스 기기의 활용, 솔루션 개발 및 보안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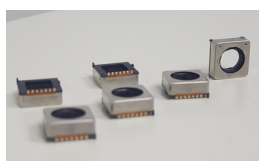

19) 마스터 PDA가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로컬 서버처럼 작동해 가까운 포인트모바일 기기가 자동으로 백업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마스터 PDA의 설정을 복원하거나 '복제'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하는 솔루션 프로그램

되었다(액트로 사업보고서, 2020). 설립 당시 기업명은 '유니크'였으며, 2016년 '액트로'로 기업명을 변경했다(액트로 사업보고서, 2020).

액트로는 2013년부터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및 Actuator의 제조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조립장비 및 세척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다(액트로 사업보고서, 2020). 2016년 변경한 사명 '액트로'는 액츄에이터와 로봇을 합친 단어로, 액츄에이터 외에 로봇을 활용한 장비 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둔 명칭이다(액트로 사업보고서, 2020).

2014년 자체 OIS(Optical Image Stabilizer)를 설계, 개발하고, OIS 적용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2015년 산업자원부의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폰용 OIS Actuator 개발하였으며, 2017년에는 스마트폰 IRIS(조리개) 부품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초기 양산에 성공하였고, 2020년에는 스마트폰 광학 Folded Zoom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초기양산에 성공하였다(액트로 사업보고서, 2020).

그림 3-18 액트로의 Actuator 관련 주요 제품

			
AF(Auto Focusing) Actuator	OIS(Optical Image Stabilizer) Actuator	Folded Zoom Actuator	Folded Zoom Actuator

출처 : ActRo 홈페이지

주력제품인 Actuator의 경우 일반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부분은 없으며, 휴대폰제조사에 공급되고 있다(액트로 사업보고서, 2020). 내재화된 공정 및 자동화 시설을 바탕으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공정 및 자동화 기기의 개발을 병행하여 제조 공정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 및 생산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액트로 사업보고서, 2020).

이를 반영하듯, 2014년부터 특허 출원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으며, 2016년 LED가공기계, LED모듈 등에 대한 디자인을 출원하였고, 기업명을 변경한 2016년에 'ActRo'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였다.

시장에 직접 판매되는 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 모듈 업체의 협력사로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특허권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로봇·장비 분야로의 시장 확대를 위해 기업명을 변경하고 관련 상표권을 확보하였다.

20) 자동초점(AF), 손떨림 보정(OIS), 광학줌(Folded Zoom)

## 6. 네오펙트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기술을 기반으로 뇌졸중 등의 신경계 및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재활훈련을 위한 재활의료기기 및 재활 콘텐츠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으로, 2010년 설립되었다(네오펙트 사업보고서, 2020).

네오펙트는 환자의 상태와 훈련 목적에 맞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소형 센서와 경량화된 부품을 사용한 디지털 재활 기기 등을 제공한다. 네오마노는 손 마비로 인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 장갑이고, 네오펙트 스마트 글러브는 뇌졸중 재활을 위한 첨단 재활 장치로, 능동적인 손 기능 향상을 위한 재활 훈련을 제공하며, 스마트 보드는 기능적 팔 뻗기 훈련을 통해 환자의 활동 범위 및 여러 관절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준다(네오펙트 홈페이지). 환자가 지루하지 않게 반복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활용한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네오펙트 홈페이지).

그림 3-19 네오펙트의 주요 디지털 재활 기기



출처 : 네오펙트 홈페이지

스마트 제품 및 해당 소프트웨어는 병원, 재활클리닉 등을 대상으로 한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홈 제품으로도 판매되고 있다(네오펙트 사업보고서, 2020).

네오펙트는 창업 초기부터 산-학-병원의 연계를 통한 연구 역량 축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했으며, 현재는 다양한 로봇 재활군 선형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제품 라인업 확대 및 사업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임상연구과제 등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네오펙트 사업보고서, 2020).

2011년부터 특허출원을 시작<sup>21)</sup>하여 현재까지 91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 중 55건이 등록되었

다. 재활 훈련을 위한 장치 관련 특허 뿐만 아니라, 재활 훈련시스템, 재활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 사용자 단말 및 컴퓨터 프로그램, 훈련 콘텐츠의 난이도를 설정하는 방법 및 이를 운영하는 전자 장치 등 재활 프로그램, 추천알고리즘 등 관련 특허출원도 진행하였다. 2012년 'NEOFECT' 상표권 등록을 시작으로 'FORCE GLOVE', 'NeoMano', 'neofect smart balance' 등 재활 기기 관련 상표권, 'neofect smart coach' 등 재활 프로그램 관련 상표권 등을 확보하였다. 재활을 위한 의료기기에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중시되어, 관련 디자인권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드웨어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치료 목적의 콘텐츠가 융합된 스마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업 혁신의 결과를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유형으로 보호하고 있다.

## 7. 루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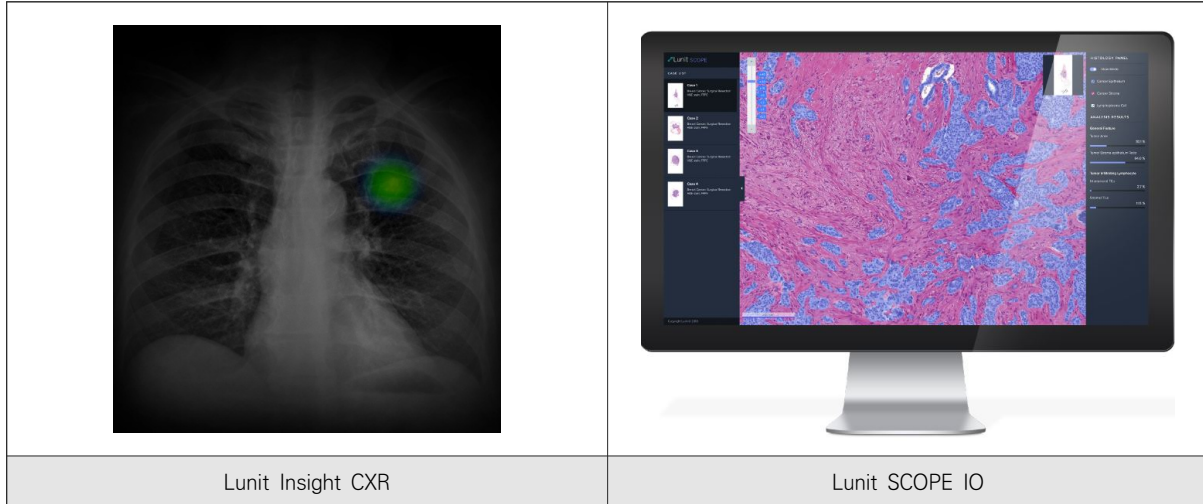
루닛은 암 진단 및 치료에 기여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의료 AI 기업으로, 2013년 설립되었다. 기업명 루닛은 "Learning Unit"을 줄여서 만든 이름이다(루닛 홈페이지).

국내에 딥러닝 기술이 알려지기 전, KAIST 컴퓨터 비전 랩의 실험실 창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연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는 의사 출신 CEO를 신규 영입하고 세계적인 영상의학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의료분야에서의 AI 적용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였다(루닛 홈페이지). Deep learning을 기반으로, 이미지 인식 및 위치를 찾아내는 기술을 통해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발견하여, 의사 진단 및 치료 과정의 정확성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루닛 홈페이지).

폐암 및 유방암 진단을 보조하는 루닛의 제품은 현재 국내 식약처 허가 및 유럽 CE 인증을 포함해 남미, 동남아 등에서 인허가를 획득하였으며, 세계 의료장비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GE 헬스케어, 일본 최대 의료영상 장비 업체인 후지필름 등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전 세계 30여 개국 250개 이상의 의료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루닛 홈페이지). 2014년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R&D 사업을 수행했으며, 창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했다.

21) 손가락 재활 운동 장치 및 재활 운동 보조 방법

그림 3-20 루닛의 AI 기반 진단 제품



출처 : 루닛 홈페이지

2016년부터 특허출원을 진행하였는데, 악성 종양 진단 방법 및 장치, 이미지 분석 방법 및 시스템, 신경망 학습 방법 및 그 장치, 영상 판독 방법 및 장치, 기계학습을 이용한 의료 영상 판독의 품질 관리 방법 및 장치 등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권리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상표권은 2015년 기업명 ‘루닛’, ‘LUNIT’에 대한 출원을 시작으로, 2019년 ‘LUNIT INSIGHT’, ‘루닛 인사이트’, ‘LUNIT SCOPE’, ‘루닛 스코프’ 등 진단 제품 관련 상표 출원이 진행되었다. 이외에 영상 판독 프로그램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도 지속하는 등, 기업 혁신의 결과를 특허권과 상표권,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유형으로 보호하고 있다.

## 제 4 절

### 산업재산권 복합적 활용 특징

#### I 기업 조사 주요 결과

이하에서는 기업 조사를 통해, 산업재산권 복합적 활용의 특징을 도출해보도록 한다. 기업 조사는 화학·바이오 분야, 전기전자 분야, 정보서비스 분야에 속한 중소기업 중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기업의 업종, 주요 비즈니스 상대방, 복합적 활용이 적용된 제품 및 서비스의 밸류체인 상 위치를 함께 파악하였다.

먼저 하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산업재산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는 56개 기업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선호도 및 산업재산권 활용의 주요 이유(목적), 복합적 권리 활용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응답 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확보 선호도

응답 기업들은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해 '특허 및 실용신안권' 확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기업 간 거래가 주를 이루는 경우, 밸류체인 상에서는 원자재 및 중간재를 거래하는 기업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권리에 대한 선호도를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특허 및 실용신안권 외에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상표권에 대한 선호도는 화학·바이오 분야, 비즈니스 모델 중 B to C 거래, 밸류체인 위치 상 최종소비재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표 3-21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권리(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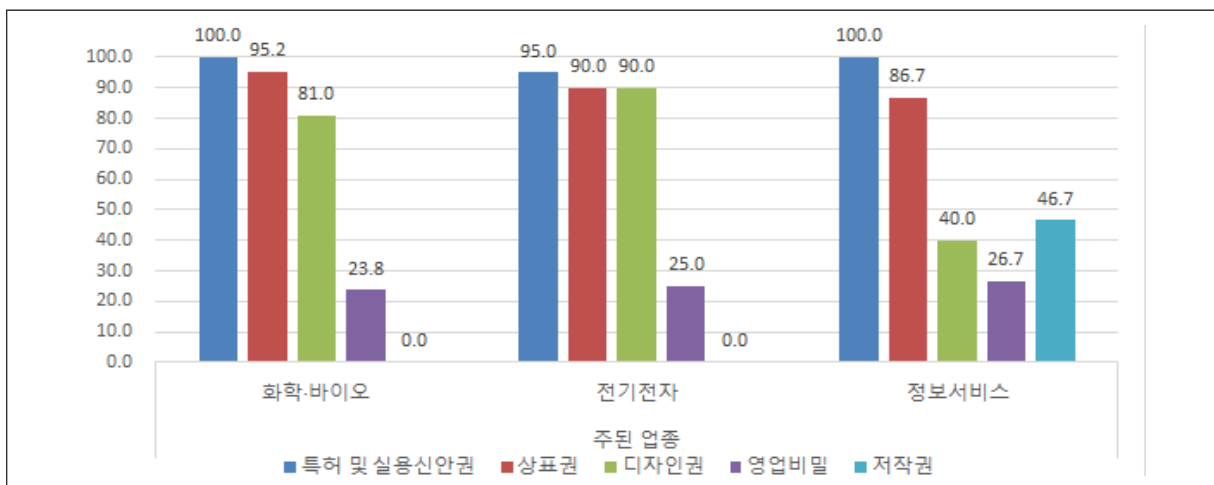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저작권
전체		80.4	10.7	3.6	1.8	3.6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66.7	23.8	4.8	4.8	0.0
	전기전자	90.0	5.0	5.0	0.0	0.0
	정보서비스	86.7	0.0	0.0	0.0	13.3
비즈니스 모델 <sup>22)</sup>	B to C	72.0	16.0	4.0	4.0	4.0
	B to B	86.7	6.7	3.3	0.0	3.3
밸류체인	연구개발	83.3	8.3	0.0	0.0	8.3
	원자재, 중간재	100.0	0.0	0.0	0.0	0.0
	최종소비재	72.7	15.2	6.1	3.0	3.0

표 3-22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해 선호하는 권리(1+2+3순위)

(단위: %)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저작권
전체		98.2	91.1	73.2	25.0	12.5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100.0	95.2	81.0	23.8	0.0
	전기전자	95.0	90.0	90.0	25.0	0.0
	정보서비스	100.0	86.7	40.0	26.7	46.7
비즈니스 모델	B to C	96.0	96.0	80.0	20.0	8.0
	B to B	100.0	86.7	66.7	30.0	16.7
밸류체인	연구개발	100.0	83.3	58.3	41.7	16.7
	원자재, 중간재	100.0	81.8	81.8	27.3	9.1
	최종소비재	97.0	97.0	75.8	18.2	12.1

그림 3-21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해 선호하는 권리 : 업종별 (1~3순위)



22) B to C, B to B 외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1개 기업의 통계는 제외

이 외에 정보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은 저작권에 대한 선호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비밀을 통한 권리 보호는 기업 간 거래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경우, 밸류체인 상 연구개발, 원자재 및 중간재 제품을 다루는 경우 권리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22], [그림 3-23] 참조).

그림 3-22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해 선호하는 권리 : 비즈니스 모델별 (1~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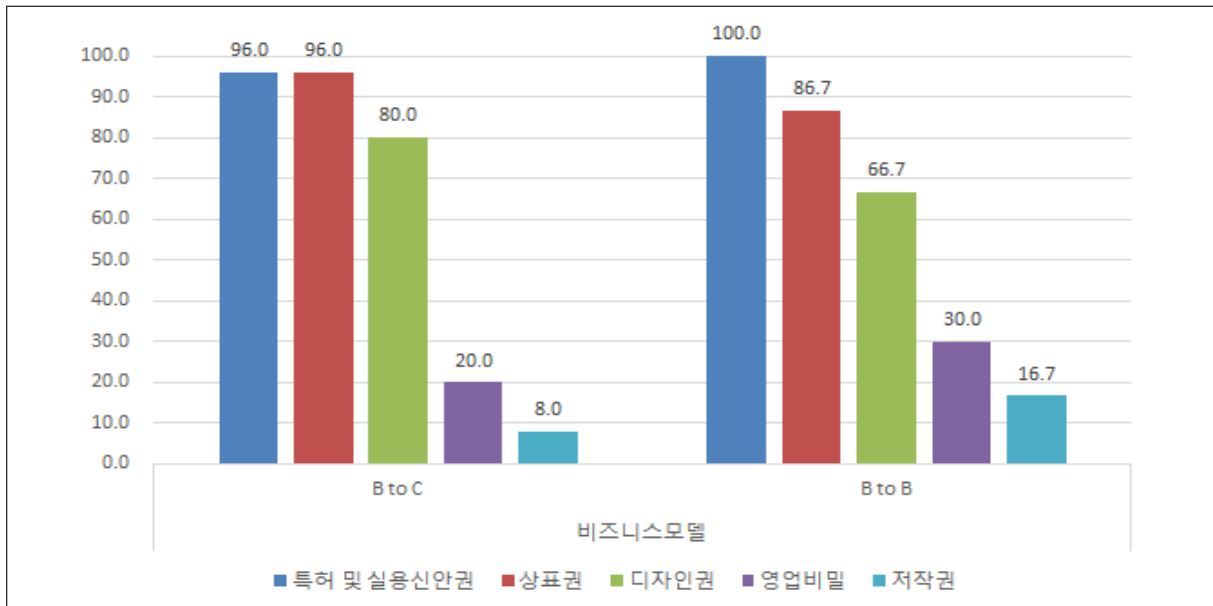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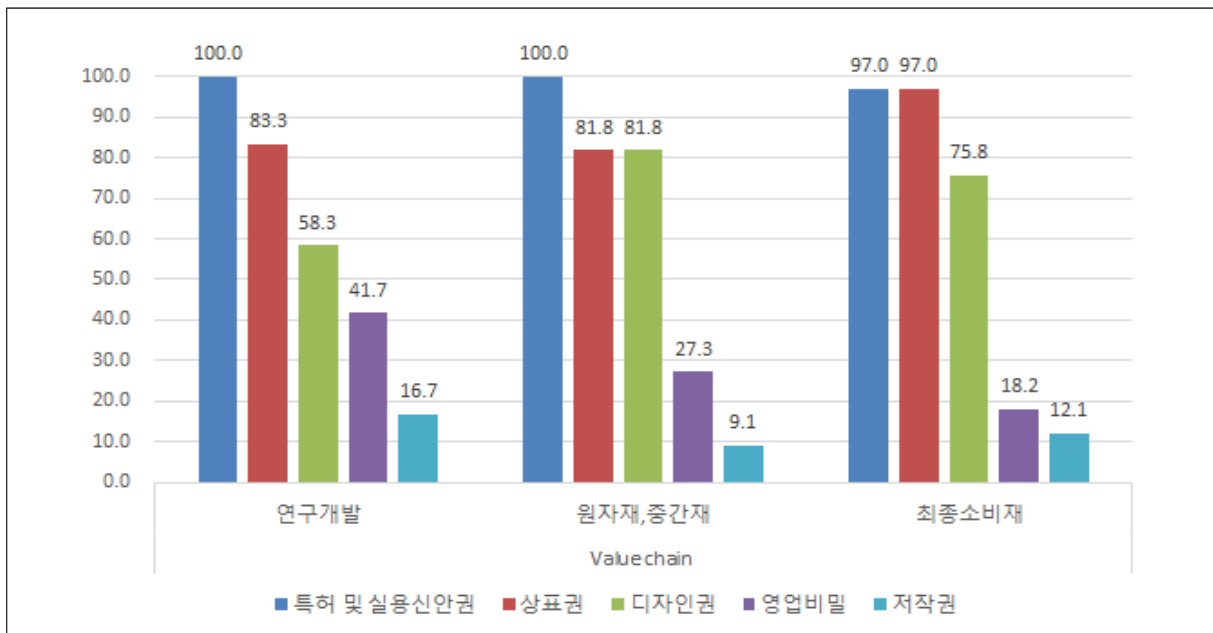


그림 3-23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해 선호하는 권리 : 밸류체인 상 위치별 (1~3순위)



## 2. 응답 기업의 지식재산 보유 현황

응답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들 모두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권, 디자인권의 보유가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던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해당 권리의 보유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4 참조).

그림 3-24 응답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업종별(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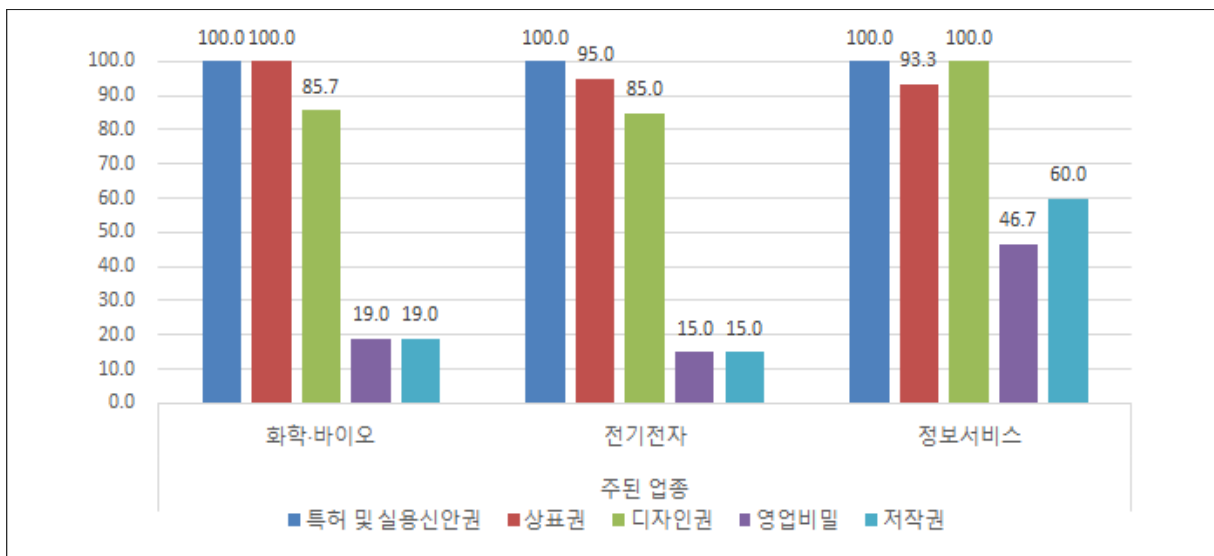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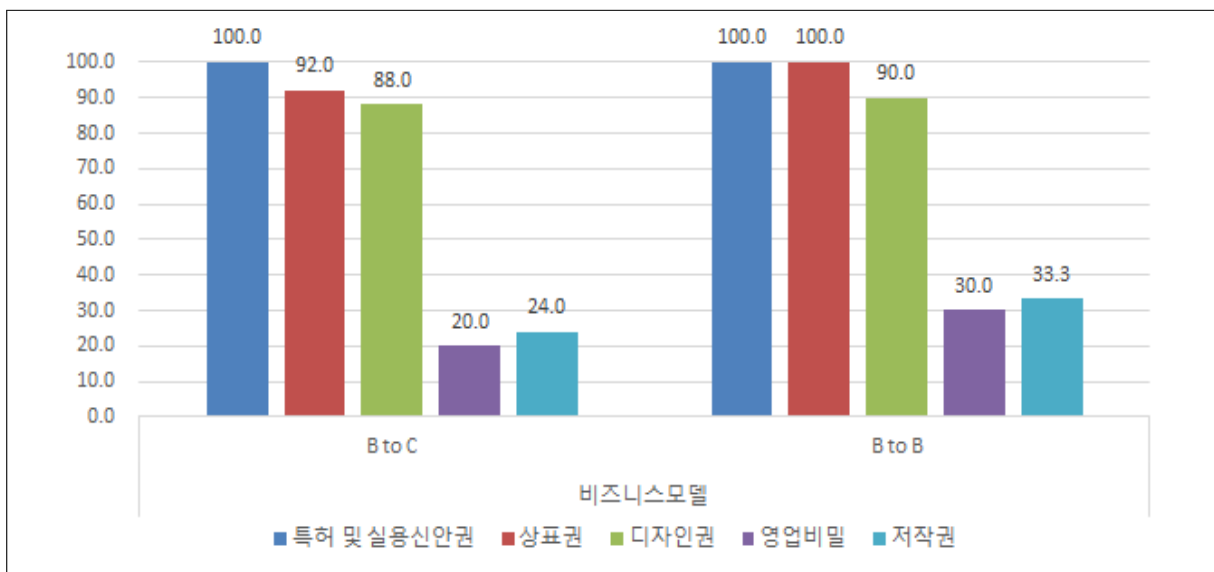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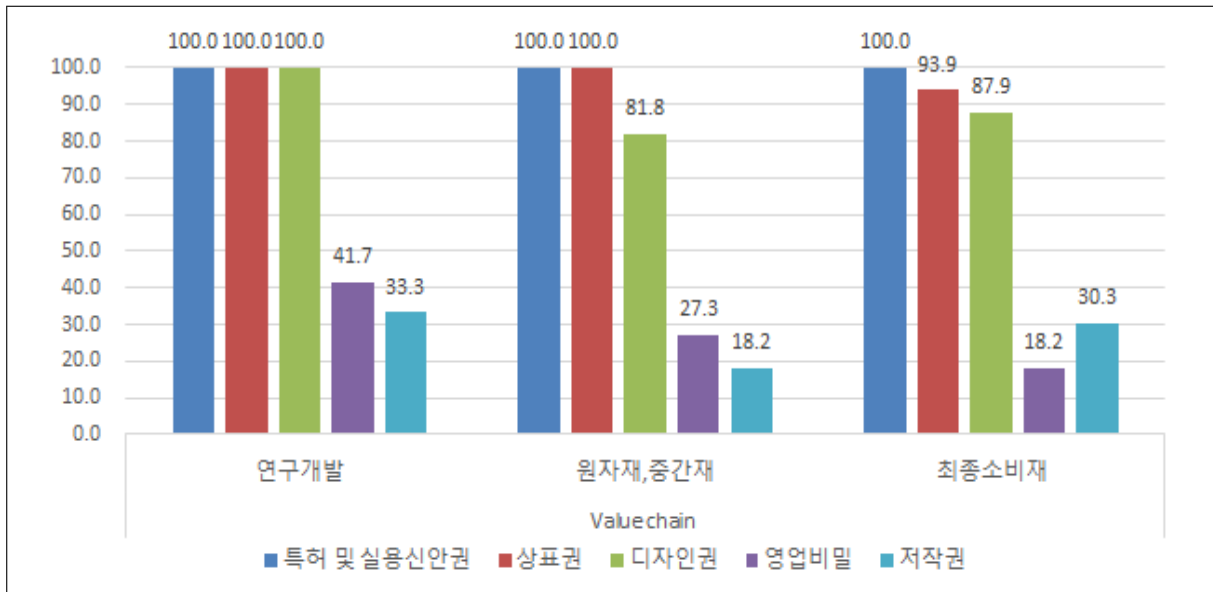


그림 3-25 응답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비즈니스 모델별(복수응답)



영업비밀의 경우, 기업 대상 거래(B to B)를 주로 하는 경우와 연구개발, 원자재 및 중간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보유, 영업비밀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앞의 권리에 대한 선호도 응답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그림 3-25], [그림 3-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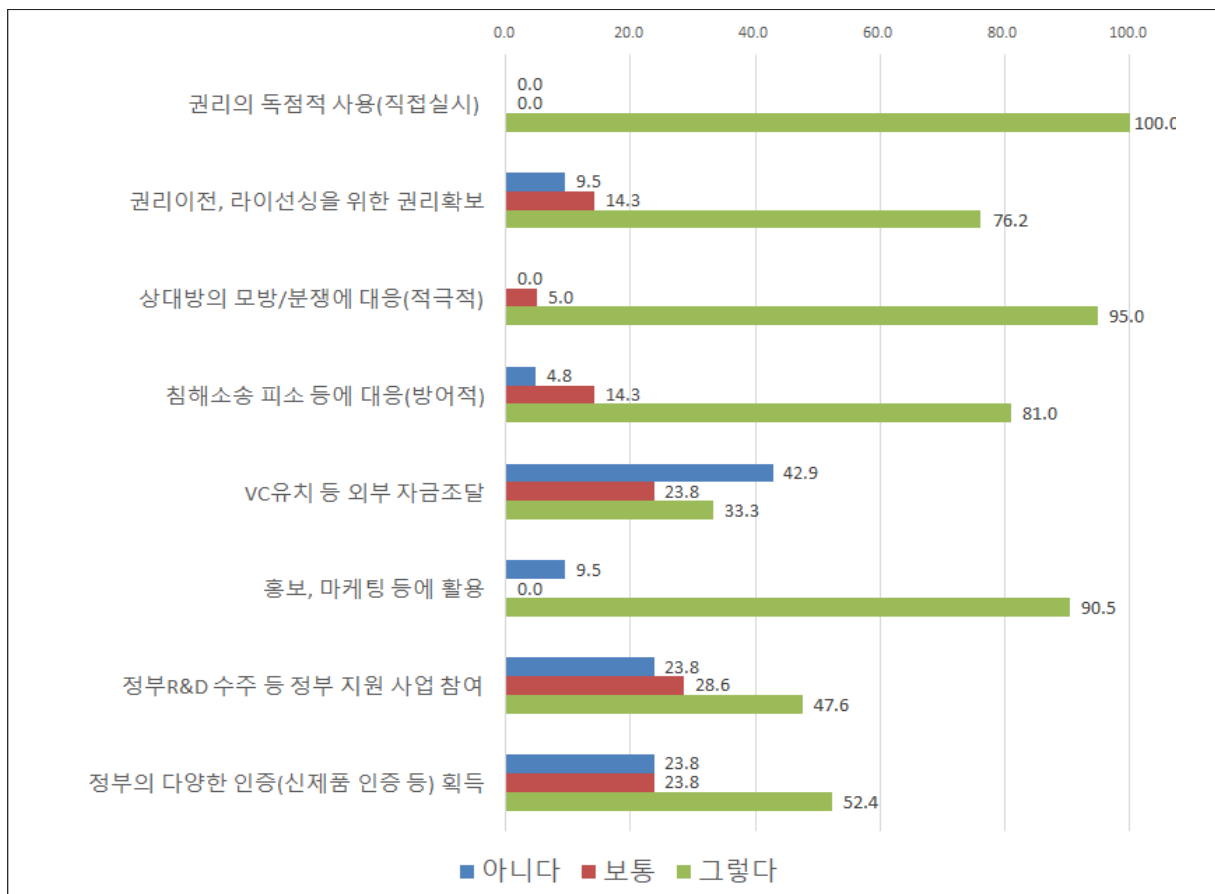
그림 3-26 응답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밸류체인 상 위치별(복수응답)



### 3. 지식재산 활용의 주된 이유

지식재산 활용의 주된 이유에 대해 9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화학·바이오 분야에서는 ‘권리의 독점적 사용/직접실시’를 위해서 권리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상대방의 모방/분쟁 대응’을 위한 활용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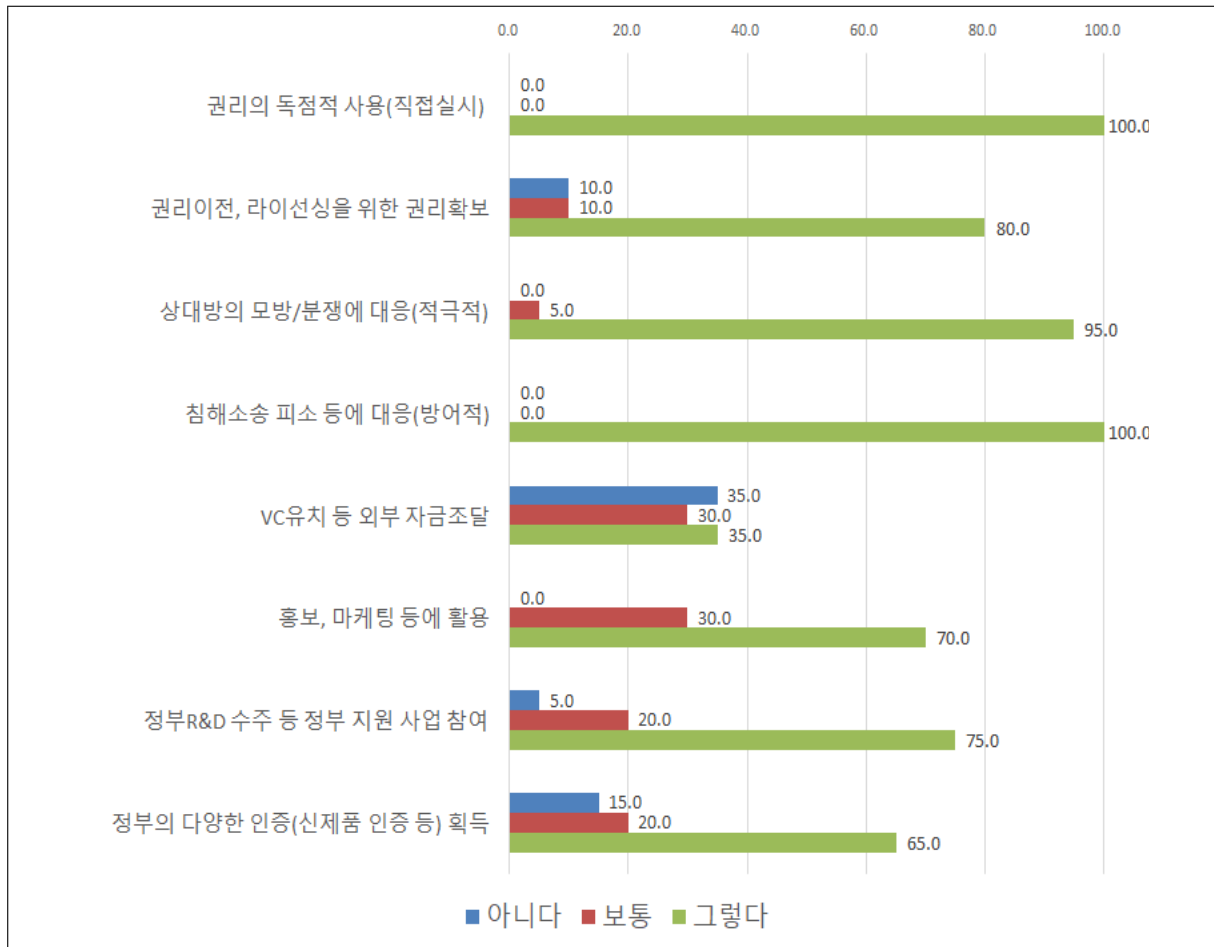
그림 3-27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업종(화학·바이오 분야)



업종 : 화학·바이오 분야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 (점)
권리의 독점적 사용(직접실시)	0.0	0.0	100.0	8.4
권리이전, 라이선싱을 위한 권리확보	9.5	14.3	76.2	7.0
상대방의 모방/분쟁에 대응(적극적)	0.0	5.0	95.0	8.2
침해소송 피소 등에 대응(방어적)	4.8	14.3	81.0	6.6
VC유치 등 외부 자금조달	42.9	23.8	33.3	5.0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	9.5	0.0	90.5	7.2
정부R&D 수주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	23.8	28.6	47.6	5.6
정부의 다양한 인증(신제품 인증 등) 획득	23.8	23.8	52.4	5.8

전기전자 분야에서도 ‘권리의 독점적 사용/직접실시’를 위해서 권리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상대방의 모방/분쟁 대응’과 함께 ‘침해소송 피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에서의 활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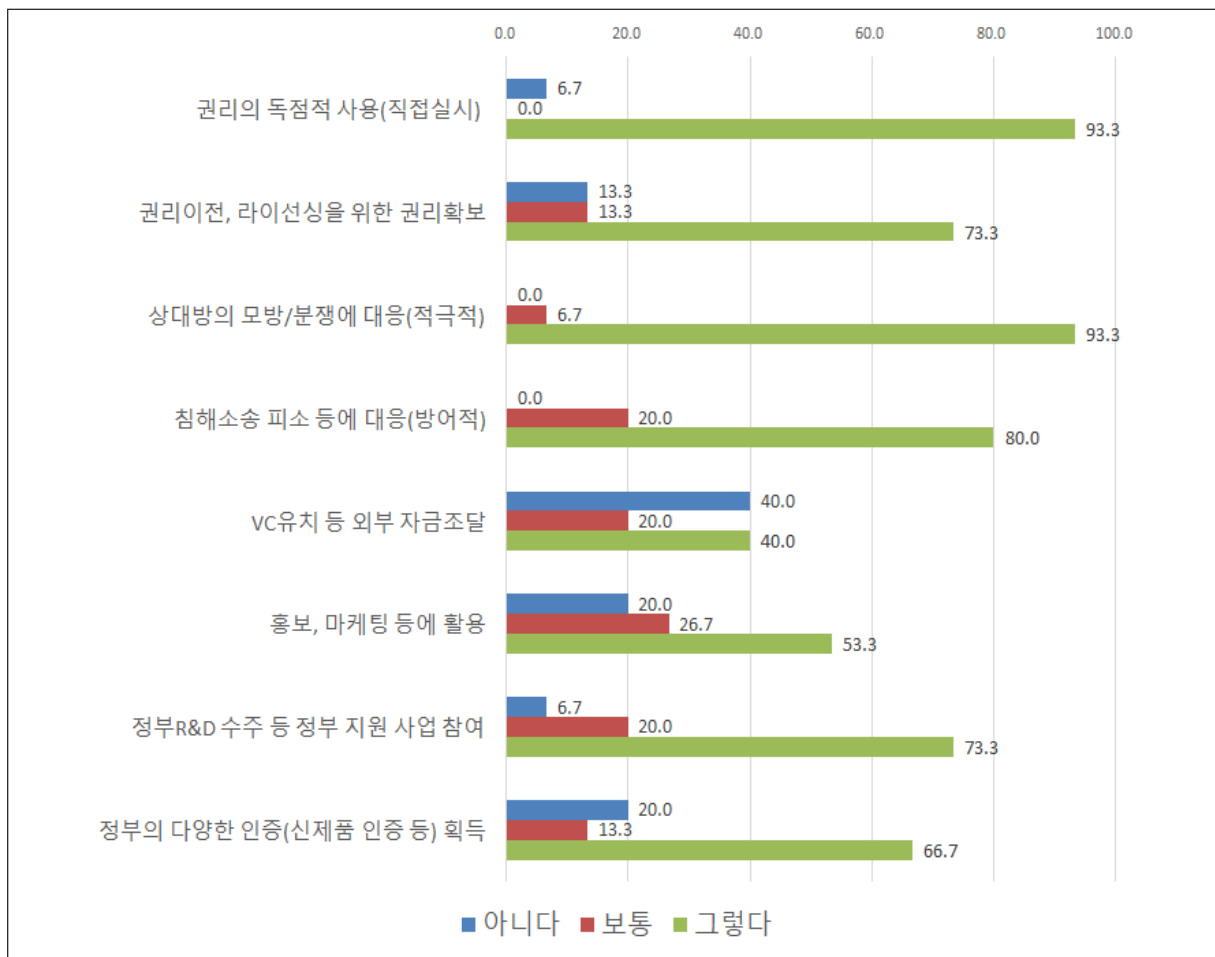
그림 3-28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업종(전기전자 분야)



업종 : 전기전자 분야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 (점)
권리의 독점적 사용(직접실시)	0.0	0.0	100.0	8.1
권리이전, 라이선싱을 위한 권리확보	10.0	10.0	80.0	7.2
상대방의 모방/분쟁에 대응(적극적)	0.0	5.0	95.0	8.2
침해소송 피소 등에 대응(방어적)	0.0	0.0	100.0	7.8
VC유치 등 외부 자금조달	35.0	30.0	35.0	5.4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	0.0	30.0	70.0	6.9
정부R&D 수주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	5.0	20.0	75.0	6.8
정부의 다양한 인증(신제품 인증 등) 획득	15.0	20.0	65.0	6.3

정보서비스 분야에서는 ‘권리의 독점적 사용/직접실시’와 ‘상대방의 모방/분쟁 대응’에 대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고, ‘침해소송 피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에서의 활용 또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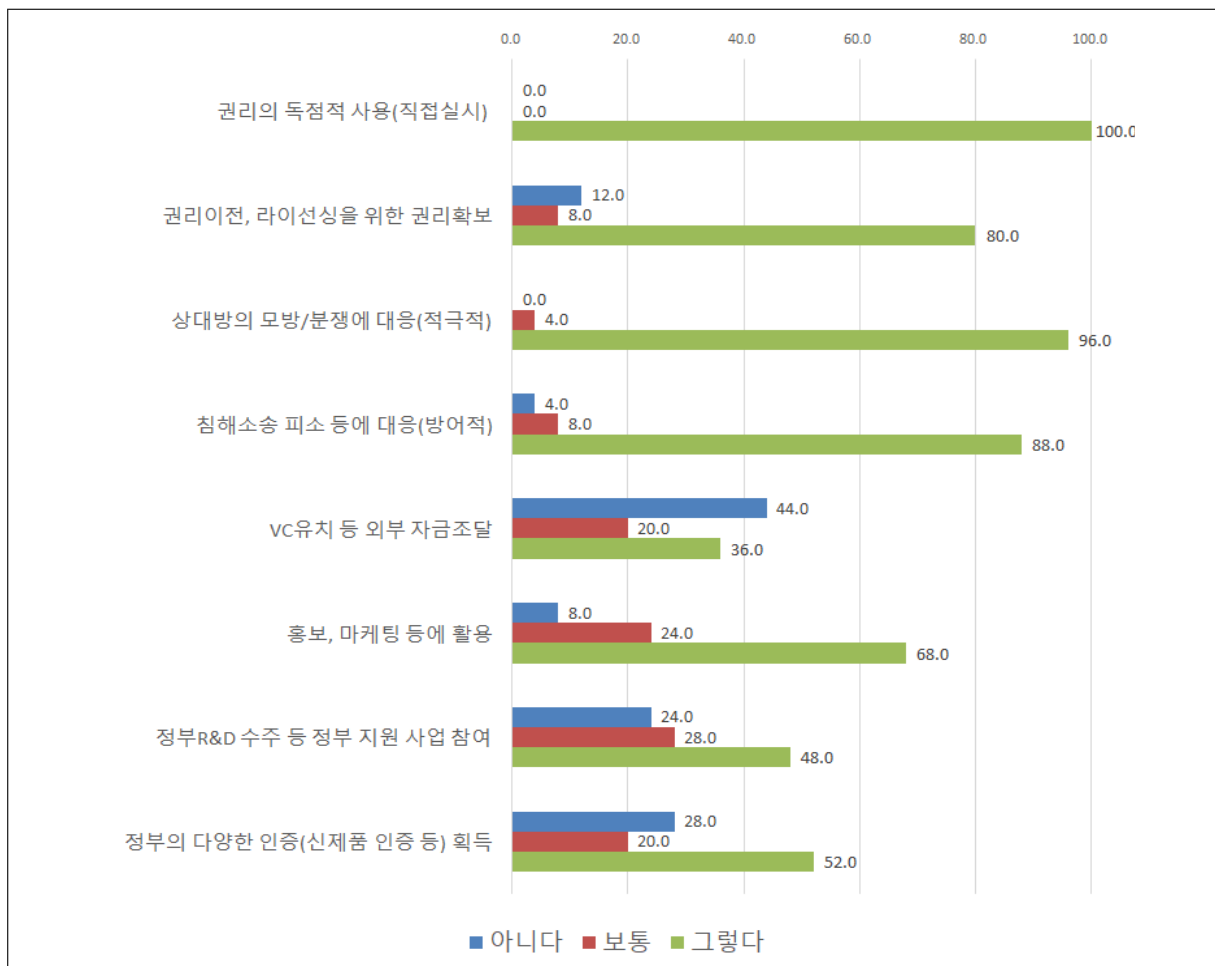
그림 3-29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업종(정보서비스 분야)



업종 : 정보서비스 분야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 (점)
권리의 독점적 사용(직접실시)	6.7	0.0	93.3	7.7
권리이전, 라이선싱을 위한 권리확보	13.3	13.3	73.3	6.8
상대방의 모방/분쟁에 대응(적극적)	0.0	6.7	93.3	7.8
침해소송 피소 등에 대응(방어적)	0.0	20.0	80.0	7.0
VC유치 등 외부 자금조달	40.0	20.0	40.0	4.9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	20.0	26.7	53.3	5.6
정부R&D 수주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	6.7	20.0	73.3	6.7
정부의 다양한 인증(신제품 인증 등) 획득	20.0	13.3	66.7	6.2

비즈니스 모델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B to C 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에서는 ‘권리의 독점적 사용/직접실시’를 위한 활용도를 가장 높게 꼽았고, ‘상대방의 모방/분쟁 대응’, ‘침해소송 피소 등에 대응’을 위한 활용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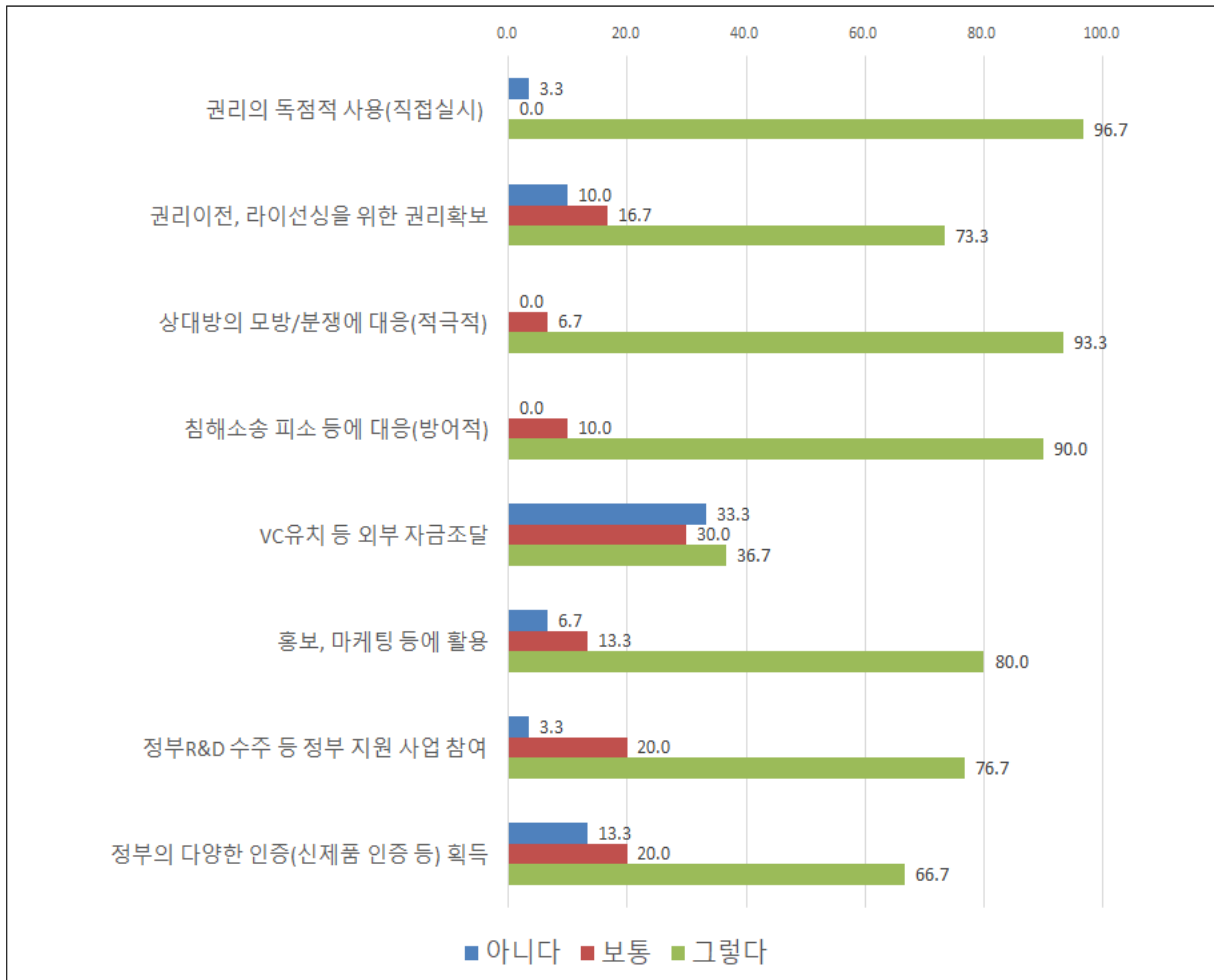
그림 3-30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비즈니스 모델(B to C)



비즈니스 모델 : B to C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 (점)
권리의 독점적 사용(직접실시)	0.0	0.0	100.0	8.5
권리이전, 라이선싱을 위한 권리확보	12.0	8.0	80.0	7.2
상대방의 모방/분쟁에 대응(적극적)	0.0	4.0	96.0	8.3
침해소송 피소 등에 대응(방어적)	4.0	8.0	88.0	7.3
VC유치 등 외부 자금조달	44.0	20.0	36.0	4.8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	8.0	24.0	68.0	6.6
정부R&D 수주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	24.0	28.0	48.0	5.7
정부의 다양한 인증(신제품 인증 등) 획득	28.0	20.0	52.0	5.7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 to B 거래를 주로 하는 경우, '권리의 독점적 사용/직접실시', '상대방의 모방/분쟁 대응'을 위한 활용도를 높게 꼽았고, '침해소송 피소 등에 대응'을 위한 활용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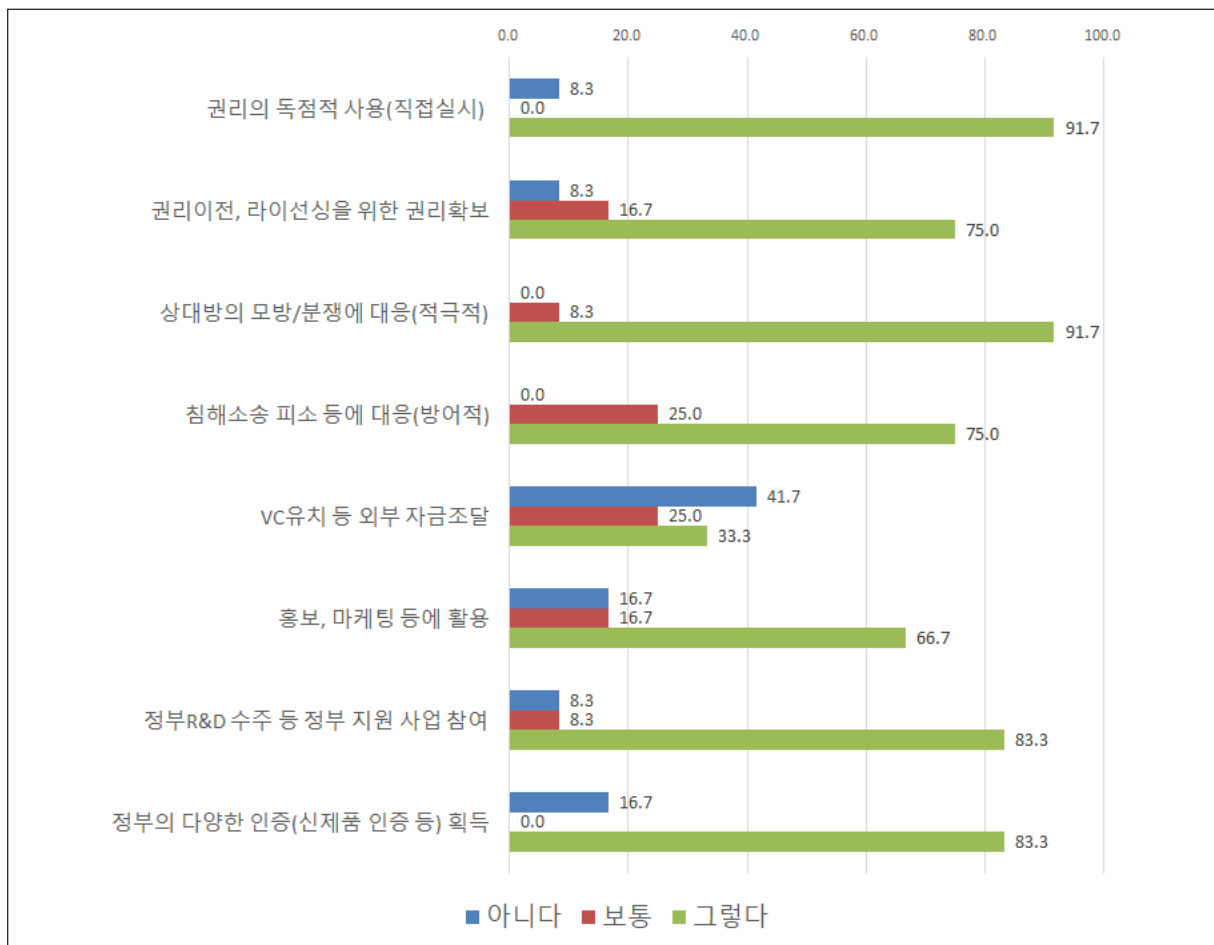
그림 3-31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비즈니스 모델(B to B)



비즈니스 모델 : B to B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 (점)
권리의 독점적 사용(직접실시)	3.3	0.0	96.7	7.8
권리이전, 라이선싱을 위한 권리확보	10.0	16.7	73.3	6.8
상대방의 모방/분쟁에 대응(적극적)	0.0	6.7	93.3	7.8
침해소송 피소 등에 대응(방어적)	0.0	10.0	90.0	7.0
VC유치 등 외부 자금조달	33.3	30.0	36.7	5.5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	6.7	13.3	80.0	6.9
정부R&D 수주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	3.3	20.0	76.7	6.8
정부의 다양한 인증(신제품 인증 등) 획득	13.3	20.0	66.7	6.3

밸류체인 상 위치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면, 연구개발 단계에 속한 기업에서는 ‘상대방의 모방/분쟁 대응’과 ‘권리의 독점적 사용/직접실시’ 관련 활용도를 가장 높게 꼽았고, ‘정부 R&D 수주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정부의 다양한 인증 획득’을 위한 활용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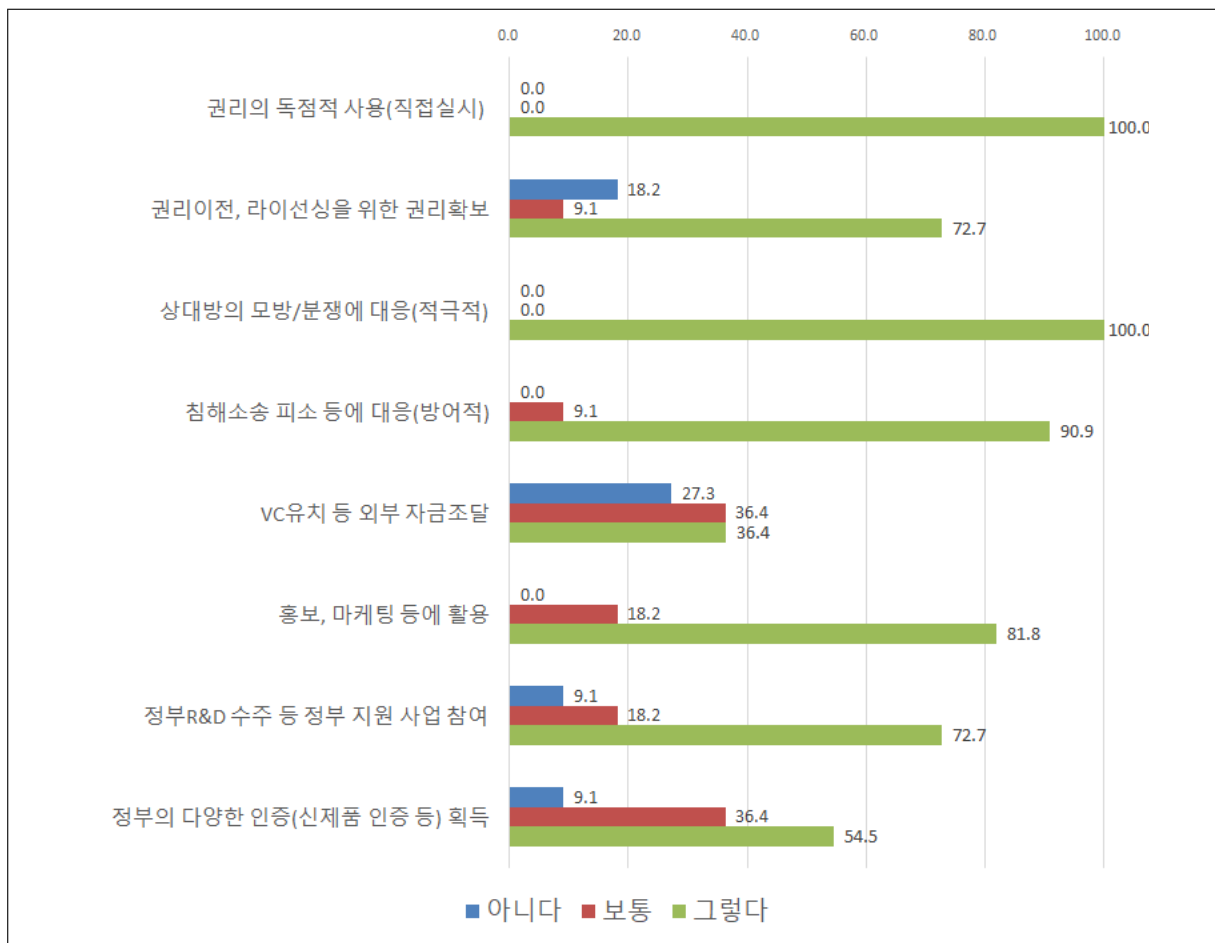
그림 3-32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밸류체인 상 위치(연구개발)



밸류체인 : 연구개발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점)
권리의 독점적 사용(직접실시)	8.3	0.0	91.7	7.8
권리이전, 라이선싱을 위한 권리확보	8.3	16.7	75.0	6.8
상대방의 모방/분쟁에 대응(적극적)	0.0	8.3	91.7	7.9
침해소송 피소 등에 대응(방어적)	0.0	25.0	75.0	6.8
VC유치 등 외부 자금조달	41.7	25.0	33.3	4.7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	16.7	16.7	66.7	5.8
정부R&D 수주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	8.3	8.3	83.3	6.8
정부의 다양한 인증(신제품 인증 등) 획득	16.7	0.0	83.3	6.5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주로 다루는 기업에서는 ‘권리의 독점적 사용/직접실시’, ‘상대방의 모방/분쟁 대응’ 관련 활용도를 높게 꼽았고, ‘홍보, 마케팅 등 활용’, ‘침해소송 피소 등에 대응’을 위한 활용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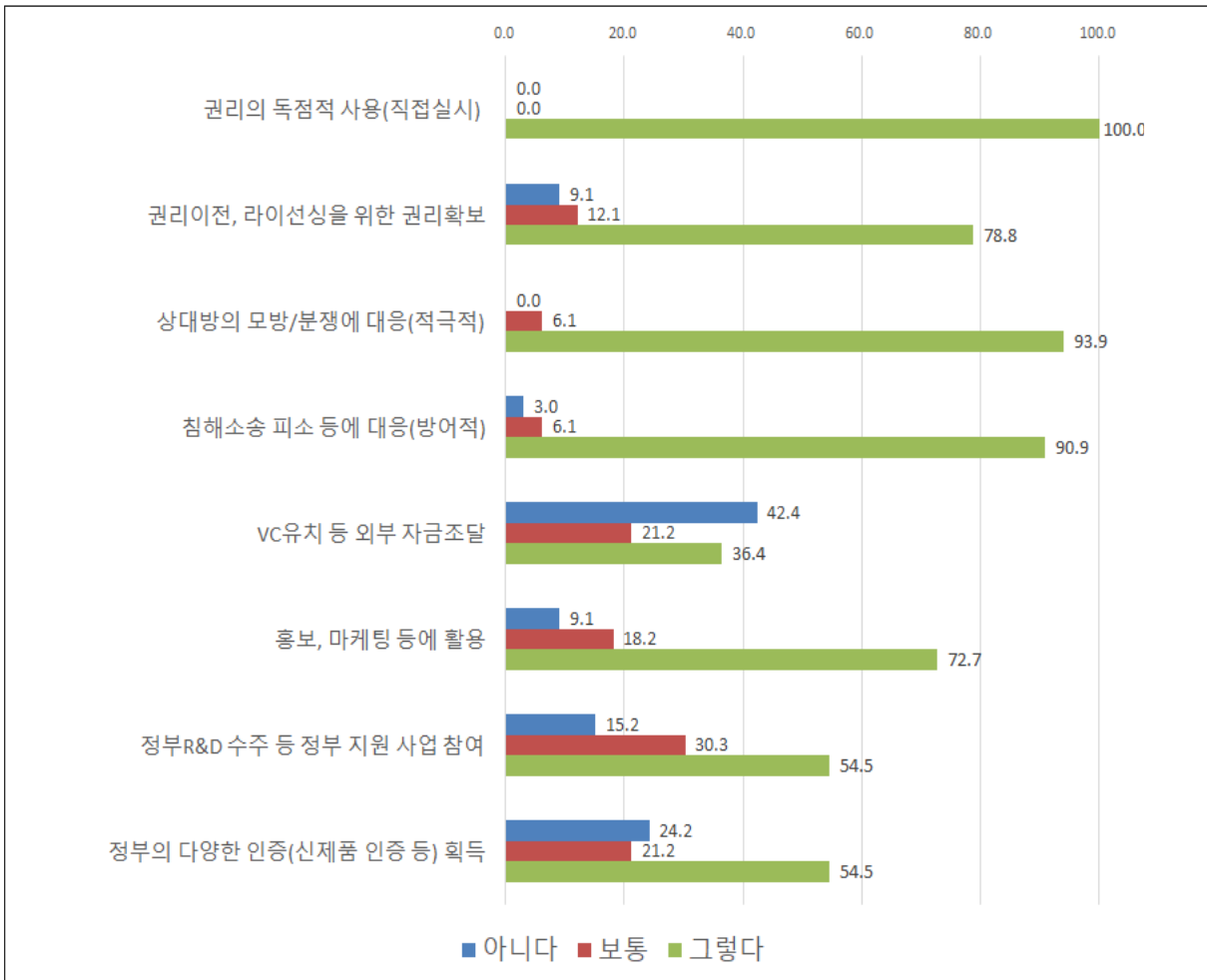
그림 3-33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밸류체인 상 위치(원자재·중간재)



밸류체인 : 중간재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 (점)
권리의 독점적 사용(직접실시)	0.0	0.0	100.0	7.9
권리이전, 라이선싱을 위한 권리확보	18.2	9.1	72.7	6.5
상대방의 모방/분쟁에 대응(적극적)	0.0	0.0	100.0	7.9
침해소송 피소 등에 대응(방어적)	0.0	9.1	90.9	7.0
VC유치 등 외부 자금조달	27.3	36.4	36.4	5.5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	0.0	18.2	81.8	7.1
정부R&D 수주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	9.1	18.2	72.7	6.6
정부의 다양한 인증(신제품 인증 등) 획득	9.1	36.4	54.5	6.1

최종재를 주로 다루는 기업에서는 ‘권리의 독점적 사용/직접실시’를 위한 활용도를 가장 높게 꼽고, ‘상대방의 모방/분쟁 대응’, ‘권리이전/라이선싱을 위한 권리 확보’ 관련 활용도를 높게 꼽았다.

그림 3-34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밸류체인 상 위치(최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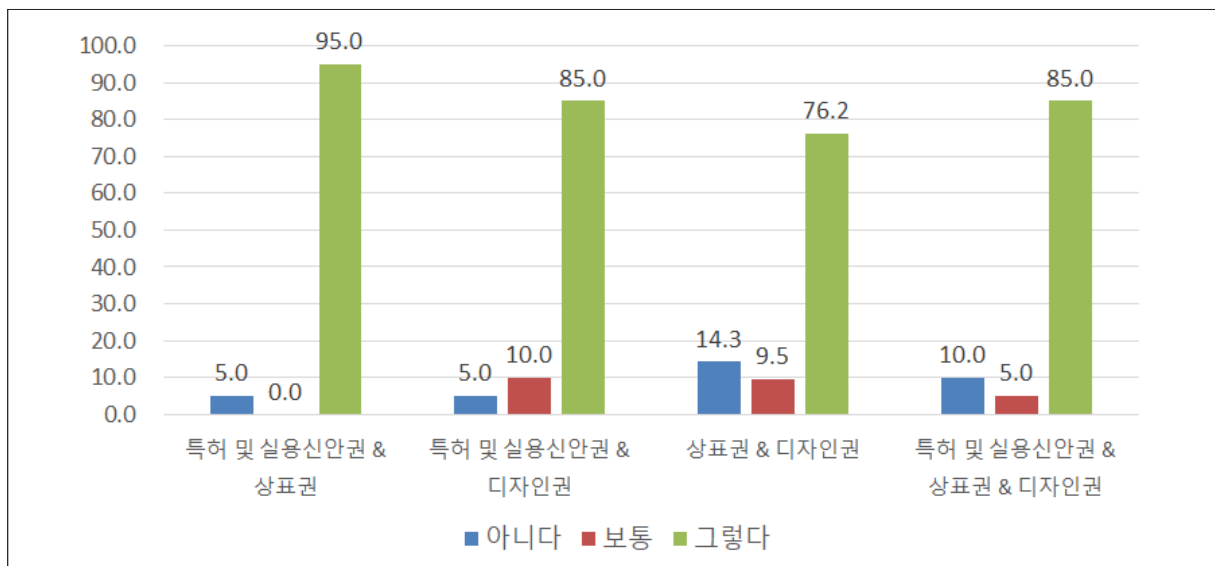
밸류체인 : 최종재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점)
권리의 독점적 사용(직접실시)	0.0	0.0	100.0	8.3
권리이전, 라이선싱을 위한 권리확보	9.1	12.1	78.8	7.2
상대방의 모방/분쟁에 대응(적극적)	0.0	6.1	93.9	8.2
침해소송 피소 등에 대응(방어적)	3.0	6.1	90.9	7.2
VC유치 등 외부 자금조달	42.4	21.2	36.4	5.1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	9.1	18.2	72.7	6.8
정부R&D 수주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	15.2	30.3	54.5	6.0
정부의 다양한 인증(신제품 인증 등) 획득	24.2	21.2	54.5	5.9

#### 4. 복합적 권리 활용도

기업에서 복합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권리의 조합별 활용도를 9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응답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 조합에 대한 활용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각 권리유형의 조합을 사용한 경우, 활용도에 대해 9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화학·바이오 분야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정도(7.6점/9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7.4점/9점),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활용도(7.0점/9점)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5 복합적 권리 활용도 - 업종(화학·바이오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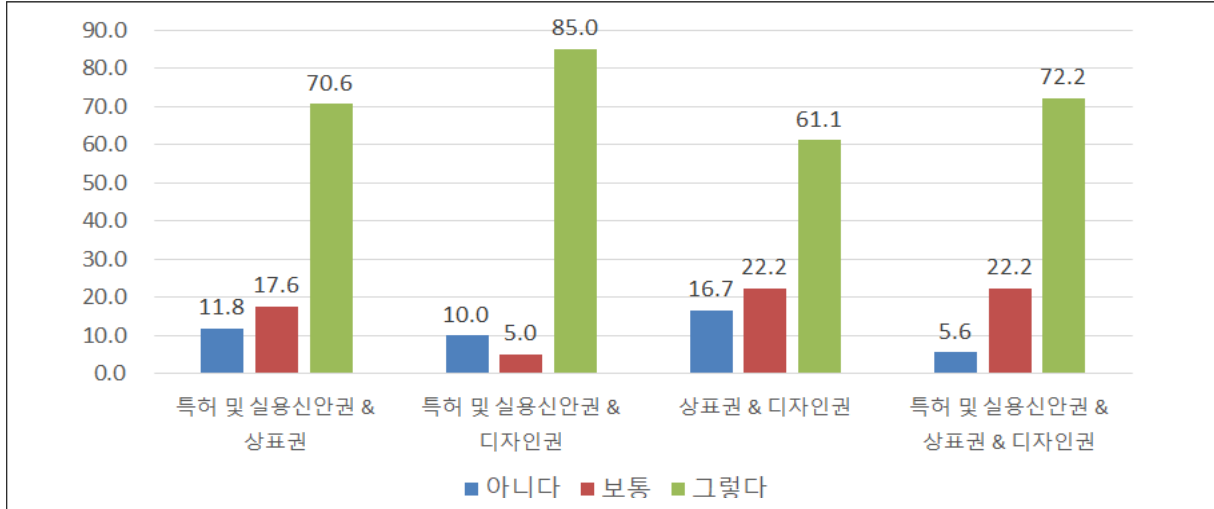


업종 : 화학·바이오 분야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 (점)
특허 및 실용신안권 & 상표권	5.0	0.0	95.0	7.6
특허 및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5.0	10.0	85.0	7.4
상표권 & 디자인권	14.3	9.5	76.2	7.0
특허 및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10.0	5.0	85.0	7.0

※ 각 권리 조합을 사용한 경우, 활용도 평가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활용도(7.4점/9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함께 이용하는 활용도(6.9점/9점)가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36 복합적 권리 활용도 - 업종(전기전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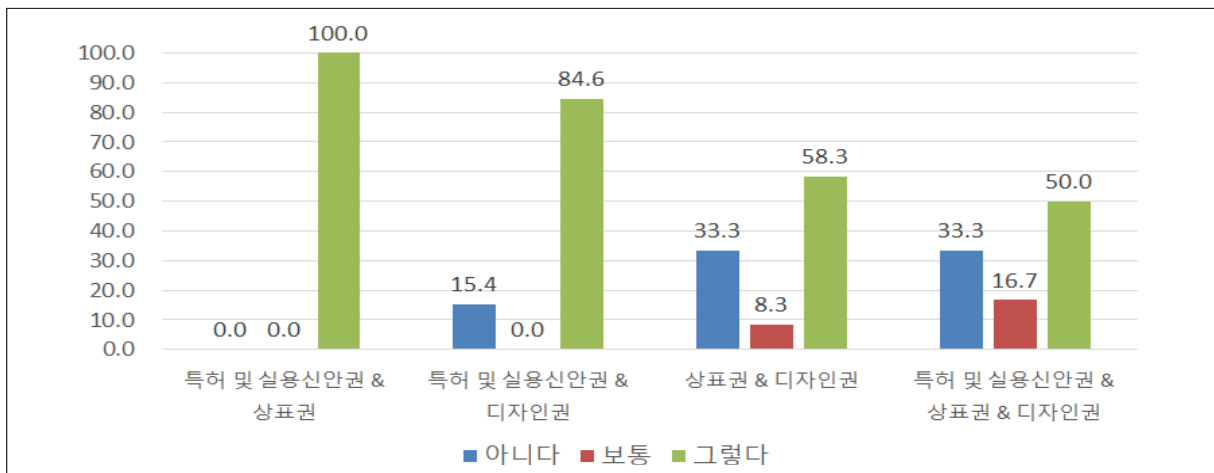


업종 : 전기전자 분야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점)
특허 및 실용신안권 & 상표권	11.8	17.6	70.6	6.7
특허 및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10.0	5.0	85.0	7.4
상표권 & 디자인권	16.7	22.2	61.1	5.9
특허 및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5.6	22.2	72.2	6.9

※ 각 권리 조합을 사용한 경우, 활용도 평가

정보서비스 분야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활용도(7.9점/9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이용하는 활용도(6.5점/9점)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림 3-37 복합적 권리 활용도 - 업종(정보서비스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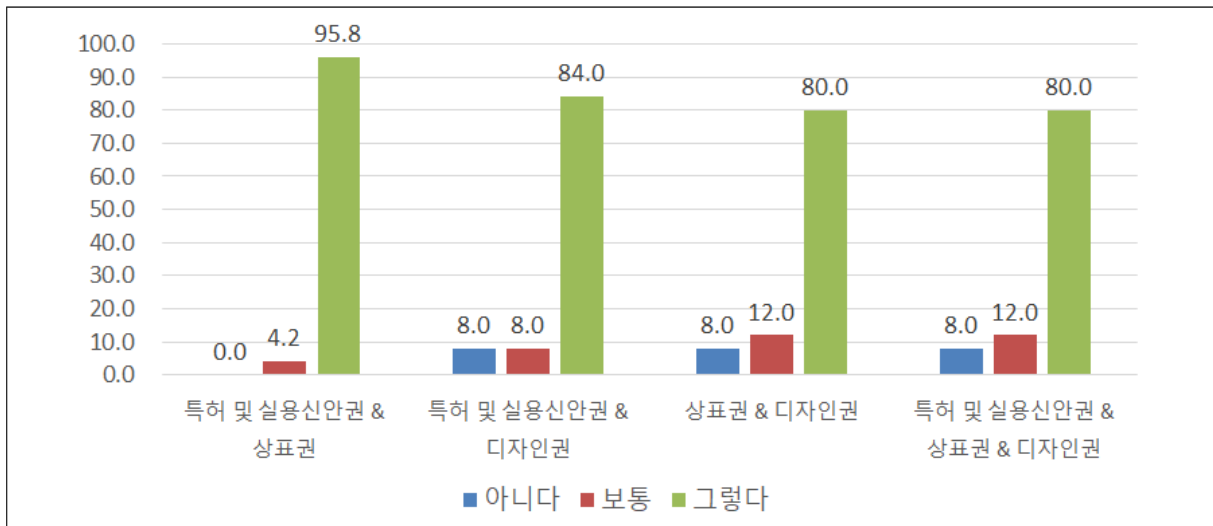
업종 : 정보서비스 분야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 (점)
특허 및 실용신안권 & 상표권	0.0	0.0	100.0	7.9
특허 및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15.4	0.0	84.6	6.5
상표권 & 디자인권	33.3	8.3	58.3	5.5
특허 및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33.3	16.7	50.0	5.2

※ 각 권리 조합을 사용한 경우, 활용도 평가

비즈니스 모델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B to C 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을 함께 사용하는 활용도(7.8점/9점)를 가장 높게 꼽았고,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복합적 사용에 대한 활용도(7.3점/9점)를 그 다음으로 꼽았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 to B 거래를 주로 하는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6.9점/9점)와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사용하는 활용도(6.9점/9점)를 높게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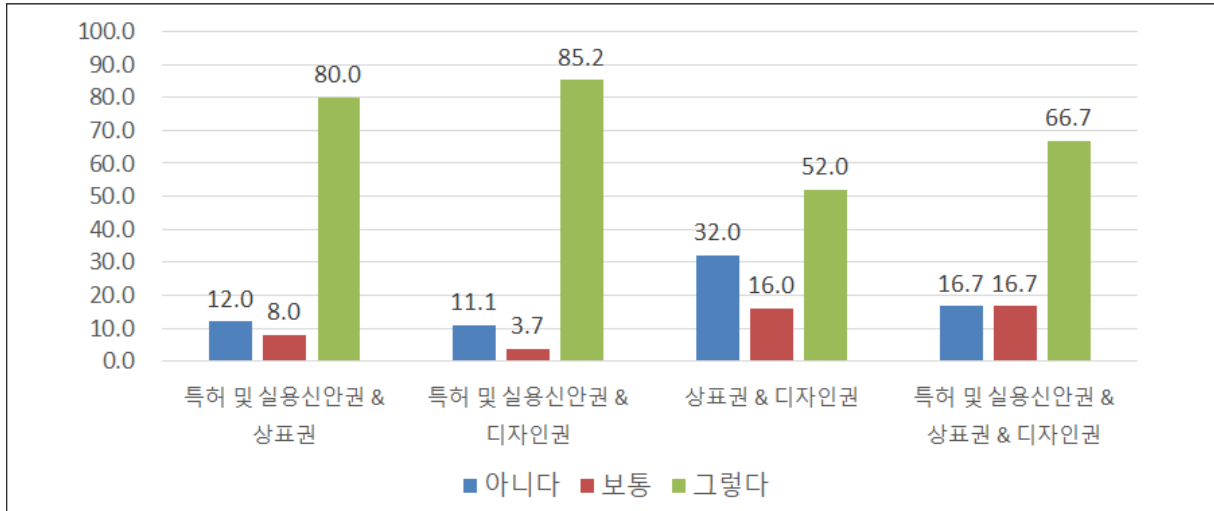
그림 3-38 복합적 권리 활용도 - 비즈니스 모델(B to C)



비즈니스 모델 : B to C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 (점)
특허 및 실용신안권 & 상표권	0.0	4.2	95.8	7.8
특허 및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8.0	8.0	84.0	7.3
상표권 & 디자인권	8.0	12.0	80.0	7.2
특허 및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8.0	12.0	80.0	7.0

※ 각 권리 조합을 사용한 경우, 활용도 평가

그림 3-39 복합적 권리 활용도 - 비즈니스 모델(B to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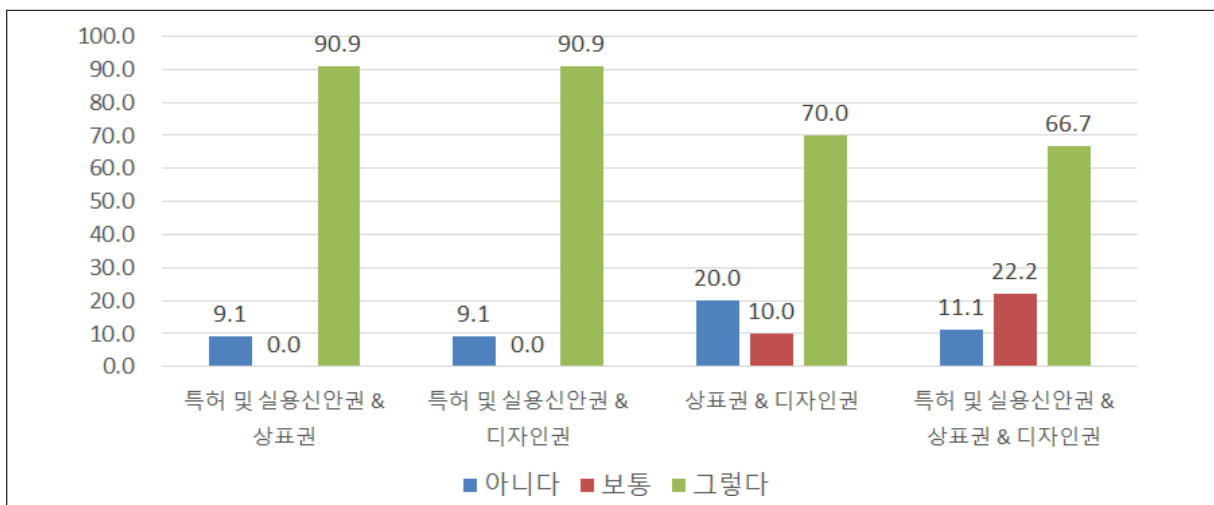


비즈니스 모델 : B to B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 (점)
특허 및 실용신안권 & 상표권	12.0	8.0	80.0	6.9
특허 및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11.1	3.7	85.2	6.9
상표권 & 디자인권	32.0	16.0	52.0	5.3
특허 및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16.7	16.7	66.7	6.3

※ 각 권리 조합을 사용한 경우, 활용도 평가

밸류체인 상 위치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면, 연구개발 단계에 속한 기업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을 함께 사용하는 활용도(7.5점/9점)를 가장 높게 꼽았고,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복합적 사용에 대한 활용도(7.1점/9점)를 그 다음으로 꼽았다.

그림 3-40 복합적 권리 활용도 - 밸류체인 상 위치(연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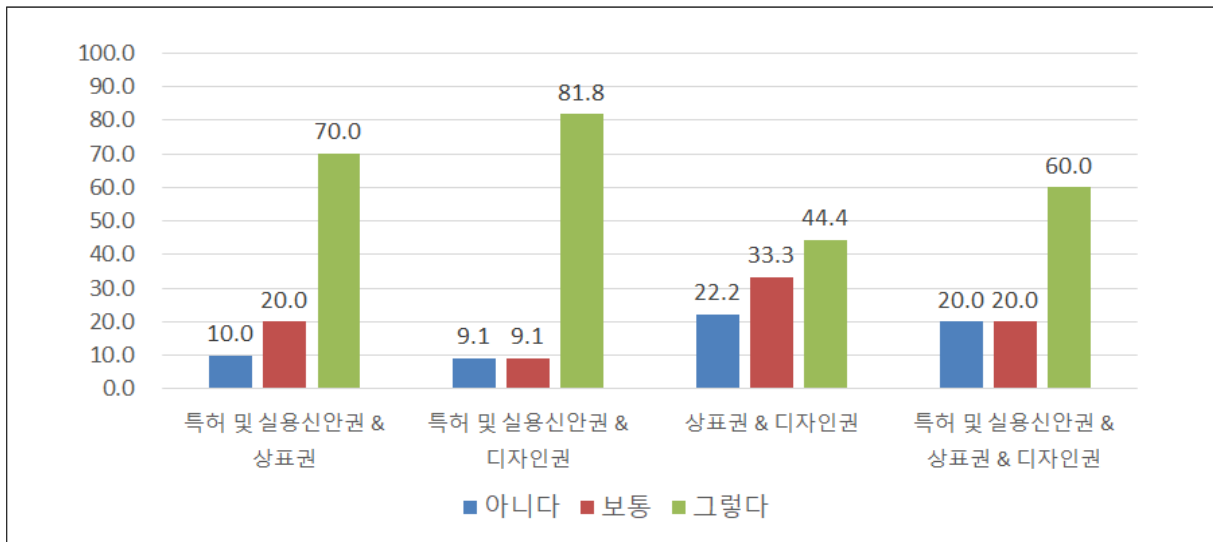
밸류체인 : 연구개발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점)
특허 및 실용신안권 & 상표권	9.1	0.0	90.9	7.5
특허 및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9.1	0.0	90.9	7.1
상표권 & 디자인권	20.0	10.0	70.0	5.8
특허 및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11.1	22.2	66.7	6.1

※ 각 권리 조합을 사용한 경우, 활용도 평가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다루는 기업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복합적 사용에 대한 활용도(7.0점/9점)를 높게 평가하였고,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을 함께 사용하는 활용도(6.4점/9점)가 그 뒤를 이었다.

최종재를 다루는 기업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을 함께 사용하는 활용도(7.7점/9점)를 가장 높게 꼽았고,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복합적 사용에 대한 활용도(7.2점/9점)를 그 다음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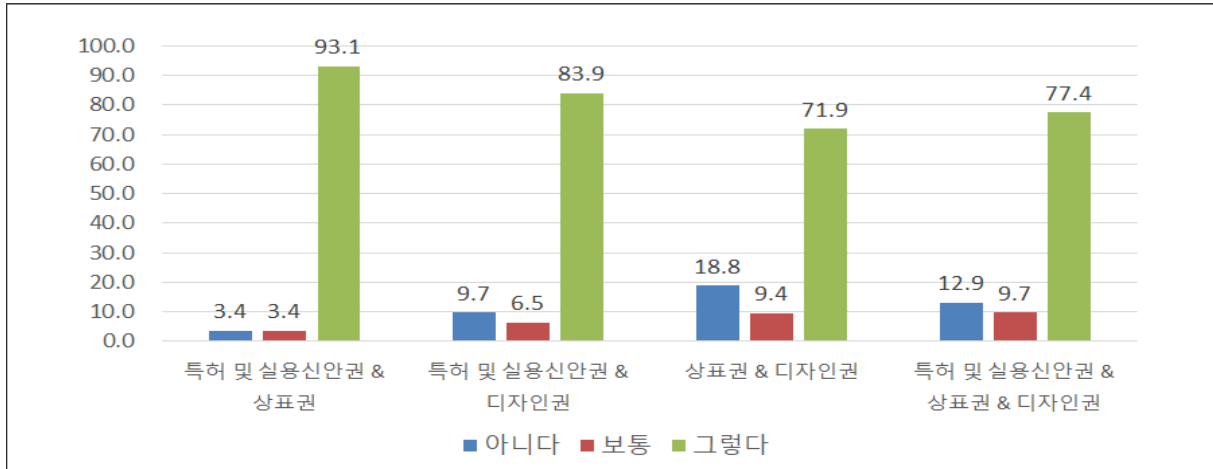
그림 3-41 복합적 권리 활용도 - 밸류체인 상 위치(원자재·중간재)



밸류체인 : 중간재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점)
특허 및 실용신안권 & 상표권	10.0	20.0	70.0	6.4
특허 및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9.1	9.1	81.8	7.0
상표권 & 디자인권	22.2	33.3	44.4	5.6
특허 및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20.0	20.0	60.0	5.8

※ 각 권리 조합을 사용한 경우, 활용도 평가

그림 3-42 복합적 권리 활용도 - 밸류체인 상 위치(최종재)



밸류체인 : 최종재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 (점)
특허 및 실용신안권 & 상표권	3.4	3.4	93.1	7.7
특허 및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9.7	6.5	83.9	7.2
상표권 & 디자인권	18.8	9.4	71.9	6.6
특허 및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12.9	9.7	77.4	6.9

※ 각 권리 조합을 사용한 경우, 활용도 평가

## II 복합적 권리 활용 사례 분석

### 1. 지식재산권 복합적 활용 사례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 응답 56건을 산업분야(업종)별,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밸류체인 상 위치에 따라 구분하여 유형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별 사례에서의 밸류체인은 복합적 권리 활용이 이루어진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최종재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 1) 화학·바이오 분야

화학·바이오 분야 기업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최종소비재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복합적 권리 활용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중간재에 대한 복합적 권리 활용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표 3-23 화학·바이오 분야 권리의 복합적 활용

사례구분	최종소비재 여부	복합적 활용 권리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저작권
1	최종소비재	0		0	0	
2	최종소비재		0	0		
3	최종소비재	0	0	0		
4	최종소비재	0	0	0		
5	최종소비재	0		0	0	
6	최종소비재	0		0		
7	최종소비재	0		0	0	
8	최종소비재	0		0		
9	최종소비재	0		0		
10	최종소비재	0		0		
11	최종소비재		0	0		
12	최종소비재		0	0	0	
13	최종소비재	0	0	0		
14	최종소비재	0	0	0		
15	최종소비재	0		0		
16	X	0	0	0		
17	X	0	0	0		
18	X	0	0			
19	X	0	0	0		
20	X	0	0			
21	X	0		0		

## 2) 전기전자 분야

전기전자 분야 기업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최종소비재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복합적 권리 활용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뒤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중간재에 대한 복합적 권리 활용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표 3-24 전기전자 분야 권리의 복합적 활용

사례구분	최종소비재 여부	복합적 활용 권리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저작권
22	최종소비재	0	0			
23	최종소비재	0		0		
24	최종소비재	0	0	0		
25	최종소비재	0	0	0		
26	최종소비재	0	0	0		0
27	최종소비재	0		0		
28	최종소비재	0	0	0		
29	최종소비재	0	0	0		
30	최종소비재		0	0		
31	최종소비재	0	0			
32	최종소비재	0	0	0		
33	최종소비재	0	0			
34	최종소비재	0	0	0		
35	최종소비재	0	0			
36	x	0	0			
37	x	0	0	0		
38	x	0	0			
39	x	0	0			
40	x	0	0			
41	x	0	0			

### 3) 정보서비스 분야

정보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최종소비재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복합적 권리 활용에서 저작권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표 3-25 정보서비스 분야 권리의 복합적 활용

사례구분	최종소비재 여부	복합적 활용 권리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저작권
42	최종소비재	0	0			
43	최종소비재	0		0		0
44	최종소비재			0		0
45	최종소비재	0	0			

사례구분	최종소비재 여부	복합적 활용 권리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저작권
46	최종소비재		0		0	
47	최종소비재	0	0			
48	최종소비재	0	0	0		0
49	최종소비재	0	0	0		
50	최종소비재	0	0			
51	최종소비재	0	0	0	0	0
52	x	0		0		
53	x	0	0			0
54	x	0	0			
55	x	0	0	0		
56	x	0	0			

## 2. 복합적 권리 활용 방식의 특징

기업이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지식재산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전기전자,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자주 사용되며([그림 3-43] 참조), 특허권과 상표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화학·바이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3-44] 참조).

그림 3-43 업종별 특허권-디자인권 복합 활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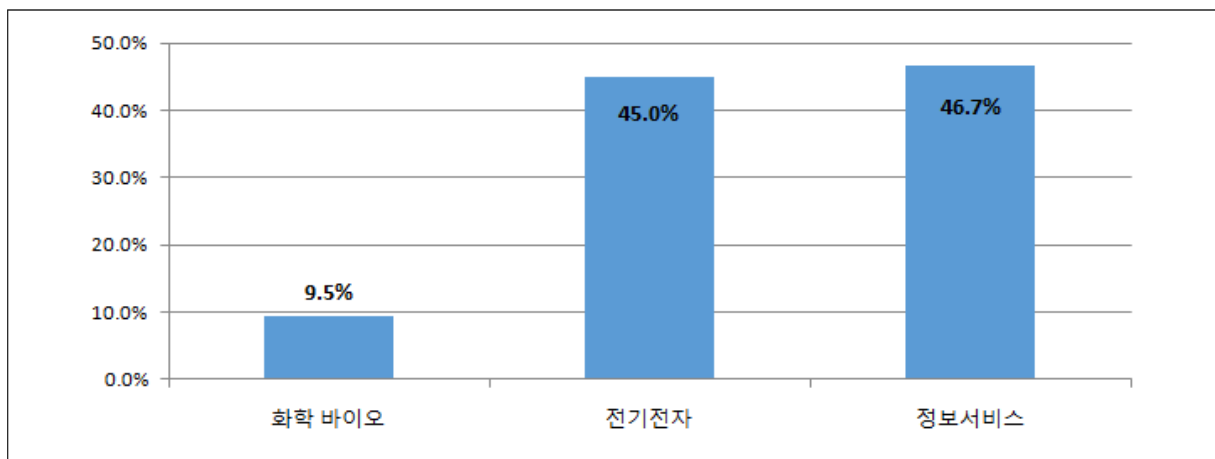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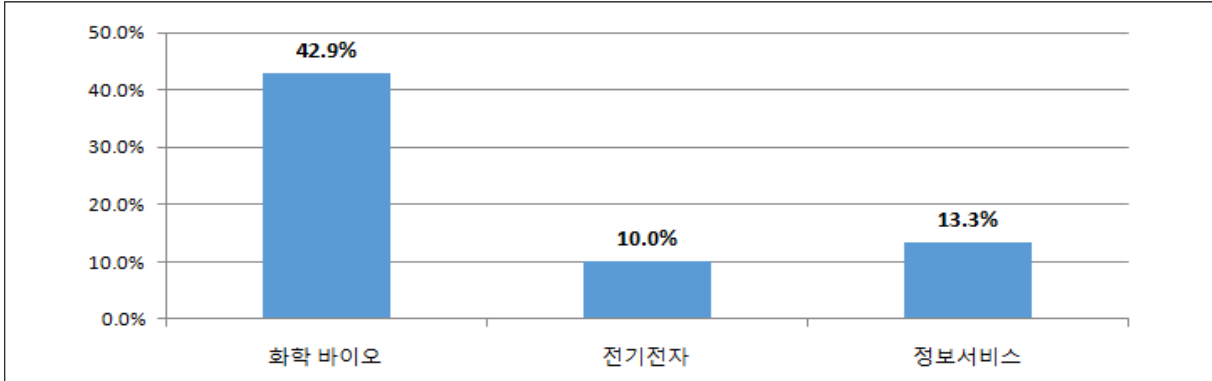


그림 3-44 업종별 특허권-상표권 복합 활용 비율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화학·바이오 분야에서 일부 관찰되었으며, 전기전자 분야, 정보서비스 분야에서의 활용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3-45 참조).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전기전자 분야 및 화학·바이오,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그림 3-45 업종별 상표권-디자인권 복합 활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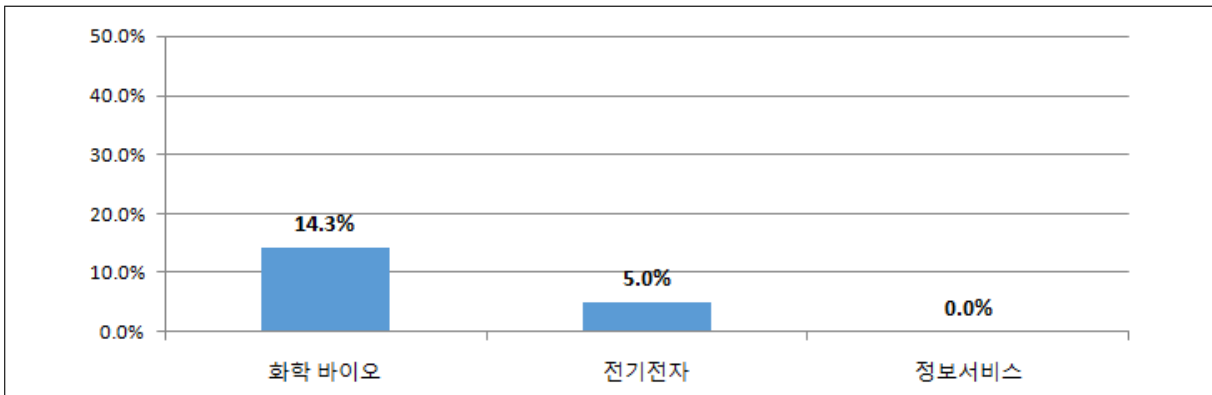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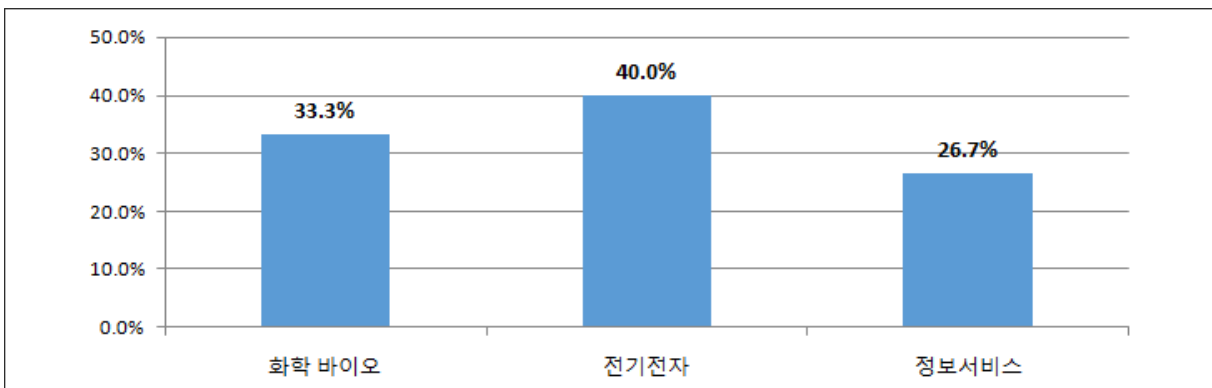


그림 3-46 업종별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복합 활용 비율



업종과 함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위치한 밸류체인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업종별-밸류체인 별23)로 구분하여 활용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때, 개별 사례에서의 밸류체인은 복합적 권리 활용이 이루어진 제품 또는 서비스가 최종재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먼저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그림 3-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전자 분야의 중간재 제품(또는 서비스), 정보서비스 분야의 중간재 제품(또는 서비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7 업종별 밸류체인별 특허권-디자인권 복합 활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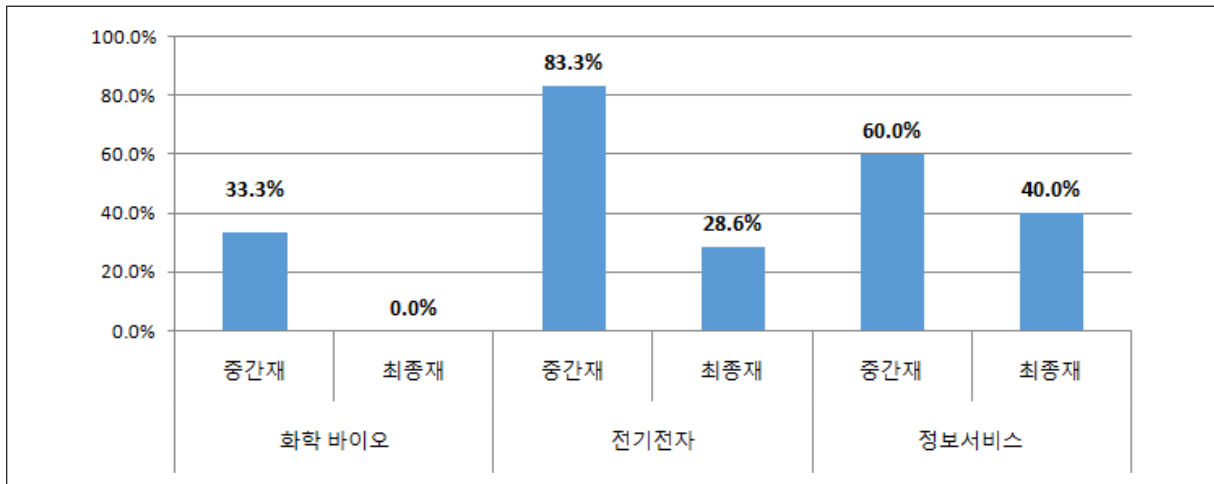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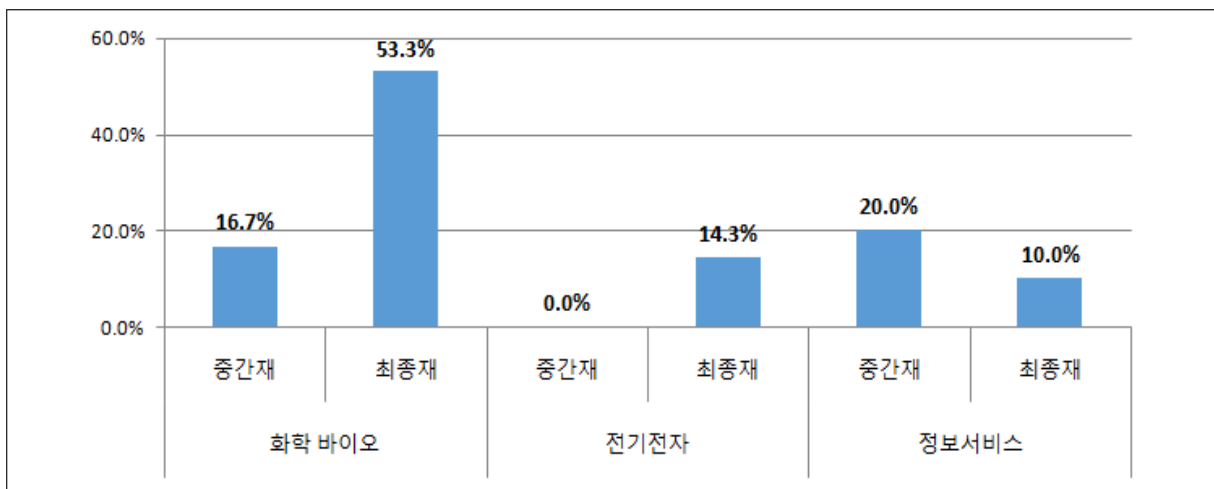


그림 3-48 업종별 밸류체인별 특허권-상표권 복합 활용 비율



23) 기업 전반의 밸류체인이 아닌, 복합적 권리 활용이 이루어진 제품 또는 서비스의 밸류체인 상 위치에 따른 구분

특허권과 상표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그림 3-48]과 같이 화학·바이오 분야의 최종소비재 제품(또는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는데, 화학·바이오 분야의 최종소비재 제품(또는 서비스), 전기전자 분야의 최종소비재 제품(또는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3-49] 참조).

그림 3-49 업종별 밸류체인별 상표권-디자인권 복합 활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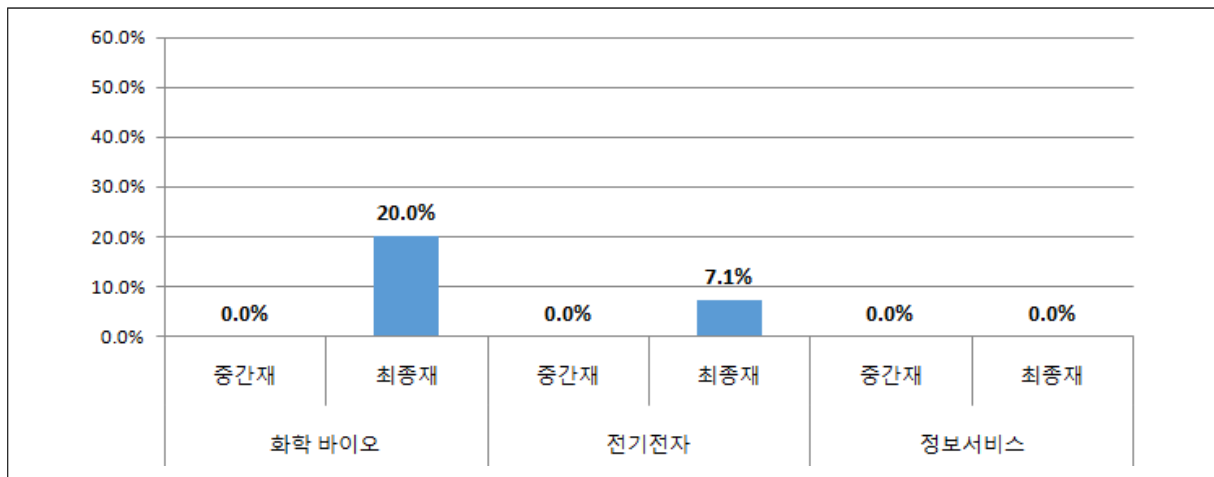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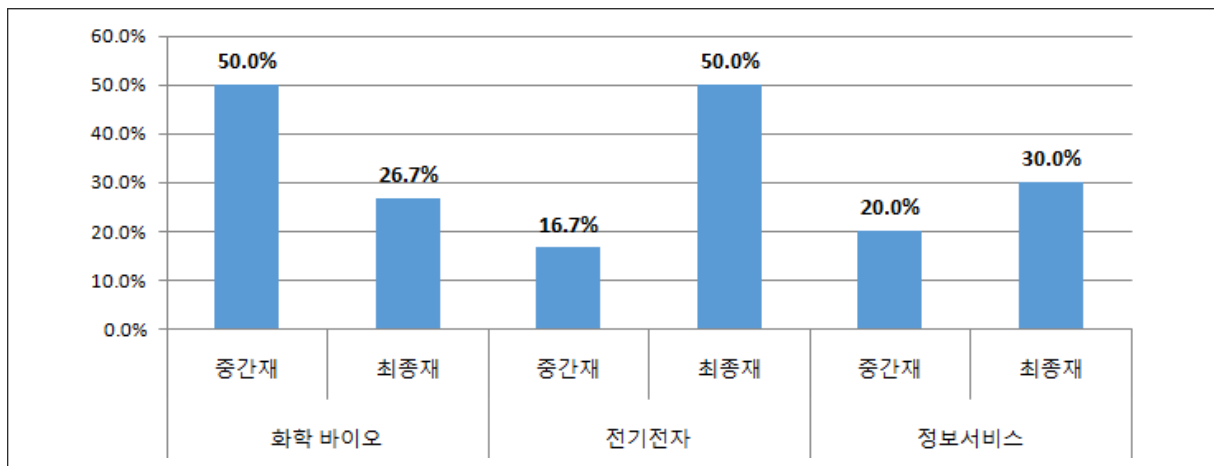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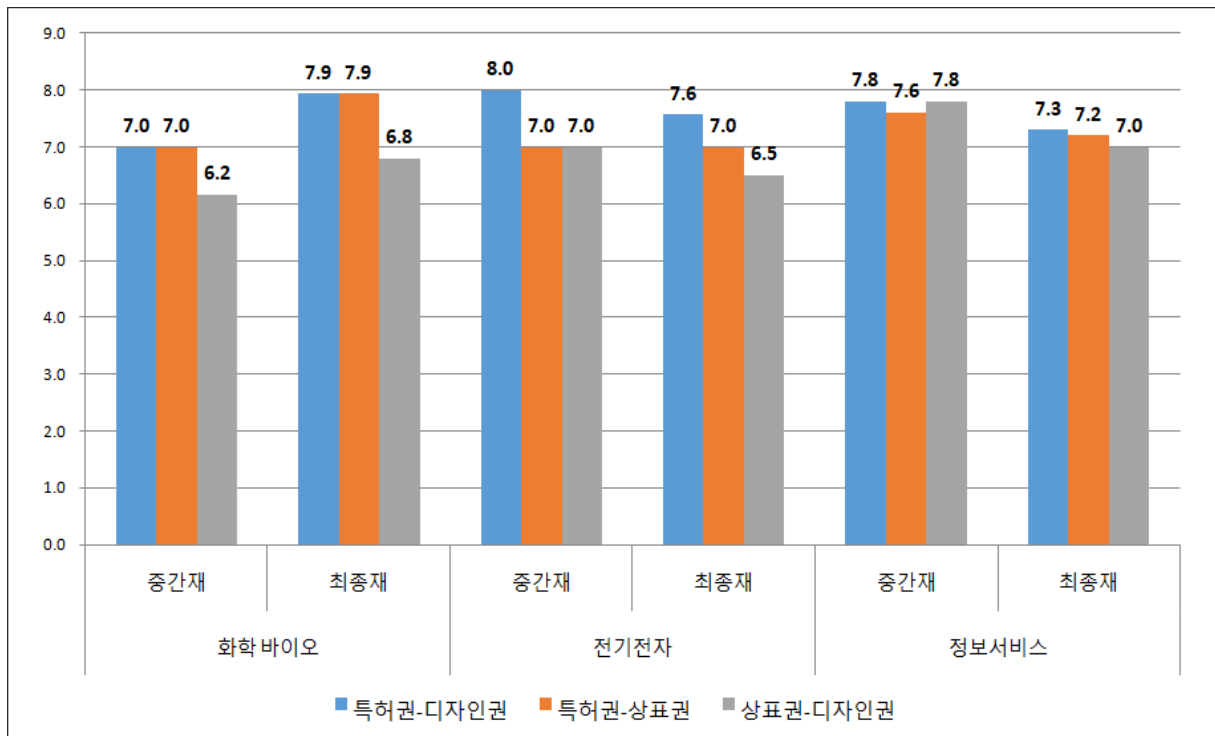
그림 3-50 업종별 밸류체인별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복합 활용 비율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화학·바이오 분야의 중간재 제품(또는 서비스), 전기전자 분야의 최종소비재 제품(또는 서비스)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50] 참조).

56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어려우나, 특허권과 상표권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이 화학·바이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들 간의 상호보완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전기전자 분야는 중간재 제품(또는 서비스)을 중심으로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확보함으로써 거래되는 제품(또는 서비스)을 충분히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된 전략으로 보인다. 참고로, 권리 간 상호보완성에 대한 평가(9점 척도)에서 전기전자 분야 중간재 관련 기업들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간의 상호보완성을 다른 권리 간의 상호보완성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51] 참조).

그림 3-51 업종별 밸류체인별 권리 간 상호보완성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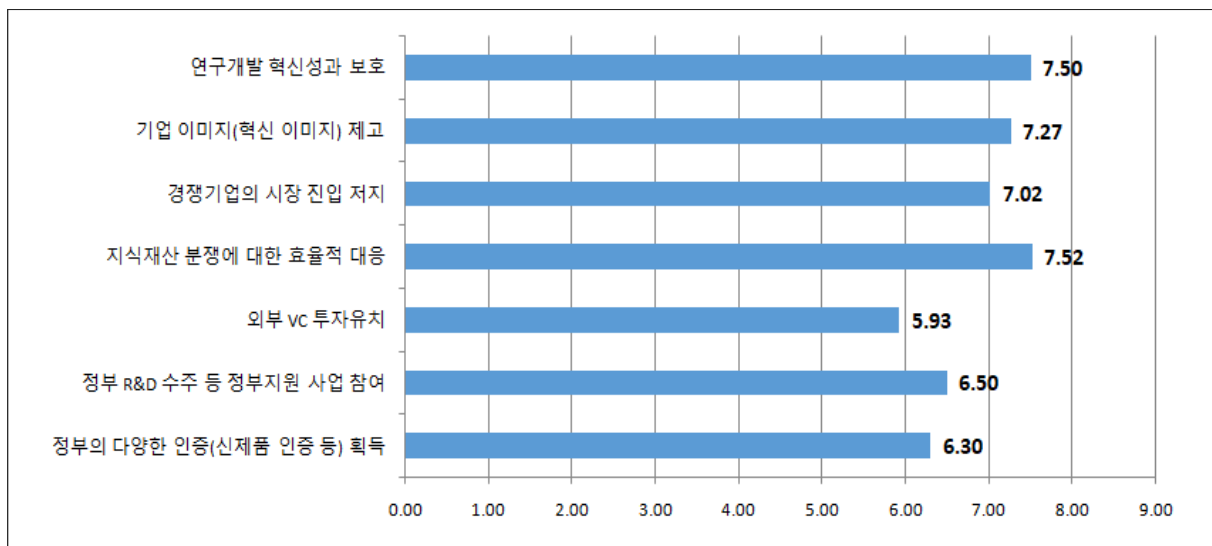


		특허권-디자인권	특허권-상표권	상표권-디자인권
화학 바이오	중간재	7.0	7.0	6.2
	최종재	7.9	7.9	6.8
전기전자	중간재	8.0	7.0	7.0
	최종재	7.6	7.0	6.5
정보서비스	중간재	7.8	7.6	7.8
	최종재	7.3	7.2	7.0

### 3. 복합적 권리 활용 효과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를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하나의 제품 및 서비스에 복합적 권리 활용 전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를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혁신성과 보호', '기업 이미지 제고'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3-5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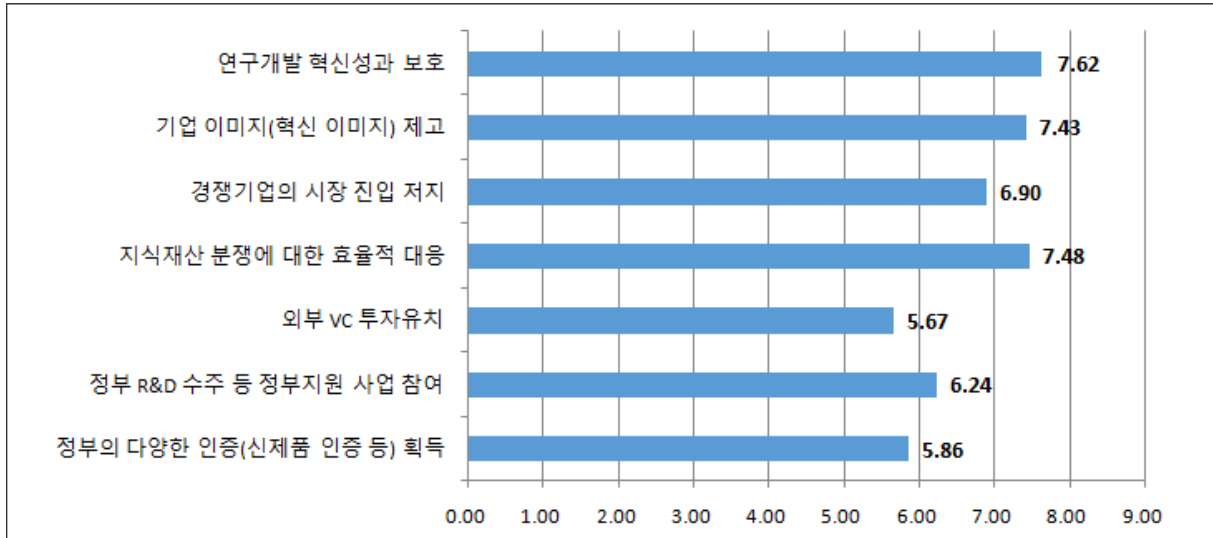
그림 3-52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



	응답기업 전체
연구개발 혁신성과 보호	7.50
기업 이미지(혁신 이미지) 제고	7.27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 저지	7.02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7.52
외부 VC 투자유치	5.93
정부 R&D 수주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	6.50
정부의 다양한 인증(신제품 인증 등) 획득	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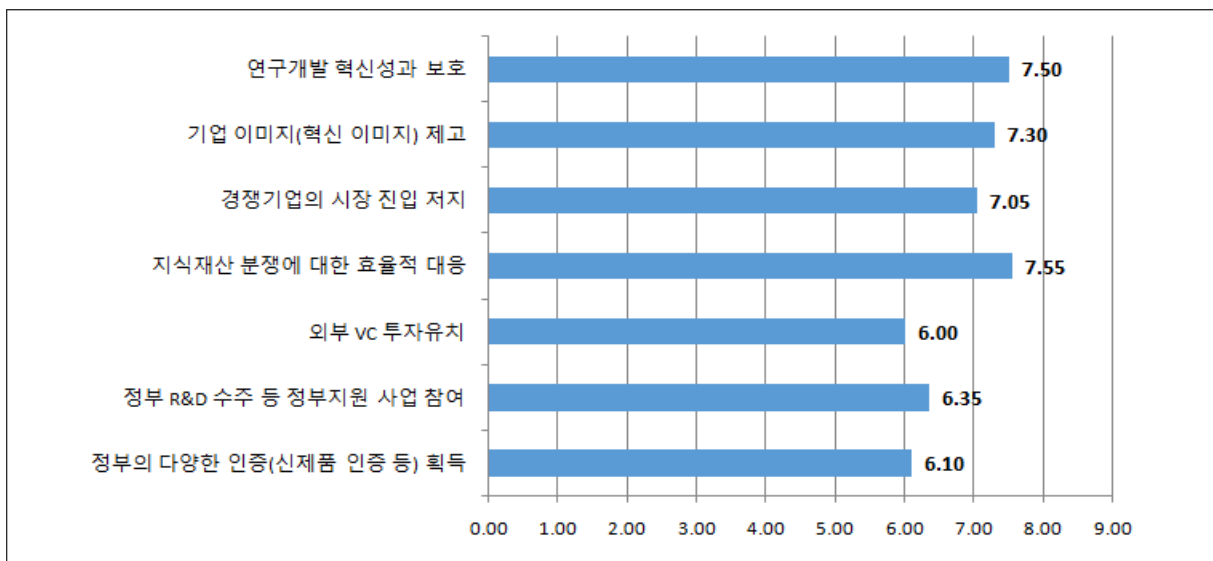
업종별로 효과에 대한 응답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화학·바이오분야 기업들은 '혁신성과 보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기업 이미지 제고' 순으로 응답하였으며(그림 3-53 참조), 전기전자 분야 기업들은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혁신성과 보호', '기업 이미지 제고' 순으로 응답하였고(그림 3-54 참조), 정보서비스 분야 기업들은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혁신성과 보호', '정부의 다양한 인증(신제품 인증 등) 획득'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3-55 참조).

그림 3-53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 : 화학·바이오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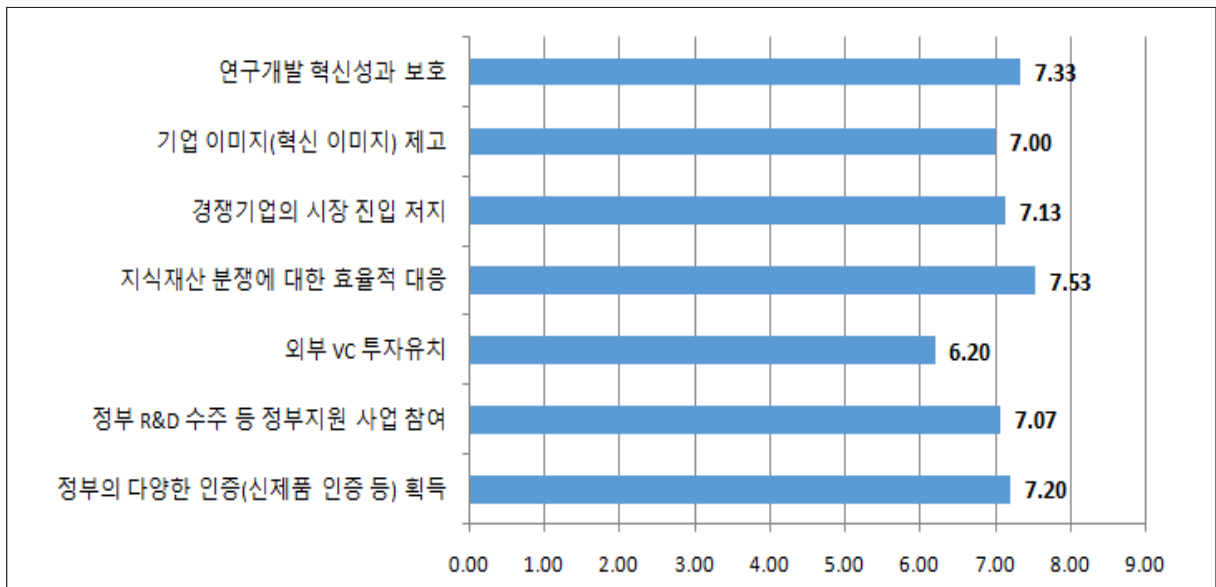
	화학·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혁신성과 보호	7.62
기업 이미지(혁신 이미지) 제고	7.43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 저지	6.90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7.48
외부 VC 투자유치	5.67
정부 R&D 수주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	6.24
정부의 다양한 인증(신제품 인증 등) 획득	5.86

그림 3-54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 : 전기전자 분야



	전기전자 분야
연구개발 혁신성과 보호	7.50
기업 이미지(혁신 이미지) 제고	7.30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 저지	7.05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7.55
외부 VC 투자유치	6.00
정부 R&D 수주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	6.35
정부의 다양한 인증(신제품 인증 등) 획득	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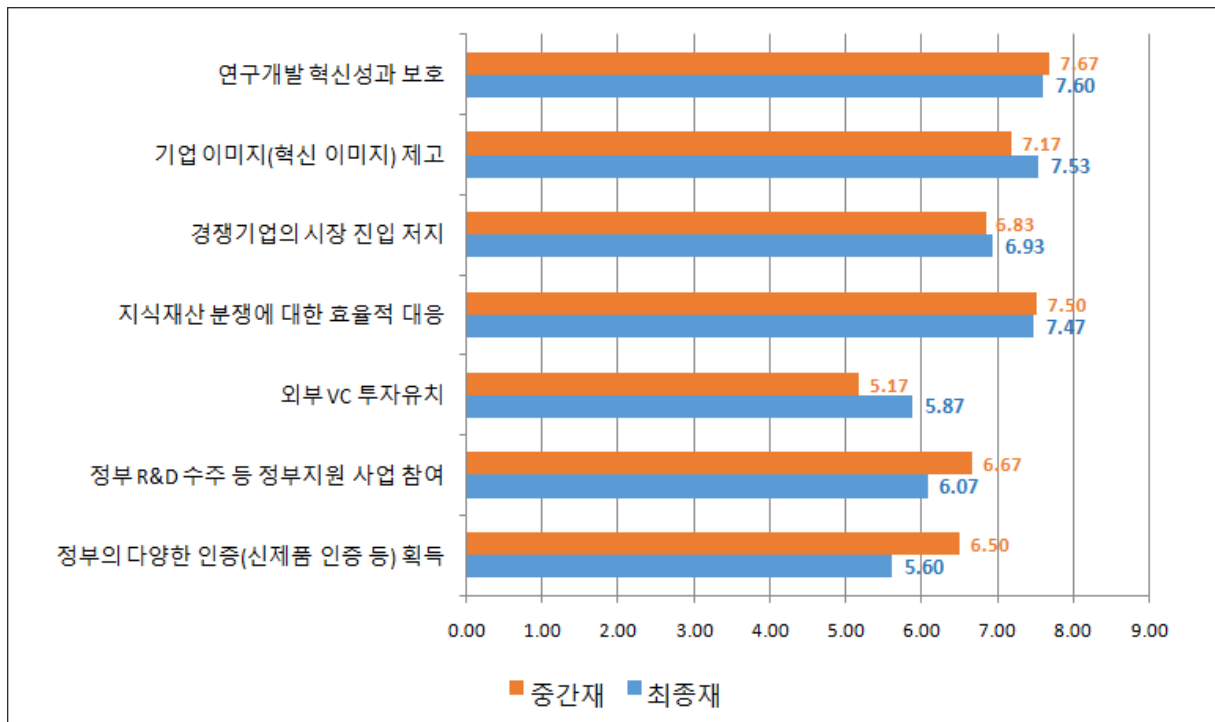
그림 3-55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 : 정보서비스 분야



	정보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혁신성과 보호	7.33
기업 이미지(혁신 이미지) 제고	7.00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 저지	7.13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7.53
외부 VC 투자유치	6.20
정부 R&D 수주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	7.07
정부의 다양한 인증(신제품 인증 등) 획득	7.20

업종별-밸류체인별로 구분하여 효과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화학·바이오분야 중간재 제품(또는 서비스)에 복합적 활용 전략을 사용한 기업은 ‘혁신성과 보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기업 이미지 제고’ 순으로, 최종소비재 제품(또는 서비스)에 복합적 활용 전략을 사용한 기업은 ‘혁신성과 보호’, ‘기업 이미지 제고’,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순으로 평가하였다(그림 3-5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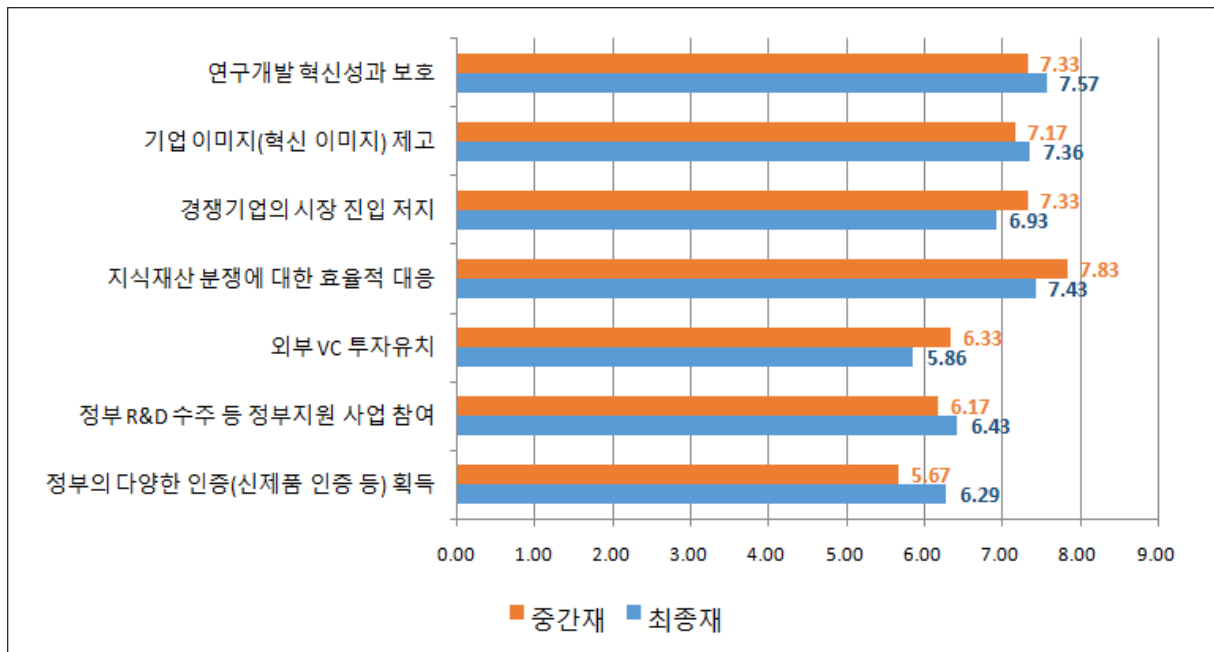
그림 3-56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 : 화학·바이오 분야-밸류체인별



화학·바이오 분야 밸류체인별	중간재	최종재
연구개발 혁신성과 보호	7.67	7.60
기업 이미지(혁신 이미지) 제고	7.17	7.53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 저지	6.83	6.93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7.50	7.47
외부 VC 투자유치	5.17	5.87
정부 R&D 수주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	6.67	6.07
정부의 다양한 인증(신제품 인증 등) 획득	6.50	5.60

전기전자 분야 중간재 제품(또는 서비스)에 복합적 활용 전략을 사용한 기업은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효과를 가장 높게 꼽았고, '혁신성과 보호'와 '기업 이미지 제고'를 다음으로 꼽았다. 최종소비재 제품(또는 서비스)에 복합적 활용 전략을 사용한 기업은 '혁신성과 보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기업 이미지 제고' 순으로 평가했다(그림 3-5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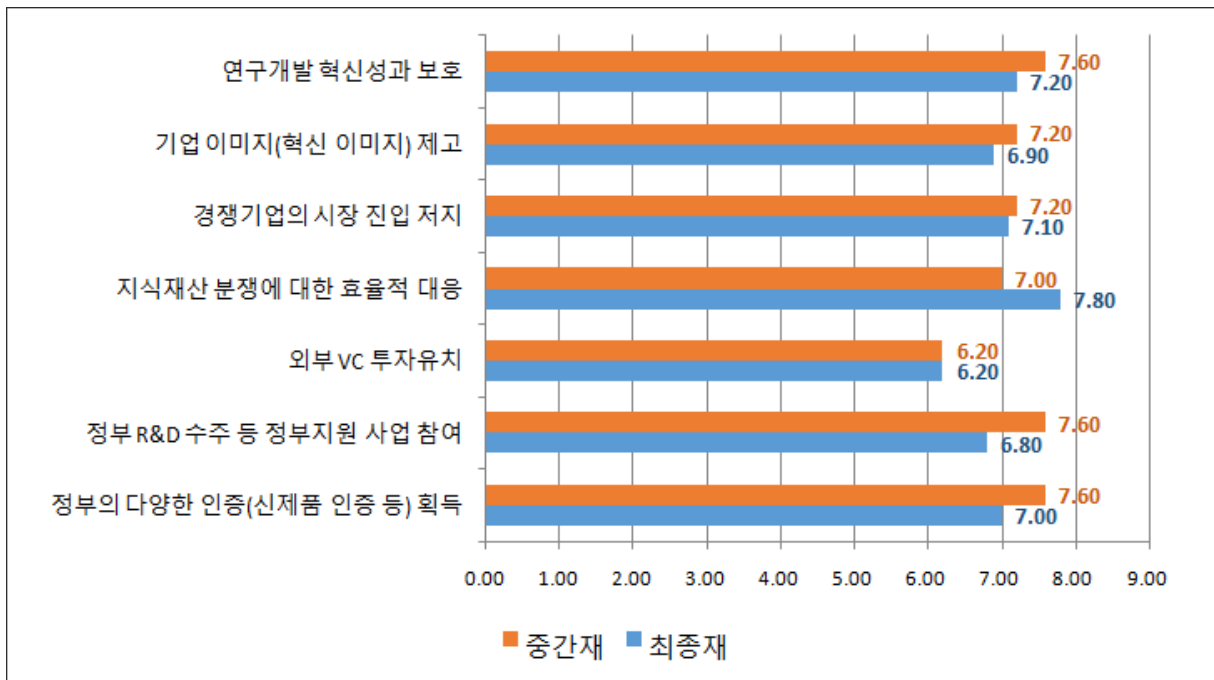
그림 3-57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 : 전기전자 분야-밸류체인별



전기전자 분야 밸류체인별	중간재	최종재
연구개발 혁신성과 보호	7.33	7.57
기업 이미지(혁신 이미지) 제고	7.17	7.36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 저지	7.33	6.93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7.83	7.43
외부 VC 투자유치	6.33	5.86
정부 R&D 수주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	6.17	6.43
정부의 다양한 인증(신제품 인증 등) 획득	5.67	6.29

정보서비스 분야 중간재 제품(또는 서비스)에 복합적 활용 전략을 사용한 기업은 ‘혁신성과 보호’, ‘정부 R&D 수주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정부의 다양한 인증(신제품) 획득’의 효과를 가장 높게 꼽았고, 최종 소비재 제품(또는 서비스)에 복합적 활용 전략을 사용한 기업은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혁신성과 보호’, ‘경쟁기업 시장진입 저지’ 순으로 응답했다(그림 3-58 참조).

그림 3-58 복합적 권리 활용의 효과 : 정보서비스 분야-밸류체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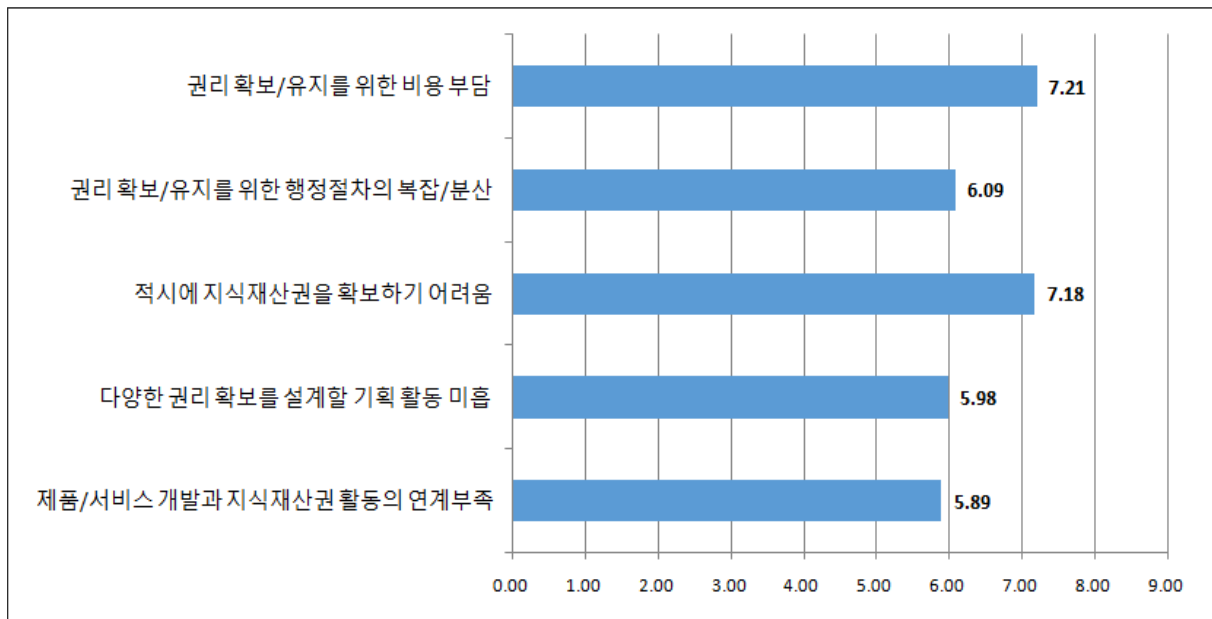
정보서비스 분야 밸류체인별	중간재	최종재
연구개발 혁신성과 보호	7.60	7.20
기업 이미지(혁신 이미지) 제고	7.20	6.90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 저지	7.20	7.10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7.00	7.80
외부 VC 투자유치	6.20	6.20
정부 R&D 수주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	7.60	6.80
정부의 다양한 인증(신제품 인증 등) 획득	7.60	7.00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복합적 권리활용을 통한 ‘혁신성과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업종별로 권리 활용의 효과를 달리 평가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4. 복합적 권리 활용 주요 걸림돌

복합적 권리 활용의 걸림돌을 9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그림 3-5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의 제품 및 서비스에 복합적 권리 활용 전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권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행정절차의 복잡/분산’을 그 다음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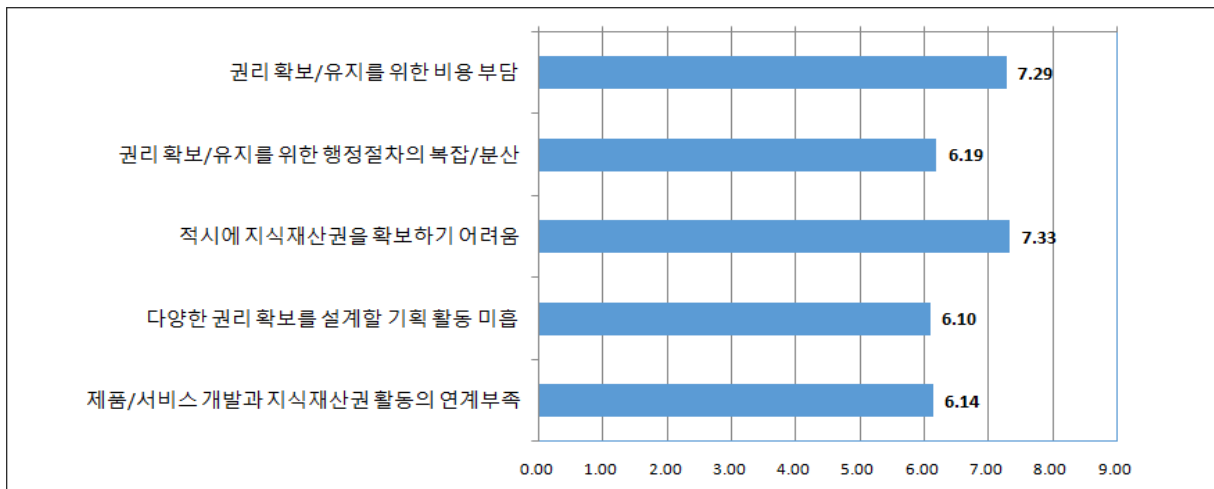
그림 3-59 복합적 권리 활용의 걸림돌



	응답기업 전체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7.21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행정절차의 복잡/분산	6.09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7.18
다양한 권리 확보를 설계할 기획 활동 미흡	5.98
제품/서비스 개발과 지식재산권 활동의 연계부족	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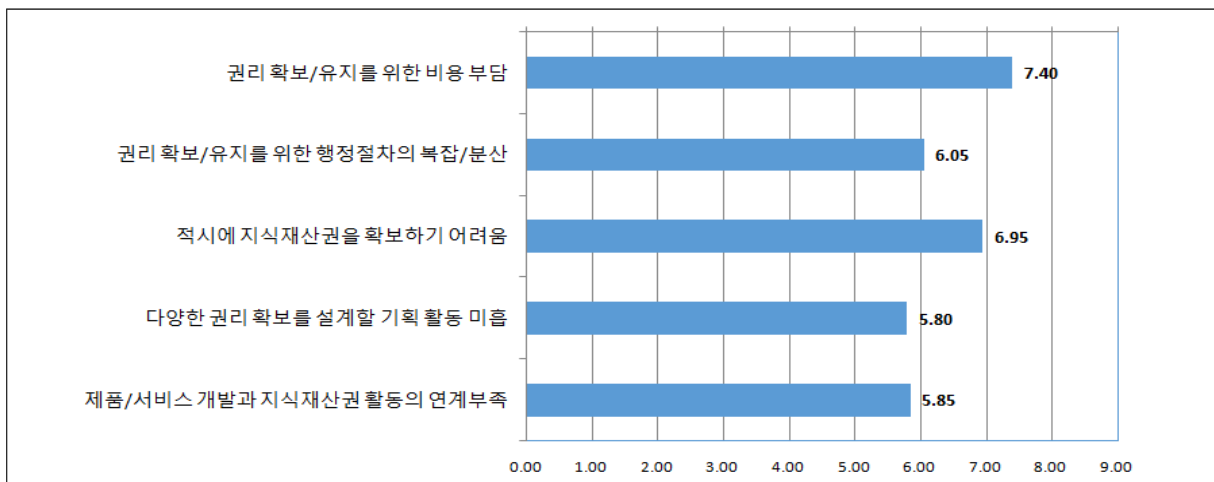
업종별로 주요 걸림들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화학·바이오분야 기업들은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행정절차의 복잡/분산’ 순으로 응답하였으며([그림 3-60] 참조), 전기전자 분야 기업들은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행정절차의 복잡/분산’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3-61] 참조).

그림 3-60 복합적 권리 활용의 걸림들 : 화학·바이오 분야



	화학·바이오 분야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7.29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행정절차의 복잡/분산	6.19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7.33
다양한 권리 확보를 설계할 기획 활동 미흡	6.10
제품/서비스 개발과 지식재산권 활동의 연계부족	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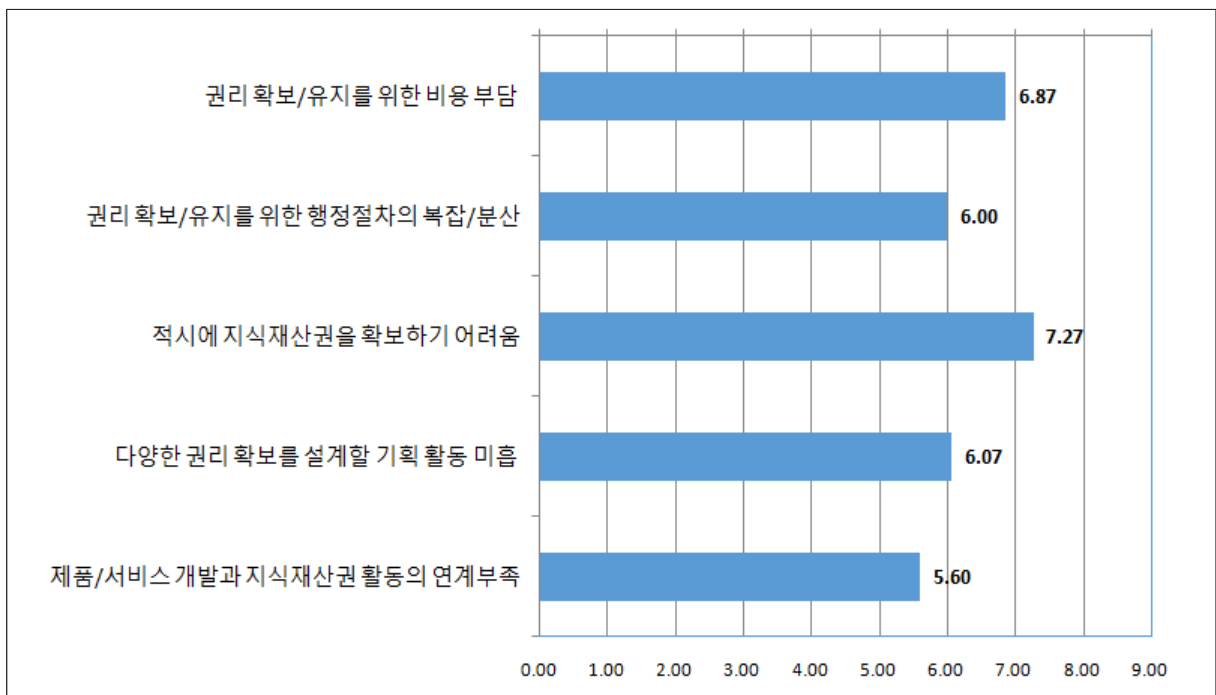
그림 3-61 복합적 권리 활용의 걸림들 : 전기전자 분야



	전기전자 분야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7.40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행정절차의 복잡/분산	6.05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6.95
다양한 권리 확보를 설계할 기획 활동 미흡	5.80
제품/서비스 개발과 지식재산권 활동의 연계부족	5.85

정보서비스 분야 기업들은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다양한 권리 확보를 설계할 기획 활동 미흡’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3-6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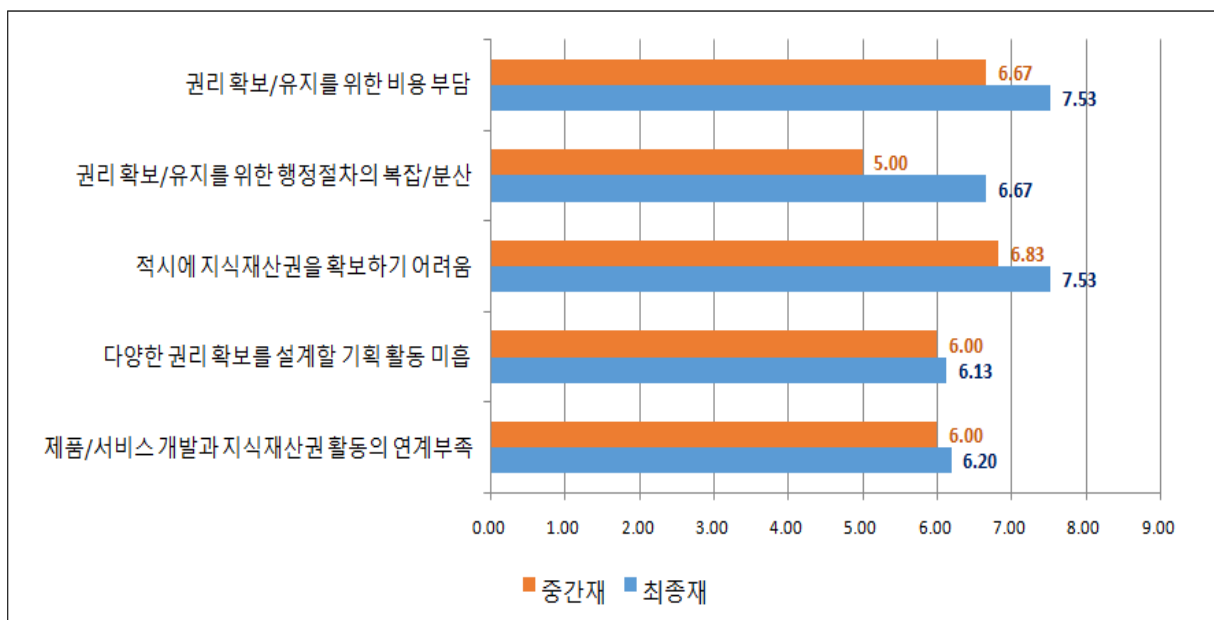
그림 3-62 복합적 권리 활용의 걸림돌 : 정보서비스 분야



	정보서비스 분야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6.87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행정절차의 복잡/분산	6.00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7.27
다양한 권리 확보를 설계할 기획 활동 미흡	6.07
제품/서비스 개발과 지식재산권 활동의 연계부족	5.60

업종별-밸류체인별로 구분하여 주요 걸림돌을 살펴보면, 화학·바이오분야 중간재 제품(또는 서비스)에 복합적 활용 전략을 사용한 기업은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다양한 권리확보를 설계할 기획 활동 미흡’과 ‘제품/서비스 개발과 IP활동 연계 부족’ 순으로, 최종소비재 제품(또는 서비스)에 복합적 활용 전략을 사용한 기업은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과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행정절차의 복잡/분산’ 순으로 어려움을 꼽았다(그림 3-6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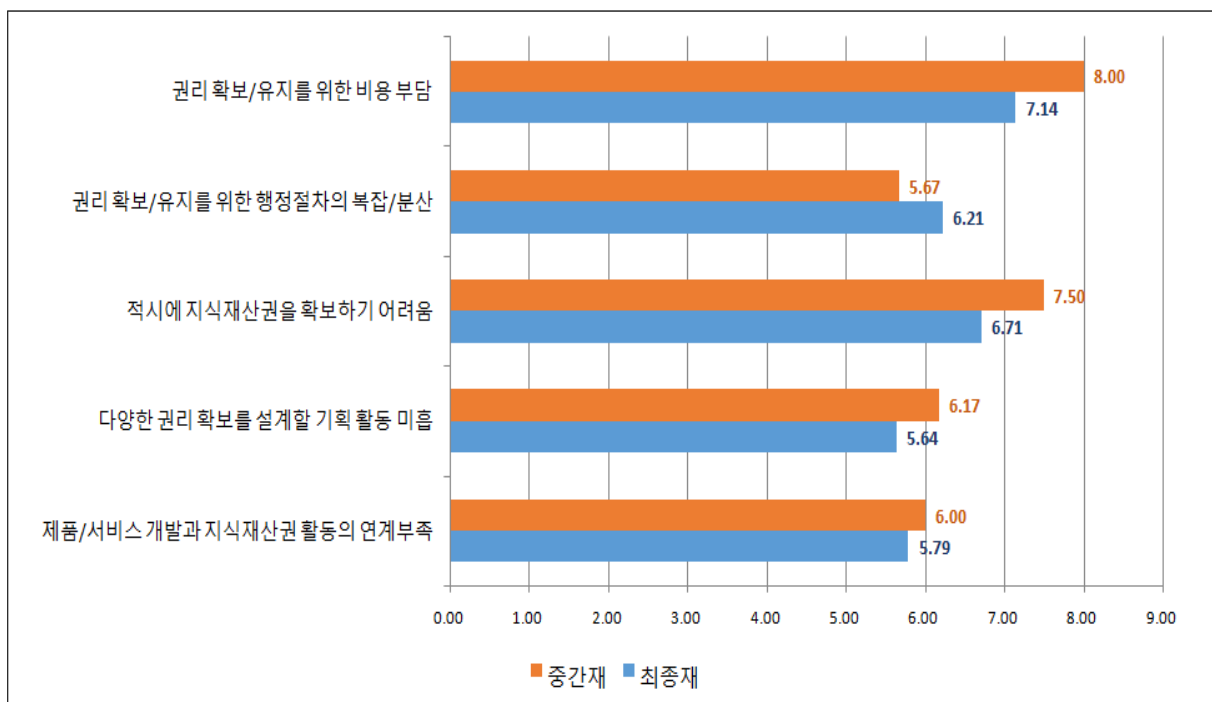
그림 3-63 복합적 권리 활용의 걸림돌 : 화학·바이오 분야-밸류체인별



화학·바이오 분야	중간재	최종재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6.67	7.53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행정절차의 복잡/분산	5.00	6.67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6.83	7.53
다양한 권리 확보를 설계할 기획 활동 미흡	6.00	6.13
제품/서비스 개발과 지식재산권 활동의 연계부족	6.00	6.20

전기전자 분야 중간재 제품(또는 서비스)에 복합적 활용 전략을 사용한 기업은 주요 걸림돌을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다양한 권리확보를 설계할 기획 활동 미흡’ 순으로, 최종소비재 제품(또는 서비스)에 복합적 활용 전략을 사용한 기업은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과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행정절차의 복잡/분산’ 순으로 평가하였다(그림 3-6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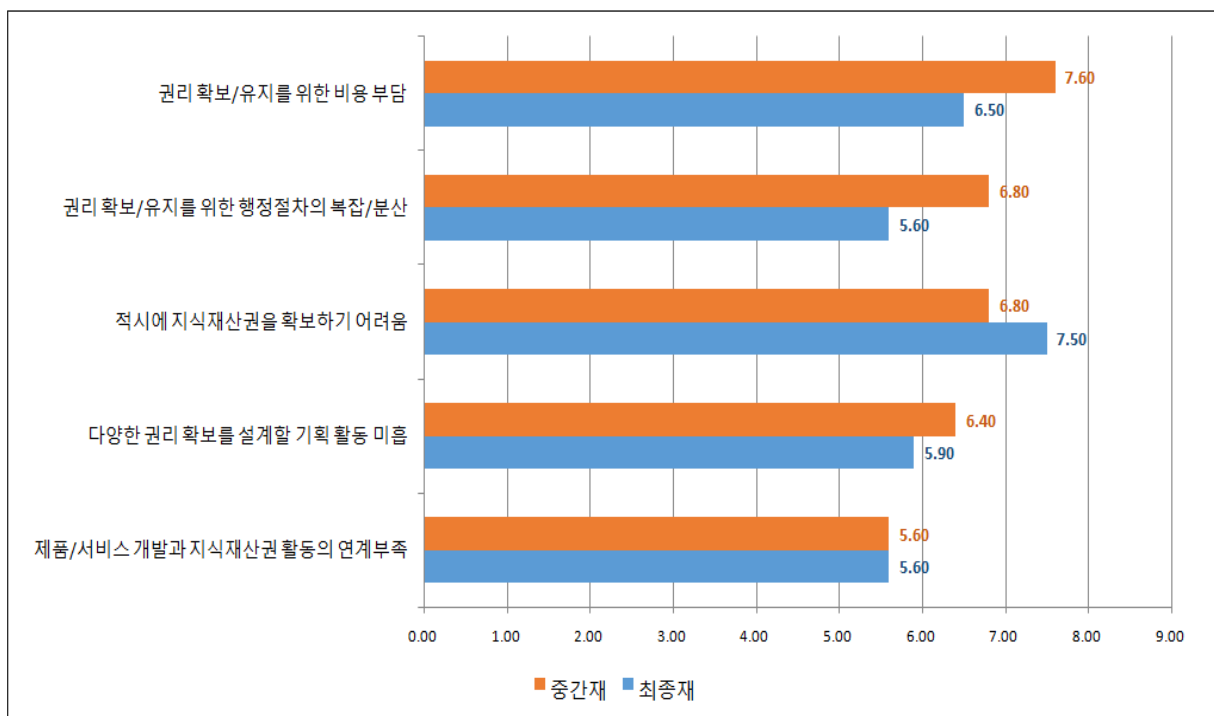
그림 3-64 복합적 권리 활용의 걸림돌 : 전기전자 분야-밸류체인별



전기전자 분야	중간재	최종재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8.00	7.14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행정절차의 복잡/분산	5.67	6.21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7.50	6.71
다양한 권리 확보를 설계할 기획 활동 미흡	6.17	5.64
제품/서비스 개발과 지식재산권 활동의 연계부족	6.00	5.79

정보서비스 분야 중간재 제품(또는 서비스)에 복합적 활용 전략을 사용한 기업은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행정절차의 복잡/분산’과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순으로, 최종소비재 제품(또는 서비스)에 복합적 활용 전략을 사용한 기업은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다양한 권리 확보를 설계할 기획 활동 미흡’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3-65 참조).

그림 3-65 복합적 권리 활용의 걸림돌 : 정보서비스 분야-밸류체인별



정보서비스 분야	중간재	최종재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7.60	6.50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행정절차의 복잡/분산	6.80	5.60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6.80	7.50
다양한 권리 확보를 설계할 기획 활동 미흡	6.40	5.90
제품/서비스 개발과 지식재산권 활동의 연계부족	5.60	5.60

혁신경제

기업경영

지식재산 경영과 기업 성과 : 기업의 복합적 지식재산권 활용 사례 연구

## 제 4 장

### 결론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과제



# 제 1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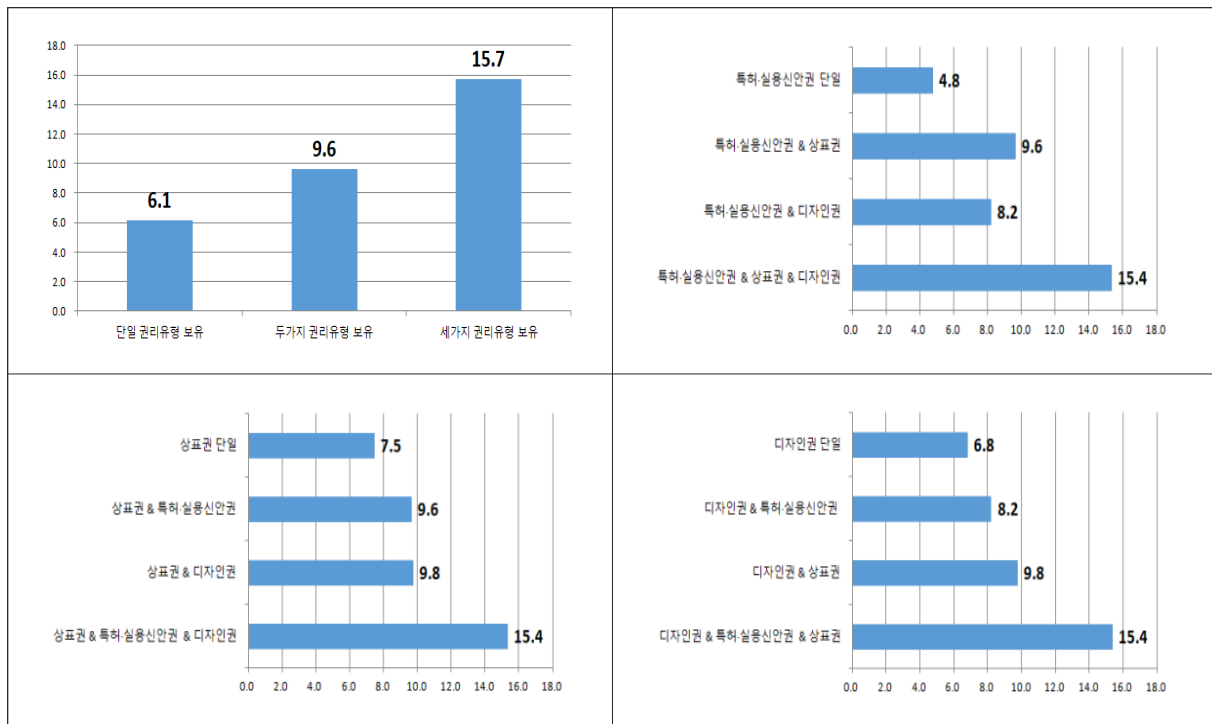
## 주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업 단위에서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보유 현황과 그 효과를 기업의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살펴보는 한편, 제품 또는 서비스 단위에서의 복합적 활용 사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기업 단위에서 지식재산권, 특히 산업재산권의 복합적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단일 권리유형을 보유한 경우 6.1%, 두 가지 권리유형을 보유한 경우 9.6%, 세 가지 권리유형을 보유한 경우 15.7% 기업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 권리의 복합적 보유에 따른 기업 성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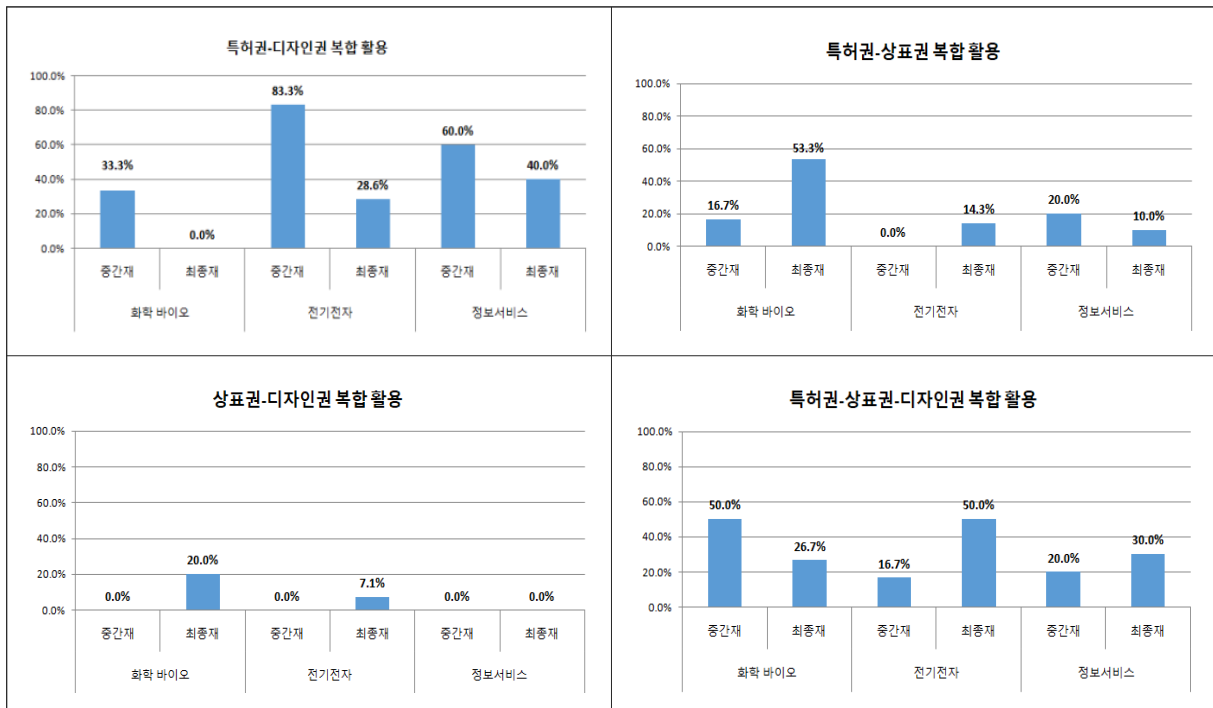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단일 보유한 경우와 그 외의 권리를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상표권을 단위 보유한 경우와 그 외의 권리를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디자인권을 단일 보유한 경우와 그 외의 권리를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변하는지 비교해 보면, 각 권리를 단일 보유한 경우에 비해 다른 권리와 함께 보유한 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권리 보유별 기업 성과를 살펴보면, 특허·실용신안권만 단일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4.8% 높게 나타난 반면, 특허·실용신안권과 함께 상표권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9.6%, 특허·실용신안권과 함께 디자인권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8.2%, 특허·실용신안권과 함께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15.4% 높게 파악되었다. 상표권도 마찬가지로 단일 보유한 경우에는 기업 성과가 7.5% 높게 나타난 반면, 상표권과 함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9.6%, 상표권과 함께 디자인권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9.8%, 상표권과 함께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경우 기업 성과가 15.4% 높게 나타났다.

제품 또는 서비스 단위에서 산업재산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둔 기업들의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일부 기업 사례를 정리하였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56건의 복합적 활용 사례를 수집하였다.

그림 4-2 업종별 밸류체인별 복합적 권리 활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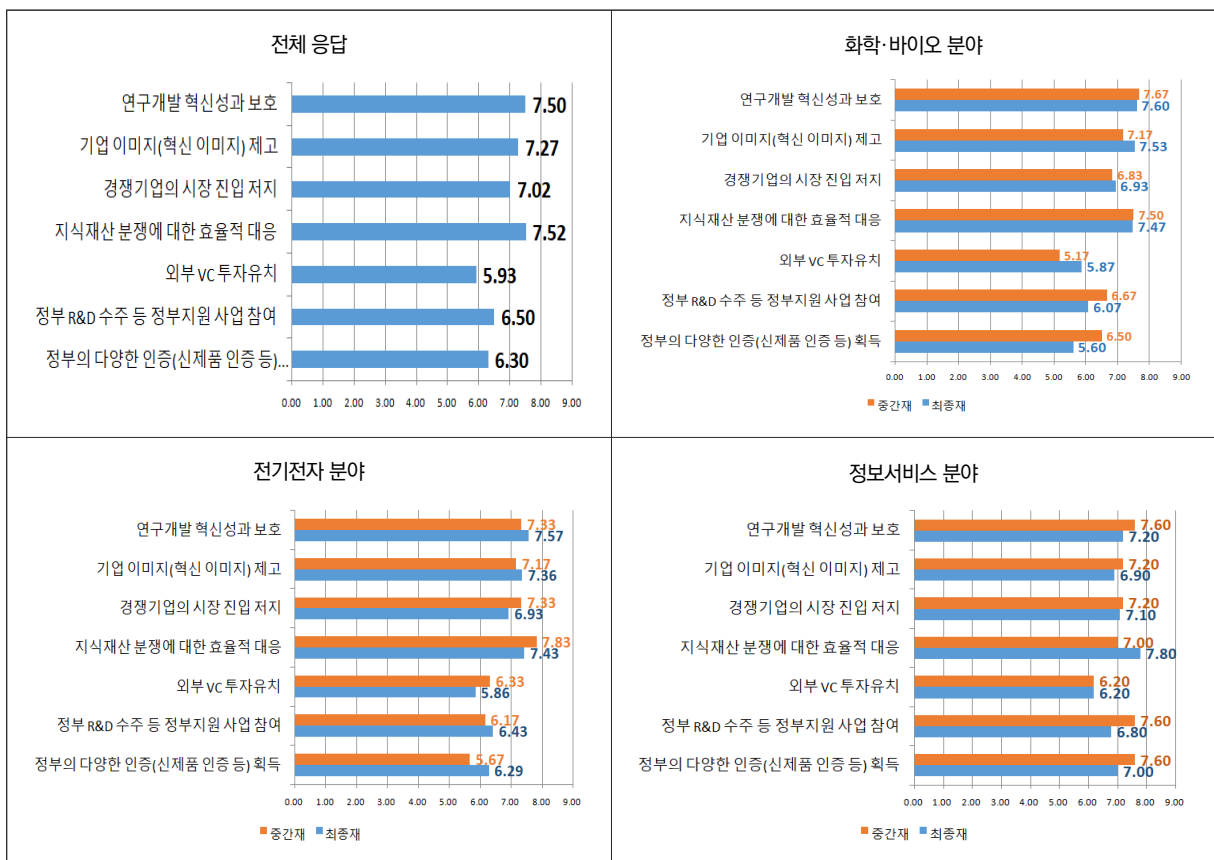
(단위: %)



수집된 사례를 주요 업종, 밸류체인 상 위치에 따라 결합 전략의 특징을 도출해보면, 특허권과 상표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화학·바이오 분야의 최종소비재 제품·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특허권과 상표권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은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 상표권은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두 권리가 기술자산, 시장자산으로써 기능하며 상호 보완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Jennewein et al., 2010; Llerena and Millot, 2020; Parchomovsky and Siegelman, 2002; Somaya and Graham,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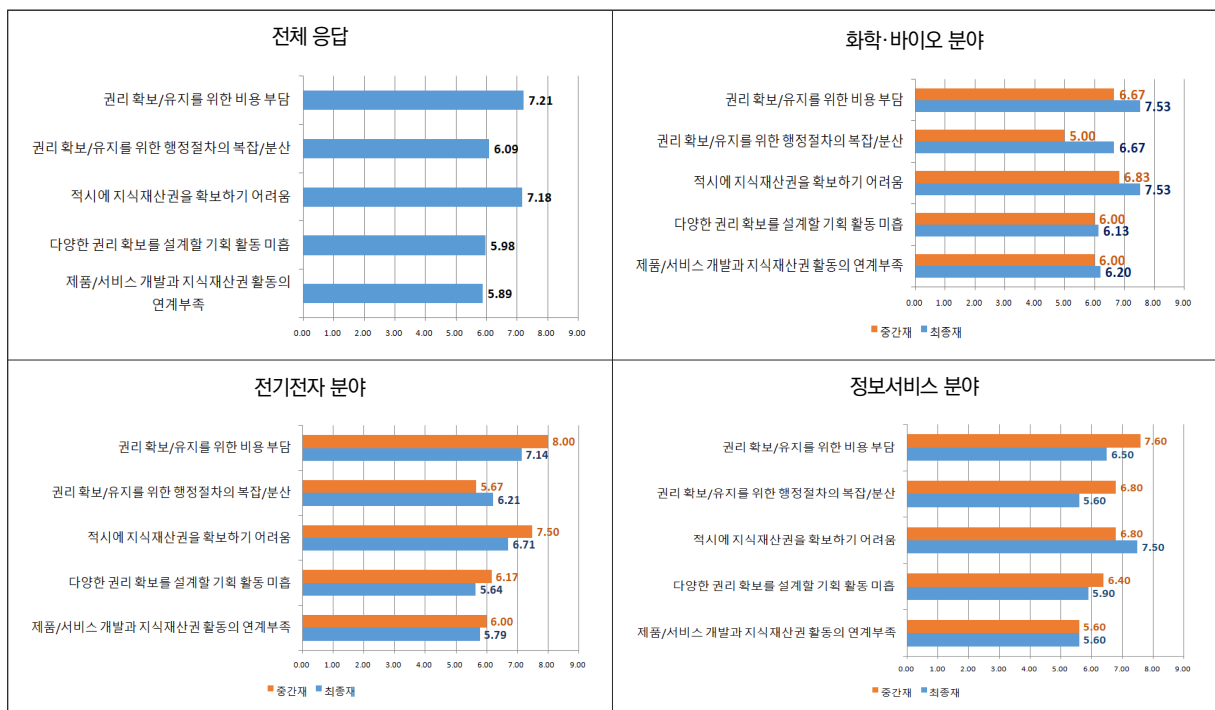
한편,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전기전자 분야의 중간재 제품·서비스, 정보서비스 분야의 중간재 제품·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기업들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다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분쟁에 대응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조합이 혁신 성과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3 업종별 밸류체인별 복합적 권리 활용 효과 평가(9점 척도)



지식재산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얻는 주요 효과에 대해 기업들은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혁신성과 보호’, ‘기업 이미지 제고’ 순으로 응답하였다. 화학·바이오 분야와 전기전자 분야의 중간재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은 최종소비재 제품·서비스 기업에 비해 ‘IP분쟁 대응’ 효과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타 기업과의 관계에서 지식재산권의 복합적 활용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학·바이오 분야와 전기전자 분야의 중간재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은 ‘기업 이미지’ 효과를 높게 평가한 반면, 정보서비스 분야의 중간재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들은 특징적으로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정부 인증 획득’의 효과를 높게 평가했는데, 정보서비스 분야의 밸류체인 내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시그널링 기능이 기업과 정부 간 관계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반면,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 업종별 밸류체인별 복합적 권리 활용 걸림돌(9점 척도)



기업들은 ‘권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권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행정절차의 복잡/분산’을 지식재산권 복합적 활용의 주요 걸림돌로 꼽았다.

Llerena과 Millot(2020)은 권리 확보의 비용이 ‘0’이라면 권리의 결합적 사용의 상호보완성은 항상 유지될 것이나, 비용이 수반되는 상황에서는 비용과 편익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Llerena and Millot, 2020). 특허권, 상표권 대한 수수료는 관련 출원 수에 영향을 미치며, 지식재산 출원을 위해 외부

기관(지식재산 서비스업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Herz and Mejer, 2016; Llerena and Millot, 2020; Rassenfosse, 2020).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유지에 비용이 드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적정 보호 수준을 선택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른 유용성을 벗어나는 과도한 수준의 권리 확보는 과잉보호에 해당하며, 과잉보호 활동이 장려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업이 재정적 부족으로 혁신의 성과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적시 지식재산권 확보 어려움’을 복합적 권리 활용의 주요 걸림돌로 응답하였는데, 복합적 권리 확보 활동은 ‘일괄심사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붙임 2 참조). 특허청은 ‘일괄심사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8조에서 각 권리의 착수예정일이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 각각의 심사순위에 따라 예정되는 착수일보다 일정 기간 이상 빠른 경우(특허 및 실용신안출원 3개월,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1개월) 일괄심사 담당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고시 제8조 제1항, 제2항),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거나, 상표등록출원 중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sup>24)</sup>’에 해당하지 않는 출원은 일괄심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시 제8조 제3항).

참고로 ‘일괄심사’ 자체가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대한 고시』 제4조 제2호 자목(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sup>25)</sup>,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대한 고시』 제4조 제1호(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 타목(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등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24)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호.

25)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9조에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관한 특례를 두고 일괄심사 신청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 자목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별표에 따른 제4조 제1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신청 이유	증빙 서류
제4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실시 중인 출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실시품의 실물사진,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2.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3. 기타 실시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 제1호 타목에 따른 출원인이 실시 준비 중인 출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시제품 실물사진, 견본,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등 2.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3.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4.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5. 기타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권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행정절차의 복잡/분산’도 주요 어려움으로 평가되었는데, ‘일괄심사제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행정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화학·바이오 분야 및 전기전자 분야의 중간재 관련 기업과 정보서비스 분야의 최종소비재 관련 기업에서 ‘다양한 권리 확보를 설계할 기획 활동 미흡’이 주요 어려움으로 파악되었다. Guo-Fitoussi 등(2019)의 연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과 혁신 전략 간에 보완 관계가 존재하며, 기업의 생산성 등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uo-Fitoussi et al., 2019). 그러나,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기관 내에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전략 기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R&D) 전략과 복합적 지식재산권 활용 전략을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획 활동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 2 절

###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본 연구는 기업 단위의 복합적 산업재산권 보유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다양한 유형의 권리를 결합하여 사용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기업 대상 조사를 통해 제품·서비스 단위에서의 지식재산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56건의 사례를 확보하고, 기업의 업종과 해당 제품·서비스의 밸류체인 상 위치에 따라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유형화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수집된 사례가 많지 않아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사례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사례 축적과 유형화를 통해 권리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함으로써, 기업이 실무적으로 지식재산 전략에 적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조사 시 산업재산권 외에 영업비밀, 저작권 등의 복합적 활용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조사의 대상이 화학·바이오 분야, 전기전자 분야, 정보서비스 분야의 산업재산권 보유 기업으로 한정되어 그 외의 권리활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로 작용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권리유형의 활용 전략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복합적 활용에서의 걸림돌’은 산업재산권 활용 기업의 응답 결과인 관계로 산업재산권 제도에 대한 검토 사항으로 해석하였으나, 확대된 조사를 통한 결과는 지식재산권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검토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경남, “기업 지식재산권 보유의 효과분석”, 「한국혁신학회지」, 14(4), 2019.
- 강경남·고유흠·이성훈,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과 성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 강경남·김혜정·김아름, 「지식재산 경영과 기업 성과: 복합적 권리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 김관식·김선혜·유성무·배성인,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조화를 통한 창조적 소프트웨어 기업 보호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 김원오, “디자인 보호법제 간 경합과 경합 처리를 둘러싼 제 문제”, 「디자인과 법」, 채움북스, 2017.
- 김윤명·김현숙,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이슈와 개선방안」,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
-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 이해」(제3판). 동방문화사, 2019.
-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지적재산법」(제4정판), 세창출판사, 2015.
- 신지연·양대승·이철남·정신용, 「신지식재산권의 동향 조사 및 효율적 정책 대응 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 윤선희, 「지식재산권법」(제16정판). 세창출판사, 2015.
- 윤선희, 「특허법」(제6판), 법문사, 2019.
-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9.
- 전정화·허인·최재식·이명희·김아름·정수연,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작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제4판), 홍문사, 2019.
- 조영선, 「특허법 2.0」(제6판), 박영사, 2018.
- 통계청 (2016) 기업활동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 Aaker, D. (2007) Innovation: Brand it or lose it.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50(1), 8-24.
- Arora, A. (1997) Patents, licensing and market structure in the chemical industry', Research Policy, 26(4-5): 391-403.

- Arundel, A., van de Paal, G. and Soete, L. (1995) Innovation strategies of Europe's largest industrial firms. Results of the PACE survey for information sources, public research, protection of innovations and government programmes. Maastricht: MERIT.
- Athreye, S., and Fassio, C. (2019) Why Do Innovators Not Apply for Trademarks? the Role of Information Asymmetries and Collaborative Innovation. Papers in Innovation Studies No. 2019/2. Lund University.
- Blind, K., Edler, J., Frietsch, R. and Schmoch, U. (2006) Motives to patent: Empirical evidence from Germany. *Research Policy*, 35, 5, 655-672.
- Bloom, N., and Reenen, J. V. (2002) Patents, Real Options and Firm Performance, *Economic Journal*, 112, 97-114.
- Cohen, W.M., Nelson, R.R. and Walsh, J.P. (2000) Protecting their Intellectual Assets: Appropriability Conditions and Why U.S. Manufacturing Firms Patent (or not). Cambridge, MA: NBER Working Paper Series.
- de Rassenfosse, G. How SMEs exploi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evidence from survey data. *Small Bus Econ* 39, 437-452 (2012) <https://doi.org/10.1007/s11187-010-9313-4>.
- Dernis H., Dosso M., Hervás F., Millot V., Squicciarini M. and Vezzani A. (2015) World Corporate Top R&D Investors: Innovation and IP bundles. A JRC and OECD common report.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Duguet, E. and Kabla, I. (1998) Appropriation strategy and the motivations to use the patent system: An econometric analysis at the firm level in French manufacturing. *Annals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89-327.
- EPO and EUIPO (202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irm performance, EUIPO·EPO.
- EUIPO (2019), High-growth firm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IPO·EPO.
- Farre-Mensa, J., Hegde, D., and Ljungqvist, A. (2017) What is a Patent Worth? Evidence from the U.S. Patent Lottery, NBER Working Paper No. 23268.
- Gattari, P., Ferguson, S.M., Crichton, D., and Helwig, B. (2017) Beyond Hybrid Licenses – Strategies for Post Patent Expiration Payments in the United States, *LES Nouv* 52(1), 31-36.

- Guo-Fitoussi, L., Bounfour, A., Rekik, S. (2019)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lementarity and the firm's economic performance, *Int. J.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9(2) : 136-165.
- Guzman, J. and Stern, S. (2015) Where Is Silicon Valley? *Science* 347(6222), 606-609.
- Hagedoorn, J., and Cloudt, M. (2003) Measuring innovative performance: is there an advantage in using multiple indicators?, *Research Policy* 32(8), 1365-1379.
- Hall, B., Helmers, C., Rogers, M., and Sena, V. (2012) The importance (or not) of patents to UK firms, Working paper.
- Haeussler, C., Harhoff, D. and Muller, E. (2012) To Be Financed or Not: The Role of Patents for Venture Capital Financing. Working Paper. Mannheim: ZEW-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 Helmers, C. and Schautschick P. (2013)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undles by Firms in 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Herz, B., and Mejer, M. (2016) On the Fee Elasticity of the Demand for Trademarks in Europe. *Oxford Economic Papers* 68(4): 1039-1061.
- Hoenen, S., Kolympiris, C., Schoenmakers, W. and Kalaitzandonakes, N. (2014) The Diminishing Signaling Value of Patents between Early Rounds of Venture Capital Financing. *Research Policy* 43(6), 956-989.
- Holgersson, M. (2011)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and Innovation: Causes and Consequences for Firms and Nations. Licentiate Thesis.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 Hsu, D. H., and Ziedonis, R. H. (2008) Patents as Quality Signals for Entrepreneurial Ventures.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2008 (1), 1-6.
- Jennewein, K, Durand, Th. and Gerybadze, A. (2010), When Brands Complement Patents in securing the returns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 : The case of Bayer Aspirin, *Management International* 14(3), 73-85
- Llerena P. and Millot V. (2020) Are two better than one? Modelling the complementarity between patents and trademarks across industries, *Industry and Innovation*, 2020, 27(1-2), 52-79.

- Millot, V. (2009) Trademarks as an Indicator of Product and Marketing Innovation.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 No. 2009/6. OECD publishing.
- Munari F. (2013) Review of Literature on the Use and Impact of IPRs at the Firm Level: Patents, Trademarks and Designs, EU observatory.
- Pisano, G. (2006) Profiting from Innovation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Revolution. *Research Policy* 35(8): 1122-1130.
- Rassenfosse, G. (2020) On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Trademarks. *Industry and Innovation* 27(1-2): 11-24.
- Rogers, M., and Rogers, M. (1998)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innovation (Vol. 98). Parkville, VIC: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 Romer, P. M. (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5), 1002-1037.
- Somaya, D. and Graham, S. (2006) Vermeers and Rembrandts in the same Attic: Complementarity between Copyrights and Trade marks Leveraging Strategies in Softwar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TIGER Working Paper.
- Somaya, D. and McDaniel, C. A. (2012) Tribunal specialization and institutional targeting in patent enforcement. *Organization Science* 23(3), 869-887.
- Statman, M., and Tyebjee, T. T. (1981) Trademarks, patents, and innovation in the ethical drug industry. *Journal of Marketing* 45(3), 71-81.
- Thumm, N. (2004) Motives for patenting biotechnological inventions: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 Switzer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Policy and Management*, 4(3), 275-285.
- 知的財産研究所 (2012), 我が国における産業財産権の出願行動等に起因する経済成長に関する分析調査報告.

[붙임 1] 기업조사 주요 응답 통계표

부표 1 가장 선호하는 권리(1순위)

(단위: %)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저작권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80.4	10.7	3.6	1.8	3.6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66.7	23.8	4.8	4.8	0.0
	전기전자	90.0	5.0	5.0	0.0	0.0
	정보서비스	86.7	0.0	0.0	0.0	13.3
비즈니스 모델	B to C	72.0	16.0	4.0	4.0	4.0
	B to B	86.7	6.7	3.3	0.0	3.3
밸류체인	연구개발	83.3	8.3	0.0	0.0	8.3
	원자재, 중간재	100.0	0.0	0.0	0.0	0.0
	최종소비재	72.7	15.2	6.1	3.0	3.0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2 가장 선호하는 권리(1+2+3순위)

(단위: %)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저작권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98.2	91.1	73.2	25.0	12.5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100.0	95.2	81.0	23.8	0.0
	전기전자	95.0	90.0	90.0	25.0	0.0
	정보서비스	100.0	86.7	40.0	26.7	46.7
비즈니스 모델	B to C	96.0	96.0	80.0	20.0	8.0
	B to B	100.0	86.7	66.7	30.0	16.7
밸류체인	연구개발	100.0	83.3	58.3	41.7	16.7
	원자재, 중간재	100.0	81.8	81.8	27.3	9.1
	최종소비재	97.0	97.0	75.8	18.2	12.1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3 지식재산 보유현황 (중복응답)**

(단위: %)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 비밀	저작권	반도체 배치 설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100.0	60.7	96.4	89.3	25.0	28.6	1.8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100.0	61.9	100.0	85.7	19.0	19.0	4.8
	전기전자	100.0	65.0	95.0	85.0	15.0	15.0	0.0
	정보서비스	100.0	53.3	93.3	100.0	46.7	60.0	0.0
비즈니스 모델	B to C	100.0	64.0	92.0	88.0	20.0	24.0	4.0
	B to B	100.0	60.0	100.0	90.0	30.0	33.3	0.0
밸류체인	연구개발	100.0	58.3	100.0	100.0	41.7	33.3	0.0
	원자재, 중간재	100.0	63.6	100.0	81.8	27.3	18.2	0.0
	최종소비재	100.0	60.6	93.9	87.9	18.2	30.3	3.0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4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1) 권리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직접실시)**

(단위: %)

		전혀 아니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8	9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0.0	0.0	0.0	1.8	0.0	3.6	21.4	26.8	46.4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0.0	0.0	0.0	0.0	0.0	0.0	14.3	28.6	57.1
	전기전자	0.0	0.0	0.0	0.0	0.0	5.0	30.0	20.0	45.0
	정보서비스	0.0	0.0	0.0	6.7	0.0	6.7	20.0	33.3	33.3
비즈니스 모델	B to C	0.0	0.0	0.0	0.0	0.0	0.0	12.0	28.0	60.0
	B to B	0.0	0.0	0.0	3.3	0.0	6.7	30.0	26.7	33.3
밸류체인	연구개발	0.0	0.0	0.0	8.3	0.0	8.3	16.7	16.7	50.0
	원자재, 중간재	0.0	0.0	0.0	0.0	0.0	0.0	36.4	36.4	27.3
	최종소비재	0.0	0.0	0.0	0.0	0.0	3.0	18.2	27.3	51.5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5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2) 권리이전, 라이선싱을 위한 권리확보를 위해**

(단위: %)

		전혀 아니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8	9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1.8	0.0	3.6	5.4	12.5	10.7	16.1	23.2	26.8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0.0	0.0	4.8	4.8	14.3	14.3	9.5	28.6	23.8
	전기전자	5.0	0.0	0.0	5.0	10.0	10.0	20.0	10.0	40.0
	정보서비스	0.0	0.0	6.7	6.7	13.3	6.7	20.0	33.3	13.3
비즈니스 모델	B to C	4.0	0.0	4.0	4.0	8.0	4.0	16.0	28.0	32.0
	B to B	0.0	0.0	3.3	6.7	16.7	16.7	16.7	16.7	23.3
밸류 체인	연구개발	0.0	0.0	0.0	8.3	16.7	16.7	16.7	25.0	16.7
	원자재, 중간재	0.0	0.0	9.1	9.1	9.1	27.3	9.1	18.2	18.2
	최종소비재	3.0	0.0	3.0	3.0	12.1	3.0	18.2	24.2	33.3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6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3) 상대방의 모방/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단위: %)

		전혀 아니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8	9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0.0	0.0	0.0	0.0	5.4	3.6	16.1	28.6	46.4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0.0	0.0	0.0	0.0	4.8	0.0	9.5	42.9	42.9
	전기전자	0.0	0.0	0.0	0.0	5.0	5.0	15.0	20.0	55.0
	정보서비스	0.0	0.0	0.0	0.0	6.7	6.7	26.7	20.0	40.0
비즈니스 모델	B to C	0.0	0.0	0.0	0.0	4.0	0.0	16.0	20.0	60.0
	B to B	0.0	0.0	0.0	0.0	6.7	6.7	16.7	36.7	33.3
밸류 체인	연구개발	0.0	0.0	0.0	0.0	8.3	8.3	8.3	33.3	41.7
	원자재, 중간재	0.0	0.0	0.0	0.0	0.0	9.1	18.2	45.5	27.3
	최종소비재	0.0	0.0	0.0	0.0	6.1	0.0	18.2	21.2	54.5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7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4) 침해소송 피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단위: %)

		전혀 아니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8	9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1.8	0.0	0.0	0.0	10.7	19.6	25.0	23.2	19.6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4.8	0.0	0.0	0.0	14.3	23.8	23.8	28.6	4.8
	전기전자	0.0	0.0	0.0	0.0	0.0	15.0	30.0	20.0	35.0
	정보서비스	0.0	0.0	0.0	0.0	20.0	20.0	20.0	20.0	20.0
비즈니스 모델	B to C	4.0	0.0	0.0	0.0	8.0	8.0	28.0	28.0	24.0
	B to B	0.0	0.0	0.0	0.0	10.0	30.0	23.3	20.0	16.7
밸류 체인	연구개발	0.0	0.0	0.0	0.0	25.0	16.7	16.7	33.3	8.3
	원자재, 중간재	0.0	0.0	0.0	0.0	9.1	45.5	9.1	9.1	27.3
	최종소비재	3.0	0.0	0.0	0.0	6.1	12.1	33.3	24.2	21.2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8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5) VC유치 등 외부 자금조달에 활용하기 위해**

(단위: %)

		전혀 아니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8	9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8.9	7.1	12.5	10.7	25.0	5.4	8.9	7.1	14.3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0.0	14.3	19.0	9.5	23.8	9.5	4.8	4.8	14.3
	전기전자	10.0	0.0	15.0	10.0	30.0	5.0	5.0	0.0	25.0
	정보서비스	20.0	6.7	0.0	13.3	20.0	0.0	20.0	20.0	0.0
비즈니스 모델	B to C	8.0	12.0	24.0	0.0	20.0	8.0	8.0	8.0	12.0
	B to B	6.7	3.3	3.3	20.0	30.0	3.3	10.0	6.7	16.7
밸류 체인	연구개발	16.7	0.0	8.3	16.7	25.0	8.3	16.7	8.3	0.0
	원자재, 중간재	0.0	9.1	9.1	9.1	36.4	0.0	18.2	0.0	18.2
	최종소비재	9.1	9.1	15.2	9.1	21.2	6.1	3.0	9.1	18.2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9**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6)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하기 위해

(단위: %)

		전혀 아니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8	9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1.8	3.6	1.8	1.8	17.9	10.7	26.8	17.9	17.9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0.0	4.8	4.8	0.0	0.0	4.8	42.9	14.3	28.6
	전기전자	0.0	0.0	0.0	0.0	30.0	10.0	25.0	15.0	20.0
	정보서비스	6.7	6.7	0.0	6.7	26.7	20.0	6.7	26.7	0.0
비즈니스 모델	B to C	0.0	4.0	4.0	0.0	24.0	8.0	28.0	16.0	16.0
	B to B	3.3	0.0	0.0	3.3	13.3	13.3	26.7	20.0	20.0
밸류 체인	연구개발	8.3	8.3	0.0	0.0	16.7	25.0	8.3	33.3	0.0
	원자재, 중간재	0.0	0.0	0.0	0.0	18.2	9.1	45.5	0.0	27.3
	최종소비재	0.0	3.0	3.0	3.0	18.2	6.1	27.3	18.2	21.2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10**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7) 정부R&D 수주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

(단위: %)

		전혀 아니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8	9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0.0	5.4	5.4	1.8	23.2	8.9	28.6	12.5	14.3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0.0	9.5	14.3	0.0	28.6	9.5	14.3	14.3	9.5
	전기전자	0.0	0.0	0.0	5.0	20.0	5.0	50.0	0.0	20.0
	정보서비스	0.0	6.7	0.0	0.0	20.0	13.3	20.0	26.7	13.3
비즈니스 모델	B to C	0.0	12.0	12.0	0.0	28.0	4.0	20.0	12.0	12.0
	B to B	0.0	0.0	0.0	3.3	20.0	13.3	33.3	13.3	16.7
밸류 체인	연구개발	0.0	0.0	0.0	8.3	8.3	25.0	25.0	16.7	16.7
	원자재, 중간재	0.0	0.0	9.1	0.0	18.2	18.2	27.3	0.0	27.3
	최종소비재	0.0	9.1	6.1	0.0	30.3	0.0	30.3	15.2	9.1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11 지식재산 활용 주된 이유 - 8) 정부의 다양한 인증 획득을 위해**

(단위: %)

		전혀 아니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8	9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1.8	3.6	12.5	1.8	19.6	10.7	21.4	17.9	10.7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0.0	4.8	19.0	0.0	23.8	14.3	9.5	19.0	9.5
	전기전자	0.0	5.0	10.0	0.0	20.0	5.0	40.0	5.0	15.0
	정보서비스	6.7	0.0	6.7	6.7	13.3	13.3	13.3	33.3	6.7
비즈니스 모델	B to C	4.0	4.0	20.0	0.0	20.0	8.0	16.0	16.0	12.0
	B to B	0.0	3.3	6.7	3.3	20.0	13.3	26.7	16.7	10.0
밸류 체인	연구개발	0.0	8.3	8.3	0.0	0.0	25.0	16.7	33.3	8.3
	원자재, 중간재	0.0	0.0	9.1	0.0	36.4	18.2	18.2	0.0	18.2
	최종소비재	3.0	3.0	15.2	3.0	21.2	3.0	24.2	18.2	9.1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12 복합적 권리 활용 - 1) 특허·실용신안권 & 상표권**

(단위: %)

		활용 안함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0	1	2	3	4	5	6	7	8	9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10.7	0.0	0.0	5.4	0.0	5.4	10.7	21.4	16.1	30.4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4.8	0.0	0.0	4.8	0.0	0.0	9.5	28.6	19.0	33.3
	전기전자	15.0	0.0	0.0	10.0	0.0	15.0	10.0	20.0	5.0	25.0
	정보서비스	13.3	0.0	0.0	0.0	0.0	0.0	13.3	13.3	26.7	33.3
비즈니스 모델	B to C	4.0	0.0	0.0	0.0	0.0	4.0	8.0	28.0	16.0	40.0
	B to B	16.7	0.0	0.0	10.0	0.0	6.7	13.3	16.7	16.7	20.0
밸류 체인	연구개발	8.3	0.0	0.0	8.3	0.0	0.0	8.3	25.0	16.7	33.3
	원자재, 중간재	9.1	0.0	0.0	9.1	0.0	18.2	18.2	27.3	0.0	18.2
	최종소비재	12.1	0.0	0.0	3.0	0.0	3.0	9.1	18.2	21.2	33.3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13 복합적 권리 활용 - 2) 특허·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단위: %)

		활용 안함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0	1	2	3	4	5	6	7	8	9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5.4	0.0	0.0	3.6	5.4	5.4	16.1	19.6	17.9	26.8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4.8	0.0	0.0	0.0	4.8	9.5	9.5	19.0	23.8	28.6
	전기전자	0.0	0.0	0.0	5.0	5.0	5.0	10.0	25.0	10.0	40.0
	정보서비스	13.3	0.0	0.0	6.7	6.7	0.0	33.3	13.3	20.0	6.7
비즈니스 모델	B to C	0.0	0.0	0.0	4.0	4.0	8.0	4.0	28.0	24.0	28.0
	B to B	10.0	0.0	0.0	3.3	6.7	3.3	26.7	13.3	13.3	23.3
밸류 체인	연구개발	8.3	0.0	0.0	0.0	8.3	0.0	25.0	16.7	25.0	16.7
	원자재, 중간재	0.0	0.0	0.0	0.0	9.1	9.1	18.2	27.3	9.1	27.3
	최종소비재	6.1	0.0	0.0	6.1	3.0	6.1	12.1	18.2	18.2	30.3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14 복합적 권리 활용 - 3) 상표권 & 디자인권

(단위: %)

		활용 안함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0	1	2	3	4	5	6	7	8	9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8.9	1.8	5.4	5.4	5.4	12.5	19.6	8.9	12.5	19.6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0.0	0.0	4.8	4.8	4.8	9.5	14.3	9.5	19.0	33.3
	전기전자	10.0	5.0	5.0	5.0	0.0	20.0	20.0	15.0	0.0	20.0
	정보서비스	20.0	0.0	6.7	6.7	13.3	6.7	26.7	0.0	20.0	0.0
비즈니스 모델	B to C	0.0	0.0	4.0	0.0	4.0	12.0	16.0	8.0	24.0	32.0
	B to B	16.7	3.3	6.7	10.0	6.7	13.3	23.3	10.0	0.0	10.0
밸류 체인	연구개발	16.7	8.3	0.0	8.3	0.0	8.3	33.3	0.0	16.7	8.3
	원자재, 중간재	18.2	0.0	0.0	9.1	9.1	27.3	18.2	9.1	0.0	9.1
	최종소비재	3.0	0.0	9.1	3.0	6.1	9.1	15.2	12.1	15.2	27.3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15**    **복합적 권리 활용 - 4) 특허·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단위: %)

		활용 안함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0	1	2	3	4	5	6	7	8	9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10.7	1.8	3.6	1.8	5.4	12.5	12.5	23.2	10.7	17.9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4.8	0.0	0.0	0.0	9.5	4.8	19.0	28.6	9.5	23.8
	전기전자	10.0	0.0	5.0	0.0	0.0	20.0	5.0	25.0	10.0	25.0
	정보서비스	20.0	6.7	6.7	6.7	6.7	13.3	13.3	13.3	13.3	0.0
비즈니스 모델	B to C	0.0	0.0	4.0	4.0	0.0	12.0	16.0	20.0	12.0	32.0
	B to B	20.0	0.0	3.3	0.0	10.0	13.3	10.0	26.7	10.0	6.7
밸류 체인	연구개발	25.0	8.3	0.0	0.0	0.0	16.7	8.3	16.7	25.0	0.0
	원자재, 중간재	9.1	0.0	0.0	0.0	18.2	18.2	18.2	36.4	0.0	0.0
	최종소비재	6.1	0.0	6.1	3.0	3.0	9.1	12.1	21.2	9.1	30.3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16**    **주된 걸림돌 - 1)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단위: %)

		전혀 어려움 없음		←		보통		→		주된 어려움
		1	2	3	4	5	6	7	8	9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1.8	1.8	3.6	1.8	1.8	8.9	28.6	30.4	21.4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4.8	4.8	0.0	0.0	0.0	4.8	23.8	38.1	23.8
	전기전자	0.0	0.0	5.0	0.0	5.0	5.0	35.0	25.0	25.0
	정보서비스	0.0	0.0	6.7	6.7	0.0	20.0	26.7	26.7	13.3
비즈니스 모델	B to C	0.0	4.0	4.0	0.0	4.0	12.0	16.0	36.0	24.0
	B to B	3.3	0.0	3.3	3.3	0.0	6.7	40.0	26.7	16.7
최종재 여부	최종재 아님	17	0.0	5.9	0.0	0.0	0.0	11.8	29.4	23.5
	최종재 해당	39	2.6	0.0	5.1	2.6	2.6	7.7	28.2	33.3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17** 주된 걸림돌 - 2) 권리 확보/유지를 위한 행정절차의 복잡/분산

(단위: %)

		전혀 어려움 없음		←		보통		→		주된 어려움
		1	2	3	4	5	6	7	8	9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3.6	0.0	7.1	1.8	21.4	17.9	28.6	14.3	5.4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9.5	0.0	0.0	0.0	9.5	28.6	28.6	23.8	0.0
	전기전자	0.0	0.0	10.0	5.0	30.0	5.0	30.0	15.0	5.0
	정보서비스	0.0	0.0	13.3	0.0	26.7	20.0	26.7	0.0	13.3
비즈니스 모델	B to C	4.0	0.0	8.0	0.0	28.0	12.0	28.0	20.0	0.0
	B to B	3.3	0.0	6.7	3.3	16.7	23.3	30.0	10.0	6.7
최종재 여부	최종재 아님	17	5.9	0.0	5.9	5.9	23.5	35.3	5.9	0.0
	최종재 해당	39	2.6	0.0	7.7	0.0	20.5	10.3	38.5	20.5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18** 주된 걸림돌 - 3)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단위: %)

		전혀 어려움 없음		←		보통		→		주된 어려움
		1	2	3	4	5	6	7	8	9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0.0	0.0	1.8	1.8	5.4	17.9	28.6	30.4	14.3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0.0	0.0	0.0	0.0	4.8	23.8	23.8	28.6	19.0
	전기전자	0.0	0.0	5.0	5.0	5.0	15.0	25.0	35.0	10.0
	정보서비스	0.0	0.0	0.0	0.0	6.7	13.3	40.0	26.7	13.3
비즈니스 모델	B to C	0.0	0.0	4.0	0.0	12.0	16.0	20.0	32.0	16.0
	B to B	0.0	0.0	0.0	3.3	0.0	20.0	36.7	30.0	10.0
최종재 여부	최종재 아님	17	0.0	0.0	0.0	5.9	5.9	23.5	23.5	23.5
	최종재 해당	39	0.0	0.0	2.6	0.0	5.1	15.4	30.8	33.3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19** 주된 걸림돌 - 4) 다양한 권리 확보를 설계할 기획 활동 미흡

(단위: %)

		전혀 어려움 없음		←		보통		→		주된 어려움
		1	2	3	4	5	6	7	8	9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1.8	5.4	3.6	3.6	21.4	19.6	28.6	8.9	7.1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4.8	4.8	4.8	0.0	14.3	23.8	28.6	4.8	14.3
	전기전자	0.0	5.0	5.0	5.0	30.0	20.0	20.0	10.0	5.0
	정보서비스	0.0	6.7	0.0	6.7	20.0	13.3	40.0	13.3	0.0
비즈니스 모델	B to C	0.0	8.0	4.0	0.0	32.0	28.0	8.0	8.0	12.0
	B to B	3.3	3.3	3.3	6.7	13.3	13.3	43.3	10.0	3.3
	B to G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최종재 여부	최종재 아님	0.0	5.9	0.0	5.9	17.6	17.6	41.2	5.9	5.9
	최종재 해당	2.6	5.1	5.1	2.6	23.1	20.5	23.1	10.3	7.7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부표 20** 주된 걸림돌 - 5) 제품/서비스 개발과 지식재산권 활동의 연계부족

(단위: %)

		전혀 어려움 없음		←		보통		→		주된 어려움
		1	2	3	4	5	6	7	8	9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1.8	3.6	1.8	7.1	32.1	14.3	21.4	10.7	7.1
주된 업종	화학 바이오	4.8	0.0	0.0	4.8	28.6	19.0	19.0	14.3	9.5
	전기전자	0.0	5.0	5.0	0.0	40.0	15.0	20.0	5.0	10.0
	정보서비스	0.0	6.7	0.0	20.0	26.7	6.7	26.7	13.3	0.0
비즈니스 모델	B to C	0.0	4.0	4.0	8.0	32.0	20.0	8.0	16.0	8.0
	B to B	3.3	3.3	0.0	6.7	33.3	10.0	30.0	6.7	6.7
최종재 여부	최종재 아님	0.0	5.9	0.0	11.8	29.4	11.8	29.4	0.0	11.8
	최종재 해당	2.6	2.6	2.6	5.1	33.3	15.4	17.9	15.4	5.1

\* 응답자 Base : 복합적 활용사례 기업(n=56)

## [붙임 2]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2. 8.] [특허청고시 제2020-3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괄심사”란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원”이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3. “출원인”이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를 말한다.
4. “심사착수”란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최초로 출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일괄심사설명회”란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취지를 심사관에게 설명하는 회의를 말한다.
6.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및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7. “예비심사”란 심사관이 심사착수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일괄심사의 신청인)** 일괄심사는 일괄심사 신청대상출원의 출원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괄심사 신청 대상출원의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원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일괄심사의 신청대상)**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서 심사착수 전인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디자인등록 출원을 말한다. 이 경우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된 출원에 한정한다.

1.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가.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 나.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 「중소

- 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 2. 동일한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제5조(일괄심사의 신청)** ① 일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일괄심사신청서를 작성하고 별표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출원이 제4조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일괄심사설명회에서 일괄심사 담당심사관(이하 '담당심사관'이라 한다)이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일괄심사 신청일 이후 7일부터 14일까지 중 어느 한 날을 일괄심사설명회 개최 희망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후의 어느 한 날을 희망하는 심사착수일(이하 '착수희망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하며, 착수희망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의 어느 한 날을 신청인이 희망하는 심사종결일(이하 '종결희망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 후에는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의 일부 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④ 신청 후에는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의 일부 출원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⑤ 신청인은 일괄심사설명회에서 예비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일괄심사 방식심사)** ① 특허청 일괄심사 담당자(이하 '일괄심사 담당자'라 한다)는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이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신청인의 일괄심사 신청이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일괄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의 일괄심사 신청이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괄심사 신청일로부터 6일이 되는 날까지 일괄심사 신청서를 보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기간에 일괄심사 신청서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심사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 또는 해당출원은 일괄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괄심사 담당자는 일괄심사설명회 개최 희망일을 기초로 신청인 및 담당심사관과 협의하여 일괄심사설명회 개최일을 확정된 후 그 취지를 신청인 및 담당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일괄심사설명회)** ① 신청인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개최일이 확정된 일괄심사설명회에 참석하여 담당심사관에게 일괄심사 신청출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출원이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출원이라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일괄심사 담당자와 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설명회에서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이 제4조에 따른 신

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협의하여 일괄심사 여부 및 일괄심사 대상출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일괄심사 담당자, 담당심사관 및 신청인은 착수희망일 및 종결희망일을 기초로 실제 착수가능한 날(이하 '착수예정일'이라 한다) 및 실제 착수종결 가능한 날(이하 '종결예정일'이라 한다)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일괄심사 담당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일괄심사설명회는 담당심사관과 신청인의 협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우선심사의 신청 요청)** ① 일괄심사 담당자는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착수예정일이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 각각의 심사순위에 따라 예정되는 착수일보다 3개월 이상 빠른 경우에 신청인에게 해당 출원에 대하여 일괄심사 담당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우선심사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일괄심사 담당자는 상표등록·디자인등록출원의 착수예정일이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 각각의 심사순위에 따라 예정되는 착수일보다 1개월 이상 빠른 경우에 신청인에게 해당 출원에 대하여 일괄심사 담당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우선심사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우선심사가 필요한 출원이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로서 제4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출원은 일괄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제9조(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일괄심사 신청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제2호자목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별표에 따른 제4조제1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은 담당심사관이 그 서류를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일괄심사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제4조제1호의 증명서류 제출은 담당심사관이 그 서류를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일괄심사 처리)** ① 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를 하기로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착수예정일에 맞추어 심사 착수하여야 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 출원의 중간서류를 종결예정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선행기술을 추가로 검색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여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10호,2014.3.31>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35호,2014.12.31.>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9호,2017.3.31.>

이 고시는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33호,2020.12.8.>

이 고시는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괄심사신청서**

일괄심사신청서

**【신청인】**

**【성명(명칭)】**

**【연락처】**

**【주소】**

**【일괄심사 대상 출원번호】**

**【일괄심사 신청이유】**

**【증명서류】**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

**【일괄심사 착수희망일】**

**【일괄심사 종결희망일】**

**【일괄심사설명】**

**【예비심사신청여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 기재요령

1. 【신청인】란은 일괄심사 해당건의 출원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일괄심사 신청 출원의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원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일괄심사 대상 출원번호】란은 일괄심사를 받고자 하는 특허, 실용신안등록,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를 모두 기재합니다.
3. 【일괄심사 신청이유】는 출원인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수출촉진 출원,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합니다. 다만 착수희망일이 착수예정일보다 빠른 이유로 상표등록출원을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기실시 또는 실시준비 중인 출원만을 기재합니다.
4. 【증명서류】란에는 제출하는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벤처기업확인서 1통
5.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란은 일괄심사 신청일 후 7일부터 14일까지로 신청하여야 하고, 【일괄심사 착수희망일】란은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신청하여야 하며, 【일괄심사 종결희망일】란은 착수희망일 후 3개월부터 1년까지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일괄심사설명】란은 일괄심사 대상 출원이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과 관계된 것임을 설명합니다.
7. 【예비심사신청여부】란은 예비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예비심사 신청여부를 기재합니다.

**[별표]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명서류**

신청이유	증빙서류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실시 중인 출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실시품의 실물사진,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2.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3. 기타 실시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출원인이 실시 준비 중인 출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시제품 실물사진, 견본,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등 2.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3.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4.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5. 기타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수출실적 입증서류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3.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출계약 입증서류 5.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 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1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 고안, 상표, 디자인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1호라목, 마목 및 제2호에 따른 출원	제4조제1호라목, 마목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기초연구과제 혁신경제 - 기업경영

**지식재산 경영과 기업 성과: 기업의 복합적 지식재산권 활용 사례 연구**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손승우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1  
전화 (02) 2189-2600  
팩스 (02) 2189-269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 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혁신경제

## 기업의 복합적 지식재산권 활용사례 연구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1544-8080 Fax.042)489-0194 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02)2189-2600 Fax.02)2189-2694 www.kiip.re.kr

ISBN : 979-11-6884-012-6 13500  
DOI : 10.8080/P9791168840126